

제360회국회
(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제 2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18년5월28일(월)

장 소 법제사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계속)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계속)
3.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4.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계속)
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계속)
6.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계속)
7.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8.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계속)
9. 국회사무처법 일부개정법률안
10.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1.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12.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3.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1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5.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6.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7.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8.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9.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1.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4.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5.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6.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7.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8.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9.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30. 統一主體國民會議法 폐지법률안
31. 參議院議員選舉法施行에關한法律 폐지법률안
32.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3.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4.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
35.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36.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
37.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8.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안
39.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40.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1.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4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43.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44.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45. 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46.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47.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48.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4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50.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51.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52. 물관리기본법안(대안)
53. 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안
54.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55.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56. 국가표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57.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58.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59.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60.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1.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2.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63.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64.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65.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66.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안(대안)
67.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68.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9.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70.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71.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72.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73.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74.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75.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7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77.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78.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안
79.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80.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81.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82.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83.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84.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85.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86.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87.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88.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89.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90. 물관리 기술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대안)
91.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92. 환경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93.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94.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95.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96. 청원 심사기간 연장요구의 건
97.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98.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99.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100.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101.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102.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103. 공중이용시설 등의 안전관리위반범죄 처벌 특별법안
104. 교정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105. 국가정보원 및 검찰 특수활동비 부정 유용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106. 국회 특수활동비 부정 유용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107. 대한민국재향교정동우회법 일부개정법률안
108. 데이트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
109. 데이트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
110. 데이트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
111.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112.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113.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14.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15.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1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11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11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11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120.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12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12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12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12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12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12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12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12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129.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130.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131.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132.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133. 특별감찰관법 일부개정법률안
134.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135.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36.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137.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138.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139.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140.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141.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142.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143.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144.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145.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146.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147.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148.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149.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150.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151.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152.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153.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154.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55.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56.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57.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58.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159.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160.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16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162. 법관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163. 법률구조법 일부개정법률안
164.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165.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166.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167.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168.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169.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170.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171.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172.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173.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174.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75.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176.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177.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178.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179.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180.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1. 재정민주화를 위한 국민소송법안
182.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183.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4.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185.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186. 균형법 일부개정법률안
187.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188.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189.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0.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191.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
192.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193.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194.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195.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196.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197.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198.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199.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200.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204.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상정된 안건

9. 국회사무처법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 의원 대표발의)(우원식 · 송옥주 · 이용득 · 윤종오 · 최인호 · 이학영 · 인재근 · 김현권 · 이원욱 · 김영춘 의원 발의) 15
10.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 의원 대표발의)(우원식 · 송옥주 · 이용득

· 윤종오 · 최인호 · 이학영 · 인재근 · 김현권 · 이원욱 · 김영춘 의원 발의)	15
11.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 의원 대표발의)(우원식 · 송옥주 · 이용득 · 윤종오 · 최인호 · 이학영 · 인재근 · 김현권 · 이원욱 · 김영춘 의원 발의)	15
12. 학원의 설립 ·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김도읍 · 김종석 · 정운천 · 김승희 · 김재경 · 이현승 · 유기준 · 박맹우 · 이우현 · 김성원 의원 발의)	16
13.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오영훈 의원 대표발의)(오영훈 · 김상희 · 유은혜 · 신동근 · 김병욱 · 이석현 · 안민석 · 전재수 · 김민기 · 조승래 · 박경미 의원 발의)	16
1.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계속)	16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계속)	16
3.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안호영 · 양승조 · 최인호 · 강훈식 · 정성호 · 안규백 · 이석현 · 주승용 · 이훈 · 이원욱 · 김현권 · 전현희 · 제윤경 의원 발의)(계속)	16
4.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계속)	17
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계속)	17
6.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계속)	17
7.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홍영표 의원 대표발의)(홍영표 · 박재호 · 김경수 · 우원식 · 남인순 · 문미옥 · 한정애 · 이용득 · 이훈 · 최인호 · 박광온 · 권미혁 · 김정우 · 신창현 · 양승조 · 김현미 · 송옥주 의원 발의)(계속)	17
8.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계속)	17
○ 의사일정 상정의 건	24
27.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안상수 의원 대표발의)(안상수 · 정유섭 · 장병완 · 유성엽 · 박준영 · 박찬우 · 성일종 · 이학재 · 김석기 · 조훈현 · 신동근 · 황영철 · 박남춘 · 홍일표 · 김순례 의원 발의)	24
28.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박정 · 이찬열 · 이훈 · 윤후덕 · 박남춘 · 박재호 · 김정우 · 어기구 · 신경민 · 한정애 의원 발의)	24
29.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 · 권석창 · 홍문표 · 함진규 · 정태옥 · 박인숙 · 한선교 · 경대수 · 박찬우 · 성일종 · 강효상 의원 발의)	24
30. 統一主體國民會議法 폐지법률안(전희경 의원 대표발의)(전희경 · 김성원 · 민경욱 · 김승희 · 임이자 · 강석진 · 함진규 · 김선동 · 정태옥 · 이종명 의원 발의)	25
31. 參議院議員選舉法施行에關한法律 폐지법률안(전희경 의원 대표발의)(전희경 · 김성원 · 민경욱 · 김승희 · 임이자 · 강석진 · 함진규 · 김선동 · 정태옥 · 이종명 의원 발의)	25
32.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	25
33. 저수지 · 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25
52. 물관리기본법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25
90. 물관리 기술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	25
1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남춘 의원 대표발의)(박남춘 · 김현권 · 조승래 · 김영호 · 박찬대 · 김정우 · 유은혜 · 전해철 · 김중훈 · 최인호 · 설훈 · 이재정 의원 발의)	31
15. 표시 ·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김도읍 · 이명수 · 이현승 · 지상욱 · 이양수 · 김태흠 · 김성원 · 정태옥 · 조훈현 · 윤영석 의원 발의)	31
16.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	31
17.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	31
18.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	31
19.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	31
20.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	31

21.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중로 의원 대표발의)(김중로·박찬대·김관영·김성수·이동섭·장정숙·정재호·안규백·이종걸·김동철·장병완 의원 발의) 31
22.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중로 의원 대표발의)(김중로·박찬대·김관영·김성수·이동섭·장정숙·안규백·이종걸·김동철·장병완 의원 발의) 31
2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중로 의원 대표발의)(김중로·황주홍·이동섭·박주현·김종희·김광수·손금주·장병완·경대수·김삼화 의원 발의) 31
24.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중로 의원 대표발의)(김중로·박찬대·김관영·김성수·이동섭·장정숙·정재호·안규백·이종걸·김동철·장병완 의원 발의) 31
25.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중로 의원 대표발의)(김중로·박찬대·김관영·김성수·이동섭·장정숙·정재호·안규백·이종걸·김동철·장병완 의원 발의) 31
26.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 31
34.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이찬열·이동섭·정동영·김중로·주호영·김삼화·김경진·김종희·위성곤·강창일·이철희 의원 발의) 35
35.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조배숙 의원 대표발의)(조배숙·이동섭·신용현·황주홍·이찬열·최도자·김삼화·손금주·김중로·정동영 의원 발의) 35
36.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성 의원 대표발의)(임종성·강훈식·민홍철·전현희·노웅래·안호영·이찬열·윤후덕·조승래·소병훈 의원 발의) 35
37.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철호 의원 대표발의)(홍철호·박성중·이종명·윤후덕·유승민·김명연·이명수·윤영일·박완수·조훈현 의원 발의) 35
38.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박덕흠·김태흠·권석창·홍문표·김규환·김성원·이만희·김승희·윤종필·심재철·김성찬·이은권·이채익·박명재·강석진·정용기·김광립·안호영·이용호 의원 발의) 35
39.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주광덕 의원 대표발의)(주광덕·김정재·강석진·윤종필·김세연·김성찬·정종섭·추경호·성일중·정성호·윤재옥·권성동·김승희 의원 발의) 35
40.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주광덕 의원 대표발의)(주광덕·김정재·강석진·윤종필·김세연·김성찬·정종섭·추경호·성일중·윤재옥·권성동 의원 발의) 35
41.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승 의원 대표발의)(이현승·김한표·윤한홍·박완수·김도읍·성일중·강석진·이양수·박덕흠·정종섭·엄용수·이명수·윤영석·박대출 의원 발의) 35
4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아 의원 대표발의)(김현아·이원욱·박덕흠·김정훈·김관영·정갑윤·문진국·정우택·배덕광·박성중·이현재·이우현·강효상 의원 발의) 35
43.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아 의원 대표발의)(김현아·민병두·박성중·김관영·김무성·이원영·강석호·이원욱·박인숙·문진국 의원 발의) 36
44.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민홍철·김해영·윤영일·최인호·이찬열·문희상·박경미·안규백·전재수·박재호·서형수·김철민 의원 발의) 36
45. 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황희·어기구·박재호·정재호·오제세·전현희·최인호·홍익표·권칠승·김성수·고용진 의원 발의) 36
46.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주승용·노웅래·강창일·장정숙·황주홍·박주선·최도자·이용주·손금주·박선숙·윤영일 의원 발의) 36
47.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36
48.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36
4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36
50.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36
51.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36

53. 제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36
54.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36
55.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 ..	42
56. 국가표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42
57.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42
58.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동 의원 대표발의)(김선동 · 경대수 · 강석진 · 심재철 · 윤종 필 · 김규환 · 정우택 · 박명재 · 신보라 · 민경욱 · 함진규 의원 발의)	42
59.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의락 의원 대표발의)(홍의락 · 김관영 · 손 혜원 · 윤호중 · 신창현 · 진선미 · 김정우 · 조정식 · 박정 · 정성호 의원 발의)	43
60.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박정 · 이훈 · 권철승 · 어기구 · 김병욱 · 신경민 · 윤후덕 · 윤관석 · 김정우 · 신창현 · 송옥주 · 민홍철 의원 발의)	43
61.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박정 · 권철승 · 유동수 · 이채익 · 김경수 · 윤한홍 · 김종훈 · 홍의락 · 김기선 · 김수민 · 신경민 · 홍익표 의원 발의)	43
62.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수 의원 대표발의)(김경수 · 신창현 · 김병관 · 이원욱 · 서형수 · 정성호 · 안규백 · 윤관석 · 전재수 · 오제세 · 김민기 · 황희 · 박정 · 심기준 의원 발의)	43
63.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장병완 의원 대표발의)(장병완 · 김철민 · 최도자 · 박정 · 김성 수 · 이동섭 · 광대훈 · 김중로 · 김삼화 · 최명길 · 황주홍 · 오제정 · 김성식 · 조배숙 의원 발의)	43
64.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 장 제출)	43
65.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	43
66.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 ..	43
67.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박홍근 · 전현희 · 고용진 · 박광온 · 정재호 · 정인화 · 서형수 · 송기현 · 홍익표 · 김상희 의원 발의)	50
68.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 (정춘숙 · 김성수 · 송옥주 · 신경민 · 강훈식 · 김병욱 · 표창원 · 신창현 · 김정우 · 권미혁 · 정성호 · 유 은혜 · 이철희 · 양승조 · 홍의락 · 소병훈 · 추미애 · 박주민 의원 발의)	51
69.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기동민 · 김민기 · 김영 호 · 김정우 · 신창현 · 이재정 · 박정 · 노웅래 · 김철민 · 오제세 · 추미애 · 인재근 의원 발의)	51
70.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	51
71.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51
72.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51
73.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인재근 · 소병훈 · 김영호 · 전혜숙 · 정춘숙 · 박정 · 김상희 · 김영진 · 유은혜 · 기동민 · 설훈 · 이인영 · 양승조 의원 발의)	51
74.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51
75.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51
7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조승래 · 김민기 · 김정우 · 박 경미 · 설훈 · 송기현 · 안민석 · 유동수 · 윤관석 · 전재수 · 추미애 의원 발의)	53
77.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유은혜 의원 대표발의)(유은혜 · 정성호 · 박정 · 김민기 · 백혜련 · 노웅래 · 홍의락 · 김성수 · 인재근 · 민홍철 · 김철민 · 신창현 의원 발의)	53
78.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노웅래 · 이개호 · 박홍근 · 윤후덕 · 조배숙 · 박광온 · 장병완 · 장정숙 · 주승용 · 이찬열 의원 발의)	53
79.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주광덕 의원 대표발의)(주광덕 · 강석진 · 나경원 · 윤상직 · 황영철 · 박덕흠 · 이학재 · 이진복 · 정중섭 · 김정재 의원 발의)	53
80.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	53

81.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53
82.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출)	53
83.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한정애 · 김영진 · 강병원 · 신창현 · 송옥주 · 이학영 · 윤관석 · 민홍철 · 이찬열 · 윤호중 의원 발의)	54
84.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득 의원 대표발의)(이용득 · 김종훈 · 서형수 · 윤관석 · 이정미 · 박홍근 · 손혜원 · 신창현 · 소병훈 · 홍의락 · 심기준 · 박광운 · 강훈식 · 김한정 · 김병기 · 유동수 · 김철민 · 권미혁 · 송옥주 · 문희상 · 표창원 · 김상희 · 노웅래 · 이수혁 · 한정애 · 박주민 의원 발의)	54
85.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강병원 · 송옥주 · 신창현 · 김영호 · 윤관석 · 추미애 · 정성호 · 이용득 · 정춘숙 · 김정우 · 문진국 · 박재호 의원 발의)	54
86.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신창현 의원 대표발의)(신창현 · 이용득 · 문희상 · 송옥주 · 서형수 · 김영호 · 김한정 · 이원욱 · 한정애 · 강병원 · 홍영표 의원 발의)	54
87.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홍영표 의원 대표발의)(홍영표 · 이상돈 · 이석현 · 문진국 · 장석춘 · 신동근 · 신창현 · 강병원 · 이용득 · 송옥주 · 김삼화 · 서형수 · 한정애 · 박남춘 · 유동수 · 박찬대 · 홍일표 · 안상수 · 송영길 · 윤관석 · 정유섭 · 임이자 의원 발의)	54
88.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강병원 · 송옥주 · 신창현 · 하태경 · 김영호 · 윤관석 · 추미애 · 박찬대 · 이용득 · 정춘숙 · 김병욱 · 김정우 · 박정 · 박재호 의원 발의)	54
89.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서형수 의원 대표발의)(서형수 · 박재호 · 신창현 · 강병원 · 한정애 · 김해영 · 이정미 · 이용득 · 신용현 · 전재수 · 박홍근 · 최인호 · 송옥주 · 박정 · 민홍철 · 권미혁 의원 발의)	54
91.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	55
92. 환경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	55
93.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	55
94.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55
95. 전기 · 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55
20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임이자 · 홍문종 · 윤종필 · 장석춘 · 문진국 · 함진규 · 원유철 · 한정애 · 안상수 · 송희경 의원 발의)	55
204.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	55
96. 청원 심사기간 연장요구의 건	62
97.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소병훈 · 신창현 · 전해철 · 김영호 · 안규백 · 박정 · 윤소하 · 천정배 · 표창원 · 정성호 · 윤관석 · 박경미 · 유승희 의원 발의)	63
98.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박정 · 인재근 · 전해철 · 기동민 · 원혜영 · 신창현 · 이찬열 · 김해영 · 김종민 · 신경민 · 김철민 · 소병훈 의원 발의)	63
99.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태규 의원 대표발의)(이태규 · 김중로 · 조배숙 · 윤관석 · 황주홍 · 송옥주 · 김삼화 · 신용현 · 장정숙 · 이용호 · 송기석 의원 발의)	63
100.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정춘숙 · 인재근 · 김현권 · 표창원 · 신창현 · 송옥주 · 윤소하 · 정성호 · 강병원 · 박남춘 · 양승조 의원 발의)(의안번호 10629)	63
101.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정춘숙 · 김현권 · 인재근 · 박남춘 · 윤관석 · 김종훈 · 김상희 · 유은혜 · 최인호 · 신용현 의원 발의)(의안번호 10978)	63
102.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백혜련 · 김현권 · 김민기 · 정동영 · 김정우 · 김상희 · 신창현 · 전재수 · 윤관석 · 정성호 · 박광운 · 최인호 의원 발의)	63
103. 공중이용시설 등의 안전관리위반범죄 처벌 특별법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박주민 · 김철민 · 윤관석 · 김정우 · 천정배 · 이용득 · 신창현 · 김경진 · 유승희 · 김종희 · 정동영 의원 발의)	63

104. 교정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63
105. 국가정보원 및 검찰 특수활동비 부정 유용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최교일 의원 대표발의)(최교일 · 강길부 · 강석진 · 강석호 · 강효상 · 경대수 · 곽대훈 · 곽상도 · 권석창 · 권성동 · 김광립 · 김규환 · 김기선 · 김도읍 · 김명연 · 김무성 · 김상훈 · 김석기 · 김선동 · 김성원 · 김성찬 · 김성태 · 金成泰 · 김순례 · 김승희 · 김영우 · 김용태 · 김재경 · 김재원 · 김정재 · 김정훈 · 김종석 · 김진태 · 김태흠 · 김학용 · 김한표 · 나경원 · 문진국 · 민경욱 · 박대출 · 박덕흠 · 박맹우 · 박명재 · 박성중 · 박순자 · 박완수 · 박찬우 · 백승주 · 서청원 · 성일중 · 송석준 · 송희경 · 신보라 · 신상진 · 심재철 · 안상수 · 엄용수 · 여상규 · 염동열 · 원유철 · 유기준 · 유민봉 · 유재중 · 윤상직 · 윤상현 · 윤영석 · 윤재옥 · 윤종필 · 윤한홍 · 이군현 · 이만희 · 이명수 · 이양수 · 이완영 · 이우현 · 이은권 · 이은재 · 이장우 · 이종구 · 이종명 · 이종배 · 이주영 · 이진복 · 이채익 · 이철규 · 이철우 · 이현승 · 임이자 · 장석춘 · 장제원 · 전희경 · 정갑윤 · 정양석 · 정용기 · 정우택 · 정유섭 · 정중섭 · 정진석 · 정태옥 · 조경태 · 조훈현 · 주광덕 · 주호영 · 최경환(한) · 최연혜 · 추경호 · 한선교 · 함진규 · 홍문종 · 홍문표 · 홍일표 · 홍철호 · 황영철 의원 발의)	63
106. 국회 특수활동비 부정 유용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하태경 의원 대표발의)(하태경 · 김세연 · 김수민 · 박인숙 · 오세정 · 오신환 · 유의동 · 이학재 · 이혜훈 · 정운천 의원 발의)	63
107. 대한민국재향교정동우회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63
108. 데이트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신보라 의원 대표발의)(신보라 · 박인숙 · 이양수 · 송희경 · 장석춘 · 하태경 · 김수민 · 김승희 · 박덕흠 · 김석기 · 김선동 의원 발의)	63
109. 데이트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박남춘 의원 대표발의)(박남춘 · 김현권 · 조승래 · 김영호 · 김정우 · 유은혜 · 전해철 · 김종훈 · 표창원 · 최인호 · 설훈 · 이재정 의원 발의)	63
110. 데이트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함진규 의원 대표발의)(함진규 · 박완수 · 박맹우 · 김승희 · 정유섭 · 곽대훈 · 최연혜 · 이장우 · 박순자 · 이명수 의원 발의)	63
111.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백혜련 · 김성수 · 박정 · 원혜영 · 남인순 · 조정식 · 윤관석 · 신창현 · 정성호 · 박찬대 의원 발의)	64
112.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은재 의원 대표발의)(이은재 · 김성태 · 이종배 · 이진복 · 이현재 · 백승주 · 김선동 · 정유섭 · 김종석 · 곽대훈 의원 발의)	64
113.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일표 의원 대표발의)(홍일표 · 이학재 · 백승주 · 박찬우 · 나경원 · 박명재 · 안상수 · 김선동 · 김동철 · 홍문표 의원 발의)	64
114.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곽상도 의원 대표발의)(곽상도 · 곽대훈 · 나경원 · 유민봉 · 김석기 · 박맹우 · 박덕흠 · 정태옥 · 이현승 · 김재원 의원 발의)	64
115.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 의원 대표발의)(정갑윤 · 이채익 · 김진태 · 김정재 · 윤한홍 · 이철규 · 김석기 · 박대출 · 김순례 · 문진국 · 홍일표 의원 발의)	64
11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남인순 · 신창현 · 김상희 · 정성호 · 윤관석 · 한정애 · 소병훈 · 인재근 · 서영교 · 이학영 의원 발의)	64
11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표창원 의원 대표발의)(표창원 · 이개호 · 신창현 · 김현권 · 노웅래 · 윤소하 · 소병훈 · 김민기 · 윤관석 · 박정 · 김상희 · 김영호 의원 발의)	64
11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순자 의원 대표발의)(박순자 · 조경태 · 이명수 · 박성중 · 이종배 · 강석진 · 金成泰 · 최도자 · 함진규 · 홍문종 · 유재중 의원 발의)	64
11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 · 이찬열 · 김중희 · 송옥주 · 윤영일 · 김중로 · 김철민 · 오세정 · 유성엽 · 박주현 · 김수민 의원 발의)(의안번호 11052)	64

120.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이만희 · 김상훈 · 백승주 · 윤영석 · 임이자 · 민경욱 · 김정재 · 김성원 · 이양수 · 권석창 의원 발의) 64
12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백혜련 · 유동수 · 김현권 · 김민기 · 정동영 · 김상희 · 신창현 · 전재수 · 윤관석 · 박광온 · 최인호 의원 발의) 64
12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오신환 의원 대표발의)(오신환 · 김동철 · 권은희 · 김관영 · 김삼화 · 김성식 · 김수민 · 김중로 · 박선숙 · 박주선 · 신용현 · 오세정 · 유승민 · 유의동 · 이동섭 · 이언주 · 이찬열 · 이태규 · 이학재 · 이혜훈 · 정병국 · 정운천 · 주승용 · 지상욱 · 채이배 · 최도자 · 하태경 의원 발의) 64
12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 · 정동영 · 장정숙 · 김종희 · 최경환(평) · 김경진 · 박지원 · 조배숙 · 박주현 · 김광수 · 이용주 · 천정배 · 윤영일 · 정인화 · 이상돈 · 유성엽 · 장병완 의원 발의)(의안번호 12252) 64
12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손금주 의원 대표발의)(손금주 · 김수민 · 정동영 · 채이배 · 이찬열 · 원혜영 · 주승용 · 최경환(평) · 김종훈 · 최도자 · 신용현 의원 발의) 64
12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이언주 · 이동섭 · 최도자 · 하태경 · 이찬열 · 유승민 · 김중로 · 최운열 · 유의동 · 신용현 의원 발의) 64
12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유승희 · 문희상 · 진선미 · 김철민 · 신창현 · 이용득 · 최운열 · 오영훈 · 이개호 · 표창원 · 전해철 · 송옥주 · 남인순 · 서영교 · 소병훈 · 한정애 · 김상희 · 유은혜 · 이수혁 · 박영선 · 백혜련 · 강창일 · 위성곤 의원 발의) 64
12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권철승 의원 대표발의)(권철승 · 신경민 · 박정 · 위성곤 · 신창현 · 김해영 · 황주홍 · 김경협 · 박홍근 · 설훈 의원 발의) 64
12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신상진 의원 대표발의)(신상진 · 함진규 · 김승희 · 이종명 · 김재경 · 민경욱 · 윤종필 · 이채익 · 주호영 · 성일종 의원 발의) 65
129.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박정 · 인재근 · 기동민 · 원혜영 · 신창현 · 이찬열 · 김해영 · 김중민 · 신경민 · 김철민 · 소병훈 의원 발의) 65
130.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 의원 대표발의)(노회찬 · 추혜선 · 심상정 · 윤소하 · 김중대 · 이정미 · 신경민 · 김수민 · 정동영 · 박범계 · 원혜영 · 유동수 · 김영호 · 박경미 · 최도자 · 소병훈 · 김성수 의원 발의) 65
131.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우 의원 대표발의)(박찬우 · 이우현 · 박덕흠 · 정용기 · 김선동 · 이군현 · 정태욱 · 김정재 · 윤상현 · 엄용수 · 이만희 · 원유철 의원 발의) 65
132.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김성원 · 김한표 · 박덕흠 · 金成泰 · 박인숙 · 이양수 · 성일종 · 정유섭 · 김순례 · 김명연 의원 발의) 65
133. 특별감찰관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주호영 · 이종구 · 박명재 · 하태경 · 김용태 · 이용호 · 박인숙 · 정양석 · 정우택 · 김동철 · 황영철 의원 발의) 65
134.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홍철호 의원 대표발의)(홍철호 · 권석창 · 박덕흠 · 박완수 · 정병국 · 박성중 · 유의동 · 김성원 · 윤영일 · 유민봉 의원 발의) 65
135.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 의원 대표발의)(김병기 · 권미혁 · 홍익표 · 박영선 · 위성곤 · 박정 · 안민석 · 신창현 · 김현권 · 노웅래 · 이개호 · 송옥주 · 이석현 · 김종민 · 남인순 · 김영진 · 박재호 · 원혜영 · 심기준 · 전현희 · 김태년 · 이철희 · 김상희 · 김성수 · 기동민 · 금태섭 · 제윤경 · 강훈식 · 어기구 · 정춘숙 · 전해철 · 김영호 · 김경협 · 박범계 · 윤호중 · 유동수 · 표창원 · 양승조 · 김철민 · 유승희 · 이수혁 · 서영교 · 백혜련 · 신경민 · 김경수 · 박찬대 · 김병욱 · 박광온 · 이용득 · 홍영표 · 설훈 · 심재권 · 김병관 · 김두관 · 김한정 · 정재호 · 조승래 · 소병훈 · 전재수 · 김해영 · 최운열 · 박병석 · 황희 · 김정우 · 전혜숙 · 이재정 · 이원욱 · 송기현 · 한정애 · 이인영 · 문희상 · 윤후덕 · 고용진 · 윤관석 · 민병두 · 추미애 · 최인호 · 강병원 · 권철승 · 신동근 · 서형수 · 민홍철 의원 발의) 65

- 136.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신창현 의원 대표발의)(신창현·박찬대·유승희·이훈·변재일·강병원·권미혁·박경미·윤관석·이수혁·김두관·문희상·심재권 의원 발의) 65
- 137.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전재수·김해영·최인호·정재호·노웅래·조승래·김상희·유은혜·손혜원·심재권 의원 발의) 65
- 138.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기동민·인재근·김민기·정성호·윤관석·김해영·박정·김정우·추미애·이철희·이재정 의원 발의) 65
- 139.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김민기·신창현·윤관석·노웅래·전재수·강훈식·오영훈·김영진·정성호·김현권·김병욱 의원 발의) 65
- 140.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오신환 의원 대표발의)(오신환·김동철·권은희·김관영·김삼화·김성식·김수민·김중로·박선숙·박주선·신용현·오세정·유승민·유의동·이동섭·이언주·이찬열·이태규·이학재·이혜훈·정병국·정운천·주승용·지상욱·채이배·최도자·하태경 의원 발의) 65
- 141. 형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정동영·장정숙·최경환(평)·김종희·김경진·박지원·조배숙·김광수·이용주·박주현·천정배·윤영일·정인화·이상돈·장병완·유성엽 의원 발의) 65
- 142.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이언주·이동섭·최도자·하태경·이찬열·유승민·김중로·최운열·유의동·신용현 의원 발의) 65
- 143.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진선미·남인순·유승희·한정애·서영교·박경미·김상희·유은혜·원혜영·제윤경·이학영·김현권·강병원·송기현·민병두·송옥주·윤관석·김해영·김영호 의원 발의) 65
- 144.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권칠승·신경민·박정·위성곤·신창현·김해영·황주홍·김경협·박홍근·설훈 의원 발의) 66
- 145.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홍문표·강석진·정태욱·홍철호·김성찬·유민봉·권석창·김재원·박인숙 의원 발의) 66
- 146. 형법 일부개정법률안(표창원 의원 대표발의)(표창원·김성수·진선미·안규백·김종대·김중로·김병기·소병훈·박범계·신창현 의원 발의) 66
- 147.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혜훈 의원 대표발의)(이혜훈·정운천·최도자·유동수·하태경·이찬열·김수민·박성중·이완영·강길부 의원 발의) 66
- 148.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신상진 의원 대표발의)(신상진·함진규·김승희·이종명·김재경·민경욱·윤종필·이채익·주호영·성일종 의원 발의) 66
- 149.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대표발의)(함진규·박덕흠·김재원·박맹우·최연혜·곽대훈·조훈현·이종배·염동열·이은재 의원 발의) 66
- 150.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금태섭 의원 대표발의)(금태섭·최인호·이원욱·윤호중·이춘석·이학영·정성호·윤관석·홍영표·유승희·박광온 의원 발의) 66
- 151.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우 의원 대표발의)(박찬우·이우현·박덕흠·정용기·김선동·이군현·정태욱·김정재·윤상현·엄용수·이만희·원유철 의원 발의) 66
- 152.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전재수·김해영·최인호·정재호·노웅래·조승래·김상희·유은혜·손혜원·심재권 의원 발의) 66
- 153.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유기준 의원 대표발의)(유기준·조경태·정유섭·이명수·이은권·이헌승·이진복·金成泰·윤상현·윤상직·권석창 의원 발의) 66
- 154.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태규 의원 대표발의)(이태규·김현아·김경진·신용현·김삼화·장정숙·이용호·송기석·김성식·권은희 의원 발의) 66
- 155.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경진 의원 대표발의)(김경진·심기준·황주홍·정동영·최도자·이동섭·송옥주·박주민·노웅래·김광수·김해영·김중로 의원 발의) 66
- 156.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이언주·송기석

- 이동섭 · 최도자 · 정인화 · 윤영일 · 김수민 · 신용현 · 김중로 · 박준영 · 김종희 의원 발의) 66
157.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석현 의원 대표발의)(이석현 · 김정우 · 이춘석 · 오영훈 · 신창현 · 이종걸 · 이학영 · 안호영 · 심재철 · 심재권 의원 발의) 66
158.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오신환 의원 대표발의)(오신환 · 강길부 · 지상욱 · 이용주 · 김현아 · 하태경 · 김영우 · 김무성 · 주호영 · 정양석 · 유의동 · 김경진 의원 발의) 66
159.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주광덕 의원 대표발의)(주광덕 · 장제원 · 강효상 · 김성원 · 박대출 · 성일중 · 신상진 · 안상수 · 문진국 · 유민봉 · 박성중 · 이은권 · 염동열 의원 발의) 66
160.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조정식 · 박정 · 신창현 · 정동영 · 윤관석 · 김철민 · 민홍철 · 송옥주 · 이석현 · 이찬열 의원 발의) 66
16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박병석 의원 대표발의)(박병석 · 이수혁 · 김부겸 · 변재일 · 박정 · 김병기 · 김태년 · 이찬열 · 조승래 · 김현권 · 박재호 · 민병두 · 김종민 · 심재권 의원 발의) 66
162.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곽상도 의원 대표발의)(곽상도 · 조훈현 · 김성원 · 백승주 · 유민봉 · 임이자 · 이찬열 · 추경호 · 이은재 · 이종배 · 이종명 의원 발의) 66
163. 법률구조법 일부개정법률안(금태섭 의원 대표발의)(금태섭 · 최인호 · 이원욱 · 윤호중 · 이춘석 · 이학영 · 정성호 · 윤관석 · 홍영표 · 유승희 · 박광온 의원 발의) 66
164.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주광덕 의원 대표발의)(주광덕 · 김정재 · 박성중 · 김진태 · 성일중 · 홍문중 · 권성동 · 원유철 · 김성원 · 강석진 의원 발의) 66
165.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곽상도 의원 대표발의)(곽상도 · 조훈현 · 김성원 · 백승주 · 유민봉 · 임이자 · 이찬열 · 추경호 · 이은재 · 이종배 · 이종명 의원 발의) 67
166.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금태섭 의원 대표발의)(금태섭 · 최인호 · 이원욱 · 윤호중 · 이춘석 · 이학영 · 윤관석 · 홍영표 · 유승희 · 박광온 의원 발의) 67
167.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권성동 · 주광덕 · 조훈현 · 윤상직 · 박덕흠 · 김선동 · 문진국 · 이종명 · 정우택 · 정갑윤 의원 발의) 67
168.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오신환 의원 대표발의)(오신환 · 하태경 · 유의동 · 박인숙 · 이학재 · 정운천 · 정병국 · 김세연 · 이혜훈 · 김현아 의원 발의) 67
169.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곽상도 의원 대표발의)(곽상도 · 조훈현 · 김성원 · 백승주 · 유민봉 · 임이자 · 이찬열 · 추경호 · 이은재 · 이종배 · 이종명 의원 발의) 67
170.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오신환 의원 대표발의)(오신환 · 하태경 · 유의동 · 박인숙 · 이학재 · 정운천 · 정병국 · 김세연 · 이혜훈 · 김현아 의원 발의) 67
171.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대표발의)(이재정 · 민홍철 · 진선미 · 김상희 · 김현권 · 윤관석 · 이학영 · 김병기 · 기동민 · 윤호중 · 표창원 · 정재호 · 홍익표 의원 발의) 67
172.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준영 의원 대표발의)(박준영 · 천정배 · 김동철 · 심재권 · 황주홍 · 이용주 · 송기석 · 이연주 · 윤영일 · 주승용 · 정인화 · 추경호 · 송석준 · 박지원 · 김관영 · 신용현 · 유성엽 · 김종희 · 이동섭 · 민홍철 · 김경협 · 조배숙 의원 발의) 67
173.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오신환 의원 대표발의)(오신환 · 하태경 · 유의동 · 박인숙 · 이학재 · 정운천 · 정병국 · 김세연 · 이혜훈 · 김현아 의원 발의) 67
174.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전재수 · 김해영 · 최인호 · 정재호 · 노웅래 · 조승래 · 김상희 · 유은혜 · 손혜원 · 심재권 의원 발의) 67
175.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박범계 의원 대표발의)(박범계 · 표창원 · 이수혁 · 서영교 · 김성수 · 백혜련 · 박재호 · 김영호 · 신창현 · 이철희 · 박찬대 · 위성곤 · 정성호 · 심기준 의원 발의) 67
176.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정춘숙 · 권미혁 · 기동민 · 김병욱 · 표창원 · 송옥주 · 윤소하 · 오제세 · 인재근 · 양승조 · 강훈식 · 김정우 의원 발의) 67
177.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석 의원 대표발의)(송기석 · 이연주 · 이동섭 · 장정숙 · 신용현 · 김삼화 · 황주홍 · 박선숙 · 박주선 · 박지원 · 최경환(국) · 김세연 의원 발의)(의안번호 10827) 67

178.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석 의원 대표발의)(송기석 · 이언주 · 장병완 · 이동섭 · 장정숙 · 신용현 · 김삼화 · 황주홍 · 박주현 · 박선숙 · 박주선 · 박지원 · 최경환(국) · 김세연 의원 발의)(의안번호 10942)	67
179.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백혜련 · 강병원 · 김현권 · 박광온 · 위성곤 · 이원욱 · 이재정 · 이학영 · 정성호 · 최인호 의원 발의)	67
180.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석현 의원 대표발의)(이석현 · 신창현 · 김민기 · 김해영 · 안규백 · 신경민 · 김병기 · 어기구 · 안호영 · 서영교 · 금태섭 · 조정식 의원 발의)	67
181. 재정민주화를 위한 국민소송법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박주민 · 박정 · 이철희 · 문희상 · 유동수 · 김경수 · 유승희 · 김철민 · 노웅래 · 신창현 · 김상희 · 소병훈 · 원혜영 의원 발의)	67
182.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주광덕 의원 대표발의)(주광덕 · 장제원 · 강효상 · 김성원 · 박대출 · 성일중 · 신상진 · 안상수 · 유민봉 · 박성중 · 이은권 · 염동열 의원 발의)	67
183.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경진 의원 대표발의)(김경진 · 송희경 · 주승용 · 김수민 · 이동섭 · 유동수 · 김광수 · 김삼화 · 오세정 · 최도자 의원 발의)	67
184.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백혜련 · 이철희 · 김정우 · 윤관석 · 민홍철 · 박정 · 유동수 · 전해철 · 신창현 · 한정애 · 정성호 · 추미애 · 박찬대 의원 발의)	67
185.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전재수 · 김해영 · 최인호 · 정재호 · 노웅래 · 조승래 · 김상희 · 유은혜 · 손혜원 · 심재권 의원 발의)	68
186.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희 의원 대표발의)(이철희 · 김경수 · 김민기 · 김성수 · 김영호 · 김정우 · 노웅래 · 신창현 · 윤관석 · 정동영 · 채이배 · 천정배 · 최도자 의원 발의)	68
187.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김관영 · 박선숙 · 정동영 · 주승용 · 민병두 · 박주현 · 김현아 · 오세정 · 박용진 · 김경진 · 천정배 · 김중희 의원 발의)	68
188.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철 의원 대표발의)(심재철 · 주광덕 · 김승희 · 김순례 · 송희경 · 추경호 · 송석준 · 이만희 · 곽상도 · 강석진 · 조훈현 · 문진국 의원 발의)	68
189.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 의원 대표발의)(전혜숙 · 양승조 · 김영호 · 최도자 · 표창원 · 김상희 · 신창현 · 인재근 · 기동민 · 장정숙 · 정춘숙 의원 발의)	68
190.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두 의원 대표발의)(민병두 · 신창현 · 고용진 · 김영호 · 김정협 · 이원욱 · 원혜영 · 정성호 · 윤호중 · 송옥주 · 박찬대 · 박정 의원 발의)	68
191.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곽상도 의원 대표발의)(곽상도 · 유기준 · 나경원 · 송기현 · 김재원 · 심기준 · 손금주 · 홍일표 · 이동섭 · 정갑윤 · 박덕흠 · 김경진 의원 발의)	68
192.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김영진 · 김정우 · 서영교 · 설훈 · 이원욱 · 이종걸 · 인재근 · 전혜숙 · 홍익표 · 황희 의원 발의)	68
193.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서청원 의원 대표발의)(서청원 · 김성원 · 김순례 · 김태흠 · 민경욱 · 박덕흠 · 윤상현 · 윤영석 · 이만희 · 이우현 · 이종명 · 임이자 의원 발의)	68
194.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동 의원 대표발의)(김선동 · 김규환 · 박명재 · 원유철 · 정갑윤 · 나경원 · 강석진 · 경대수 · 신보라 · 정운천 · 이철규 의원 발의)	68
195. 민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김영진 · 전혜숙 · 김영호 · 김민기 · 이원욱 · 인재근 · 김정우 · 서영교 · 한정애 · 황희 의원 발의)	68
196.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철 의원 대표발의)(심재철 · 주광덕 · 송희경 · 추경호 · 이만희 · 송석준 · 곽상도 · 강석진 · 조훈현 · 문진국 의원 발의)	68
197. 민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두 의원 대표발의)(민병두 · 정재호 · 이찬열 · 문희상 · 고용진 · 강병원 · 이종걸 · 신창현 · 박정 · 정성호 · 노웅래 · 원혜영 · 민홍철 의원 발의)	68
198. 민법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대표발의)(김삼화 · 황주홍 · 김광수 · 김관영 · 최도자 · 이찬열	

· 김중로 · 김종희 · 주승용 · 이태규 의원 발의) 68

199.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전재수 · 김해영 · 최인호 · 정재호 · 노웅래 · 조승래 · 김상희 · 유은혜 · 손혜원 · 심재권 의원 발의) 68

200.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금태섭 의원 대표발의)(금태섭 · 이춘석 · 윤호중 · 전해숙 · 고용진 · 윤관석 · 정춘숙 · 김정우 · 남인순 · 권미혁 의원 발의) 68

201.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박주민 · 추미애 · 오제세 · 노회찬 · 조배숙 · 정성호 · 윤관석 · 민홍철 · 박범계 · 김민기 · 신창현 · 손혜원 · 유동수 · 박정 · 송옥주 · 표창원 · 김종대 · 금태섭 · 김영호 · 김정우 · 강훈식 의원 발의) 68

202.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제윤경 의원 대표발의)(제윤경 · 윤소하 · 유승희 · 윤관석 · 김정우 · 송옥주 · 심기준 · 이훈 · 신창현 · 추미애 · 원혜영 · 김영진 · 박주민 · 노웅래 의원 발의) 68

○ 현안질의 69

38.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박덕흠 · 김태흠 · 권석창 · 홍문표 · 김규환 · 김성원 · 이만희 · 김승희 · 윤종필 · 심재철 · 김성찬 · 이은권 · 이채익 · 박명재 · 강석진 · 정용기 · 김광립 · 안호영 · 이용호 의원 발의)(계속) 70

61.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박정 · 권칠승 · 유동수 · 이채익 · 김경수 · 윤한홍 · 김종훈 · 홍의락 · 김기선 · 김수민 · 신경민 · 홍익표 의원 발의)(계속) ... 70

67.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박홍근 · 전현희 · 고용진 · 박광온 · 정재호 · 정인화 · 서형수 · 송기현 · 홍익표 · 김상희 의원 발의)(계속) 70

○ 현안질의(계속) 70

(09시12분 개의)

○위원장 권성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0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과 다른 위원회에서 회부된 안건, 청원 심사기간 연장요구의 건과 우리 위원회 고유법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 심사 순서는 기관장의 출석 일정 등을 고려하여 운영위원회와 교육부 소관 미상정 안전을 먼저 심사하고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서 의결된 안전을 심사한 다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회부된 안전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안전 심사 중에 물관리 3법을 병합심사할 필요가 있어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 함께 환경부 소관 물관리 기술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대안)과 국토교통부 소관 물관리기본법안(대안)을 함께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공지사항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2018년 5월 25일 자로 우리 위원회의 박범계 위원이 사임되고 표창원 위원이 보

임되었다는 통지가 있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보임되신 표창원 위원님을 환영하고, 간단하게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창원 위원 권성동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제가 법제사법위원회의 관례와 전통에 맞춰서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권성동 20대 전반기 법사위원회가 오늘로써 마지막입니다. 하루지만 아주 철저하고 객관적으로 법안심사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회운영위원회 소관 안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9. 국회사무처법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 의원 대표발의)(우원식 · 송옥주 · 이용득 · 윤종오 · 최인호 · 이학영 · 인재근 · 김현권 · 이원욱 · 김영춘 의원 발의)

10.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 의원 대표발의)(우원식 · 송옥주 · 이용득 · 윤종오 · 최인호 · 이학영 · 인재근 · 김현권 · 이원욱 · 김영춘 의원 발의)

11.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 의원 대표발의)(우원식 · 송옥주 ·

이용득·윤종오·최인호·이학영·인재근·김현권·이원욱·김영춘 의원 발의)
(09시14분)

○위원장 권성동 의사일정 제9항 우원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사무처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11항 우원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이상 3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 3건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박수철 수석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수철 수석전문위원 검토결과를 보고 올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11항까지의 법률안은 한자로 표기된 용어를 한글로 변경하여 국민이 알기 쉬운 법으로 정비하는 등의 내용으로 체계·자구를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 3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권성동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제10항, 제11항의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성곤 국회사무총장님 나와 계시는데 국회운영과 관련해서 현안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어요」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총장님, 특별히 하실 말씀 없으시지요?

○국회사무총장 김성곤 예.

하여튼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성동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교육부 소관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훈 의원 대표발의)(오영훈·김상희·유은혜·신동근·김병욱·이석현·안민석·전재수·김민기·조승래·박경미 의원 발의)

○위원장 권성동 의사일정 제12항 김도읍 의원이 대표발의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의사일정 제13항 오영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2건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이문한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문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학원 설립·운영자의 결격사유 중 ‘금치산자·한정치산자’를 각각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으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이고, 제13항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산학협력단에서 고용한 연구원 및 직원을 한국교직원공제회법이 정하는 회원에 포함시키는 내용으로 각각 체계·자구상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2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권성동 수고하셨습니다.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제13항의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상곤 교육부장관 나오셨는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계속)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계속)

3.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안호영·양승조·최인호·강훈

- 12.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김도읍·김종석·정운천·김승희·김재경·이현승·유기준·박맹우·이우현·김성원 의원 발의)
- 13.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오영

식·정성호·안규백·이석현·주승용·이훈·이원욱·김현권·전현희·제윤경 의원 발의)(계속)

4.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계속)

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계속)

6.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계속)

7.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홍영표 의원 대표발의)**(홍영표·박재호·김경수·우원식·남인순·문미옥·한정애·이용득·이훈·최인호·박광운·권미혁·김정우·신창현·양승조·김현미·송옥주 의원 발의)(계속)

8.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계속)

(09시17분)

○**위원장 권성동** 의사일정 제1항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부터 의사일정 제8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까지 이상 8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를 대표해서 김진태 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김진태** 안녕하십니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위원장 김진태 위원입니다.

지난 5월 25일 우리 소위원회에서는 총 15건의 안건을 상정해서 그중의 8건을 통과시키는 아주 생산적인 논의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그동안 전반기 2소위에서 활동하신 위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등 여덟 가지 사항인데요 자세한 내용은 나눠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권성동** 김진태 소위원장님을 비롯한 제2소위원회 위원 여러분들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말씀을 드립니다.

이 8건의 안건에 대해서 대체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국무위원들께서 착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좀 기다려야 되겠습니다.

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님, 김은경 환경부장관님, 김영주 고용노동부장관,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님,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처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님, 손병석 국토교통부제1차관, 민갑룡 경찰청 차장 아무도 안 오셨어요?

다 왔어요?

(「다 왔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8항까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등 8건의 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덟 개 부처에서 나오셨는데 혹시 현안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나중에 법안을 심사할 위원회는 빼고 안 오시는 부분만 해 줬으면 좋겠는데 정무위, 행안위, 국토위…… 일단 먼저 하시지요.

○**김진태 위원** 김진태 위원입니다.

경찰청 차장 어디 계시지요?

○**경찰청차장 민갑룡** 여기 있습니다.

○**위원장 권성동** 마이크 없지요? 마이크 없으면 앞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경찰청차장 민갑룡** 있습니다.

○**김진태 위원** 오늘 청장님 어디 가셨어요?

○**경찰청차장 민갑룡** 예, 필리핀에 치안협력사업 차량 전수차 가셨습니다.

○**김진태 위원** 법사위에 오면 괜히 혼날 것 같으니까 안 온 것은 아니지요?

○**경찰청차장 민갑룡** 그 전부터 미리 예정돼 있던 사항입니다.

○**김진태 위원** 그런데 경찰 이것 잘 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드루킹 사건 도대체 수사를 어떻게 해 가지고 이렇게 특검까지 되도록 만들고, 나와서 경찰 수뇌부라는 사람들은 그냥 전부 드루킹·김경수 변호인처럼…… 옛날에 그거 뭐예요, 도대체? ‘드루킹이 문자 보내 가지고 김경수하고 서로 이랬다’ 그랬더니 ‘문자를 열어보지도 않았다’고 서울경찰청장이, 그건 변호인이나 하는 얘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할 말 있어요?

○**경찰청차장 민갑룡** 그 부분은 청장님께서도 행안위에서 답변하셨듯이 좀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김진태 위원** 부족함이 있었다, 이제 와 가지고.

경찰청장은 송인배 청와대 비서관이 김경수하고 드루킹하고 만난 것을 만난 일이 없다, 몰랐다 그러다가 이제 하나씩 하나씩 다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경찰이 민중의, 국민의 지팡이니 무슨 영장청구권을 달라고요? 참 정말 해도해도……

전두환·노태우 경비인력은 내년까지 다 철수 하겠다, 그렇게 할 겁니까?

○**경찰청차장 민갑룡** 그것은 다 철수하는 게 아니고요, 직원들은 일부 남아 있고. 의경들 부분입니다. 의경들은 전부 다 5개년 계획으로……

○**김진태 위원** 뭘 그런 식으로 넘어가려고 그래요. 금년까지는 절반 철수, 내년까지는 경비인력 전원 철수 이렇게 다 발표했잖아요?

○**경찰청차장 민갑룡** 경찰관은 경찰관 경비인력 남아 있고, 의경부대를 얘기하는 겁니다.

○**김진태 위원** 왜 아예 경호도 다 빼지? 경호도 별로 하고 싶지 않지요?

경호는 어떻게 할 거예요?

○**경찰청차장 민갑룡** 경호는 기존 경찰관으로 해서 그대로 하게 됩니다.

○**김진태 위원** 법에 있으니까 아예 빼지는 못하고 경비는 자기들 마음이니가 이제 다 철수하겠단다. 그 앞에 몰려가서 돌 던지라 이거지요? 전직 대통령을 가서 막 잡아다가 무슨 린치라도 가하라는 얘기입니까, 뭘니까?

○**경찰청차장 민갑룡** 의경부대가 빠지더라도 관할서에서 경비는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진태 위원** 아니, 대한민국의 법이 있는 거지. 이것은 그냥 이쁜 사람은 법도 다 무시하고 돌아가실 때까지 경호를 한다고 그러고, 전두환·노태우 전직 대통령은 무슨 악마예요? 대한민국에 살 자격도 없는 사람들이예요? 이런 식으로 자기들 마음대로 말이야…… 제대로 좀 하세요.

○**위원장 권성동** 현안질의하실 위원님들……

○**윤상직 위원** 저도 하나만……

○**위원장 권성동** 아니, 조금 있으면 이 장관님들이 또 각 자기 부처의 법이 있을 테니까……

○**윤상직 위원** 행안부장관님 있습니까?

○**위원장 권성동** 예, 행안부 있습니다.

○**오신환 위원** 경찰청도 있나요?

○**위원장 권성동** 예, 경찰청도 있습니다. 1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윤상직 위원** 예, 그때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성동** 경찰청은 없답니다. 그러면 경찰청만 상대로 하십시오.

윤상직 위원님이 먼저 하시고.

○**오신환 위원** 제가 경찰청에 질의하겠습니다. 차장님……

○**위원장 권성동** 그러면 오신환 위원님 먼저 하세요.

○**오신환 위원** 경찰청?

○**위원장 권성동** 예, 경찰청.

○**윤상직 위원** 먼저 하세요.

○**오신환 위원** 저는 이번 드루킹 수사 관련해서 진행되는 과정들을 보면요 경찰에서의 수사 전문성 또 여러 가지 시스템에 대한 미숙 이런 것들이 드러나고 있잖아요. 이게 향후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해서 그런 역량들을 발휘할 수 있느냐 이점부터 검찰 쪽에서 늘 끊임없이 제기해 온 문제거든요. 이런 큰 중대한 사건들을 경찰이 이렇게 독자적으로 수사해 보기는 거의 처음이지요?

○**경찰청차장 민갑룡** 예,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니다.

○**오신환 위원** 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검찰과의 협조 문제, 이게 어찌 보면 만약에 검경수사권이 완전히 분리됐을 때의 실험적 사례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검찰은 입장이 과거 같지 않고 경찰의 수사를 존중하면서 지켜보는 입장을 계속 견지해 왔습니다. 경찰은 영장 청구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애로를 토로하면서도 그런 것이 언론에 계속 노출이 되어 왔고요. 그런 상황들을 봤을 때 향후에도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 이런 우려들을 갖고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경험해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뭐가 보완되어야 될 것 같아요?

○**경찰청차장 민갑룡** 지금 경찰과 검찰 간에 협력적인 관계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지금 이제 막 태동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 영장에서 일부 기각된 사례도 있었습니다다는 과정에서 점점 더 긴밀하게 협의를 하면서 상호 보완을 하는, 그래서……

○**오신환 위원** 그런 원칙적인 말씀 들으려고 하

는 것은 아니고요. 그것은 당연한 얘기인데, 일단 검찰과 경찰과의 관계는 차치하고서라도 경찰 내부의 시스템을 뭘 바꾸어야 되겠는지?

예를 들어서 지금 수사 지휘체계의 문제도 그렇잖아요. 어떤 것을 경찰청장에 보고해야 되는 건지 안 해야 되는 또 이주민 청장까지 하면 되는 건지 안 해야 되는 건지, 독립적으로 수사를 해야 되는 건지?

지금 검찰에서도 검찰총장의 수사 개입이니 마니 이런 얘기가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지금 몰랐다고 해서 질타받는 경우도 있고 이것은 수사의 개입에 의혹을 가질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중차대한 사안들을 앞으로 경찰이 수사를 할 때 어떻게 체계를 할 건지, 시스템을 만들 건지 이런 부분들도 고심이 있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경찰청차장 민갑룡 예, 그래서 저희가 개혁위원회를 통해서 국가수사본부체제로 해 가지고 중립성, 공정성, 전문성을 확보하는 개혁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경찰이 큰 수사를……

○오신환 위원 시간이 없어서 제가 질문드리면 마지막에 같이 답변해 주세요.

○경찰청차장 민갑룡 예, 알겠습니다.

○오신환 위원 또 한 가지는 자체적으로 역량이 부족한 것 아니냐, 이런 중차대한 사안들에 대해서 경험들이 미숙하기 때문에, 이런 지적들이 많거든요. 그 두 가지를 같이 포함해서 답변을 주십시오.

○경찰청차장 민갑룡 예.

경찰 수사가 큰 사건의 수사에 있어서 사실은 그동안 검사 지휘체제하에서 검사의 지휘에 의존해서 하는 수사를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경찰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역량이 아직 완전히 성장은 안 됐다 그것은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그것은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의존했던 측면이 크고 만일 이제 수사권 조정이 되어서 경찰 스스로 책임지고 수사하는 체제가 되면 훨씬 더 빨리 성장할 수 있으리라고 보고, 즉 경찰의 책임감이 높아지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그런 보고체계라든가 지휘체계 이런 것도 훨씬 더 잘 체계적으로 정비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도 그런 노력들을 지금 개혁위의 권고 등을 바탕으로 해서 국가수사본부 또 경찰 내부의 지휘체제, 검찰의 지휘를 대체하는 지휘체

제 확립 등을 마련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오신환 위원 그렇기 때문에 검경수사권 조정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렇게 미숙함을 경찰 스스로도 인정하는데 이런 중차대한 사건에 대해서 왜 지금 그런 실험을 하고 있는건가요? 그것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사가 미진하고 뭔가 의혹이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거지요.

○경찰청차장 민갑룡 그것은 실험이라기보다도 사실은 지금까지의 그런 것들, 과거의 이런 제도적 잘못으로 인해 가지고 생겨나는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경찰의 수사 책임성과 주체성이 확립되면 그런 부분도 저희가 직접 책임지고 하는, 국민에게 책임지고 수사를 하는 체제가 되기 때문에 빨리 더 개혁이 되고 성장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오신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검경수사권 조정이 된 다음에 하면 되는데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왜 검찰이 이례적으로 직접 수사를 안 하고 경찰이 하는 것을 지켜보고 있는건가요? 그만큼 뭔가 축소하고 의혹을 자꾸 불러일으키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말이지요. 경찰도 스스로 뭔가 부족하다고 지금 인정을 하셨잖아요.

○경찰청차장 민갑룡 통상……

○오신환 위원 나중에 분리가 된 다음에 하라는 얘기예요, 이런 중차대한 사건을, 그때는 어쩔 수 없이 하는 거니까.

○경찰청차장 민갑룡 경찰이 수사에 먼저 착수했고……

○위원장 권성동 자, 마무리……
됐어요? 다 하셨지요?

○오신환 위원 예.
.....

○위원장 권성동 다음은 윤상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상직 위원 부산 기장군 출신 윤상직 국회의원입니다.

행안부장관님!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 예.

○윤상직 위원 경찰청 차장이 답변해도 좋은데, 지금 형사소송법상의 수사는 치안감까지 하게 되어 있지요? 치안정감은 못 하게 되어 있지요? 수사관……

○**경찰청차장 민갑룡**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치안정감도 수사를 할 수 있습니다. 경찰법과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의해서 검사의 기본……

○**윤상직 위원** 아니, 형사소송법상에 보면 치안감으로 되어 있지 않아요?

○**경찰청차장 민갑룡** 그것은 직접수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수사 지휘에 관해서는 조직법, 경찰법에 의해서……

○**윤상직 위원** 아니, 치안정감인 서울청장이 너무, 사실은 수사를 지휘하는 게 아니라 거의 수사를 하는 것 같아요. 그 부분도 법적으로 과연 권한 범위 내의 일인지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행안부장관님, 지금 사실은 우리가 경찰을 어느 정도 믿고 또 경찰이 나름대로 통제받는 권력이다 생각하고 검경수사권 조정 문제를 거론하고 있고 또 행안부장관하고 법무부장관하고 나름대로 합의를 했지요? 그래서 지금 검찰에서 반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패싱 당했다고? 그런데 지금 드루킹 사건 수사하는 것 보면서 그렇게 해도 되겠다고 생각하시는가요? 저는 굉장히 실망스럽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 위원님, 제가 개별 사건에 대해서 경찰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지휘할 그런 것은 아니니까 그것은 위원님이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저런 논란을 정리하기 위해서 결국 국회에서 특별검사에 합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그런 부족하고 미진한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특별검사의 수사를 통해서……

○**윤상직 위원** 장관님, 저는 특별검사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 검경수사권 조정, 사법개혁이라는 측면에서…… 경찰이 법집행기관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매우 중요한 법집행기관인데 지금 하는 것을 보면 참 혼란스러워요, 한마디로. 과연 행안부장관과 법무부장관이 합의한 검경 간의 수사권 조정 또 독립 문제 이 부분 다시 협의를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말 국민들이 살아 있는 권력의 눈치를 봐도 이렇게 보는 경찰에 대해서 과연 신뢰를 하고 수사권을 줄 수 있겠느냐는 이야기지요.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 일단은 저희들이 봤을 때 결국 형사사법 체계라는 것은 결국 국민 인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실체적 진실 발견에 과연 어떤 게 더 도움이 되겠느냐는 관점

에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어느 한 기관이 전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없도록 서로 항상 견제하거나 이의제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관점에서 문제를 보고 있습니다. 아직 최종안이 마련된 것은 아니고요 조금 마지막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윤상직 위원** 이번에 저는 정말 경찰에 대해서 실망의 정도를 넘어서 이럴 수 있느냐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아마 이것 국민들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수사가 무슨 양파 까기도 아니고 계속 까져 나와요. 그것도 언론에서 지적을 하면 그때부터 또 깎니다. 이것은 경찰 수사가…… 아무리 그래도 지금 광역수사대 있고 지능범죄수사팀들 다 있습니다. 경찰이 스스로 제대로 한번 해 보겠다고 해서 준비한 게 한 사오년 됩니다. 지금까지 아무것도 이런 준비가 안 되어 있다, 능력이 부족하다고 그러면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지요.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 지난주 금요일 행정안전위원회에서도 위원님과 같은 그런 많은 지적이 있었고 일부에 대해서는 경찰청장이 미진하고 또 좀 서툰 점이 있었다는 부분을 사과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금 제기하신 문제점들이 특별검사 과정에서 또 그런 문제도……

○**윤상직 위원** 아니,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포인트가 다릅니다. 미진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살아 있는 정치권력에 대해서 알아서 기계 되면 이것은 인권 문제를 넘어서는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권성동** 자, 윤상직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상직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권성동** 장관님, 윤상직 위원님의 질의 요지는 드루킹 사건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검찰이나 경찰이 다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 제대로 수사를 못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게 경찰을 지휘할 것이냐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을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 예.

○**위원장 권성동** 다음에 금태섭 위원님 질의하시고 그리고 정갑윤 위원님 순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금태섭 위원** 경찰청 차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논의가 있는데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하자고 저희가 주장을 하고 또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공약에서 말씀을 하신 것은 검찰은 재판에 관여하고 기소를 하기 때문에 수사를 하다 보면 기소할 때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게 영향을 미칠 수가 있거든요. 경찰에 수사를 맡기자는 것은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하라는 겁니다. 잘 알고 계시지요?

○**경찰청차장 민갑룡** 예.

○**금태섭 위원** 그런데 이번에 드루킹 사건을 수사하면서 보면 '김경수-드루킹 만남 담긴 노트북 경찰 압수수색 때 지나쳤다, 드루킹-김경수 만남 모두 기록한 USB 있다' 이런 수사 상황이 실시간으로 보도가 있고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찰청차장 민갑룡** 저희는 나름대로 수사의 보안을 지켜 가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워낙 관계자들이 많고 또 경찰 외부……

○**금태섭 위원** 그러면 앞으로 경찰에서 나름대로 보안 수칙을 지켜 가면서 해도 경찰은 숫자가 많으니까 이런 사건 수사가 진행되면 수사 결론이 나기 전에도 구속된 피의자나 이런 사람들의 일방적인 진술이 보도가 되면서 관련자의 명예가 다 훼손될 것 아니겠습니까? 나중에 이 사건에 관련된 김경수 전 의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혀지더라도 중간 과정에서 일방의 진술이 이런 식으로 아무런 근거가 없이 보도가 되면 그것은 경찰 수사를 믿을 수 없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경찰청차장 민갑룡** 저희도 그 부분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금태섭 위원** 아니, 그냥 안타까워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 이런 것이 유출이 됐는지 좀 확인을 하고 관련자가 잘못된 사람이 있으면 책임을 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찰청차장 민갑룡** 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님 당부대로……

○**금태섭 위원** 사실 경찰이 압수수색을 하면서 USB나 노트북 압수를 못 했다고 하는 것은 피의자들 측에서 유출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자기들한테 유리하거나 불리한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지금 피의자들 측에서도 언론과 직접 접촉을 해서 보도된 것이 있지만 우리가 봐서는 엄연히

경찰의 일부가 지금 수사 상황을 실시간으로 흘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객관적이고 정확한 내용이면 모르겠는데 아무 근거 없는 일방의 주장 아니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수사가 진행이 되면 어떻게 경찰 수사를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특검 도입해서 저희는 철저히 수사해 달라는 입장이지만 정말 이런 부분은 앞으로도 주의를 해 주십시오.

○**경찰청차장 민갑룡** 예, 잘 알겠습니다.

○**금태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성동** 잠깐만요.

정갑윤 위원님, 박주민 위원 다 경찰청 상대입니까? 그러면 다른, 지금 방송통신위원장을 제외한 나머지 국무위원들은 또 출석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 끝나자마자 행안부장관님, 환경부, 국토부는 또 물관리 일원화법 의결이 있으니까 세 분은 옆에 가셔서 조금 대기하시고 방송통신위원장과 경찰청 차장만 남으시고 나머지……

○**정갑윤 위원** 행안부장관도 잠깐 있어야 돼요.

○**위원장 권성동** 행안부장관님은 앉아 계시지요, 어차피 경찰청 지휘하시니까.

나머지 분들 일어서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찰청 차장 앞으로 나오세요.

그러면 정갑윤 위원님 3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갑윤 위원** 장관, 반갑습니다. 보통 선거의 총괄 지휘는 행안부가 하지요?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 지휘라기보다도 저희들 여러 가지 선거……

○**정갑윤 위원** 관리 감독.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 감독이라기보다는……

○**정갑윤 위원** 여하튼……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 예, 관리합니다.

○**정갑윤 위원** 맞지요?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 예.

○**정갑윤 위원** 특히 최근에 일부 지역에서 경찰 인사가 조만간에 멀지 않아, 불과 1, 2개월 내에 있을 거라고 예측을 합니다. 그렇지요, 장관?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 아마 경찰청장님의 임기가 6월 말로 예정이 되어 있어서, 또 정기 인사, 하반기 인사가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봐서 큰 폭은 아마 금년 연말에 가서 있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마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정갑윤 위원** 지금 일부 지역에서는 새 정부 들어서서 지난해에 인사 하고 이제 두 번째 인사

철이 다가오니까 특히 경찰 조직이 선거 때 어떤 역할을 하기 위해서 정말 무분별하게 수사를 하고 있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선거 때는 소위 어떤 일정 기간 내에는 아마 선거법 관련된 또 그 선거와 관련 있는 사건에 대해서는 조금 유보해 온 게, 대체로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 위원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도 지난번에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사나 이런 것은 선거 이후로 다 미뤄 달라는 그런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선거법에 관한 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선거의 특성을 생각한다면 그렇지 않을 경우에 현장에서 다양한 형태로 위반이 속출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은 긴장을 하게 하는 것이 공익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갑윤 위원** 그렇지요, 그것은 시기를 놓치면 안 되니까. 그러나 그와 관련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장관이 서두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대체로 지금까지 그렇게 운영해 왔고 이번 선거에도 마찬가지지요?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 예, 그건 분명히 그렇게 지침을 내렸고요 저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제가 있으면 전후 내용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점검을 하겠습니다.

○**정갑윤 위원** 지금도 보면 어떤 지역에서는 계속 언론에 사실을 흘려 가지고 마치 사실인 양 호도하고 있거든요. 이러한 것은 결국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은 결국 그 수사 내용의 본질보다는 다른 방향으로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겁니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 위원님 지적하신 문제, 제가 다시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정갑윤 위원** 그래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성동** 박주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주민 위원** 서울 은평갑 국회의원 박주민입니다.

저도 경찰청 차장님께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된 기사를 하나 띄워 주셨으면 하는데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 기사를 보면 박사모 측에서 매크로 프로그

램을 사용했다, 그런 정황이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보시면 박사모 카페에 2017년 2월에 ‘자동으로 입법 반대 등록하는 방법(매크로 프로그램 사용방법)’이라는 글이 올라가 있고 매크로 프로그램도 올라가 있는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또 2016년 12월부터 ‘입법예고 대책’ 카테고리가 만들어져서 거기에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불리한 법안의 명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추려져서 올라오기도 했다라는 내용도 기사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 게시물에 대해서 회원들이 댓글을 달아서 ‘가족들 컴퓨터 3대로 매크로를 걸어 놓으니까 완전 대박’ ‘사용해 보았는데 아주 좋다’ 이런 글들도 게재가 되어 있는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차장님, 2월 초에 저희 당 디지털소통위원회에서 저렇게 박사모가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가지고 국회 입법예고시스템에 여러 가지 작업을 했다라는 자료를 제공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경찰, 받으신 거 맞지요?

○**경찰청차장 민갑룡** 예, 지난 2월 6일 고발 대리인으로부터 관련 증거자료를 제출받아서 현재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주민 위원** 지금 수사를 진행 중인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경찰청차장 민갑룡** 예, 지금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주민 위원** 저 관련된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까?

○**경찰청차장 민갑룡** 예.

○**박주민 위원** 드루킹 사건 같은 경우야 특검이 진행되면 특검을 통해서 수사가 진행되면 될 것 같은데요 박사모라든지 이런 쪽에서 매크로를 사용한 부분은 특검과 상관없지요?

○**경찰청차장 민갑룡** 예.

○**박주민 위원** 따라서 경찰이 계속 수사를 해야 되는 것이지요?

○**경찰청차장 민갑룡** 예, 그렇습니다.

○**박주민 위원** 경찰이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수사를 하는 기관이라면 당연히 박사모 측의 저런 매크로 사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히 공정하게 수사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경찰은 그렇게 공정하게 수사를 할 예정이지요?

○**경찰청차장 민갑룡** 예, 관련된 의혹에 대해서 철저히 수사하겠습니다.

○박주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성동 이용주 위원님.

○이용주 위원 차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철성 청장이 지난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수사가 시작된 지 100일 정도 지났는데 최근 50일 동안 할 수 있는 부분 다 했다’ 이렇게 말을 했지 않습니까?

○경찰청차장 민갑룡 예.

○이용주 위원 그 말을 뒤집어 보면 나머지 50일, 수사 초기의 50일은 제대로 수사를 안 했다고 말한 것과 다름없는데 동의하십니까?

○경찰청차장 민갑룡 나름대로 수사 초기 과정에서 필요한 사항들은 최선을 다해서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용주 위원 그래요. 그 당시 이철성 청장이 행안위에서 그런 말을 했었어요. 청장은 ‘드루킹과 송인배 청와대 제1부속비서관의 접촉에 대해서 보고받지 못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이주민 서울청장은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을 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경찰 조사 도중에 청와대 비서관, 특히 대통령의 측근으로 불리는 사람 이름이 거론됐다고 한다면 그 내용이 어떻든 간에 당연히 보고가 되어야 될 사안이 아닙니까?

○경찰청차장 민갑룡 그런데 경찰이 그런 보고 체계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 가다듬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용주 위원 단순히 보고체계상의 문제로 보면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게 그럴 만한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있는 게 많은 국민들의 시각입니다.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최근 서울경찰청 수사팀에서 김경수 전 의원에 대한 통신영장을 발부받아서 통화내역을 확보했지요?

○경찰청차장 민갑룡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런데 통상적으로 이동통신사에서 1년치 정도의 통화내역만 보관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찰청차장 민갑룡 예.

○이용주 위원 그래서 최근에 통신영장을 발부받아서 사실상 5월 9일에 있었던 지난해 대선 전후한 통신내역에 대해서는 확보에 실패한 거지요?

○경찰청차장 민갑룡 그전에 영장을 신청했지만 그 사건은 필요성과 상당성 부분에 대해서 일차로 한 번 기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재차 신청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용주 위원 아마 일차 검찰에서 반려한 것은 맞으나 그 이후에 한 달 동안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지금에서야 한 것은 사실상 대선 전후에 이루어졌던 통화내역에 대해서 확보할 의지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냐라는 의문들이 제기되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찰청차장 민갑룡 일차로 기각이 된 이후에 필요성과 상당성을 갖추기 위한 조사 등을 해서 다시 갖추어서 영장을 신청했고 이제는 발부가 된 사안입니다. 그동안 그런 요건을 갖추기 위한 노력을 했습니다.

○이용주 위원 알겠습니다.

일반 국민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경찰들이 드루킹 수사에 대한 의지가 별로 없다’ ‘경찰은 지금 특검이 빨리 출범을 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 사건을 가져갔으면 한다’ 이런 인식들을 갖고 있어요.

남은 기간 특검이 정식 수사하기 전이라도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수사를 하시는 게 국민들이 경찰을 신뢰하는 길이 되지 않겠습니까?

○경찰청차장 민갑룡 위원님 당부하신 대로 최선을 다해서 마지막까지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권성동 다음에 박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원 위원 김부겸 장관, 수고 많습니다.

이철성 경찰청장 임기가 언제까지예요?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 6월 30일까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지원 위원 연임시킵니까?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 아니, 이제 나이가 정년이 돼서……

○박지원 위원 정년 되잖아요. 그런데 왜 후임 아직 선임 안 하세요?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 아마 선거 등등 영향 그런 것……

○박지원 위원 선거는 선거고 경찰은 경찰입니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만간……

○**박지원 위원** 그런데 만약에 임기 끝나고 경찰수뇌부 공백이 길어지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거예요. 저는 드루킹 수사 철저히 하고 경찰도 잘하고 특검도 해서 이것 덮을 일 아니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보십시오, 수사를 책임지고 있는 서울청장하고 본청장하고 늘 견해가 달랐잖아요. 그러니까 심지어 본청장을 패싱시킨다…… 사실 패싱당하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권력의 속성상 나갈 사람한테 안 한다는 말이에요. 서울청장은 더 큰 꿈을 보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이상한 수사를 한다는 말이에요.

아니, 경찰이 임기가 내일 끝나더라도 오늘까지 청장이면 서울청장은 제대로 경찰청장한테 보고를 해서, 또 본청장은 국민에게 밝힐 것을 밝히고 밝히지 않을 것은 안 밝히더라도……

‘보고 안 받았습시다, 나는 모릅시다’ 이게 경찰의 기강이 되는 거예요? 서울청장이 경찰청장 되는 겁니까?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 그런 말씀을……

○**박지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의심을 하는 거예요.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박지원 위원** 그러니까 서울청장도 본청장의 임기가 끝나는 날까지도 제대로 보고를 해서, 본청장도 제대로 장악을 해서 국민들한테 발표를 해야 경찰을 믿지 안 그래도 검경수사권 조정 등 아주 텔리커트한 문제가 많은데 서울청장 말 다르고 본청장 다르고, ‘나는 모릅시다, 보고 안 받았습시다’ 하니까 혼선이 오니까 경찰에 대한 좋은 이미지가…… 저처럼 경찰 더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도 이래서는 안 된다 하는 거니까 그걸 장관이 좀 확실하게 장악을 하셔서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모르면 이철성 청장도 아무 소리 하지 않는 게 좋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 위원님 지적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성동**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경찰청을 상대로 한 현안질의가 없기 때문에 현안질의는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 환경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세 분은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물관리 기술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대안),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물관리기본법안(대안), 이상 3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일정 상정의 건**

(09시51분)

○**위원장 권성동** 법률안 상정에 앞서서 국회법 제59조 단서에 따라 의사일정 상정을 위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2항, 제38항, 제52항, 제90항, 제91항, 제203항, 제204항의 법률안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지 5일이 경과되지 아니하였습니다마는 여야 원내대표 간의 합의 등 시급히 심사할 필요가 있어 7건의 법률안을 간사 위원 간 협의를 거쳐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용주 위원** 위원장님,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권성동** 상정했는데, 이미.

○**이용주 위원** 이의 있다고 했는데 못 들으셨나 봅니다.

○**위원장 권성동** 목소리가 크지 않아서 안 들렸기 때문에. 나중에 말씀하십시오.

다음은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안건과 물관리 관련 환경부와 국토교통부 소관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7.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안상수 의원 대표발의)(안상수·정유섭·장병완·유성엽·박준영·박찬우·성일종·이학재·김석기·조훈현·신동근·황영철·박남춘·홍일표·김순례 의원 발의)

28.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박정·이찬열·이훈·윤후덕·박남춘·박재호·김정우·어기구·신경민·한정애 의원 발의)

29.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권석창·홍문표·함진규·정태욱·박인숙·한선교·경대수·박찬우·성일종·강효상 의원 발의)

30. 統一主體國民會議法 폐지법률안(전희경 의원 대표발의)(전희경·김성원·민경욱·김승희·임이자·강석진·함진규·김선동·정태욱·이종명 의원 발의)

31. 參議院議員選舉法施行에關한法律 폐지법률안(전희경 의원 대표발의)(전희경·김성원·민경욱·김승희·임이자·강석진·함진규·김선동·정태욱·이종명 의원 발의)

32.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

33.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52. 물관리기본법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90. 물관리 기술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

○위원장 권성동 의사일정 27항 안상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33항 정부가 제출한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까지 그리고 의사일정 제52항 물관리기본법안(대안)과 의사일정 제90항 물관리 기술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대안), 이상 9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 나오셔서 정부가 제출한 의사일정 제33항의 법률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 존경하는 권성동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정부에서 제출한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수지·댐의 안전관리기준 등을 심의하는 중앙 저수지·댐 안전관리위원회에 현장전문가 등 민간위원의 수를 확대하고—현재 네 분을 여섯 분으로 확대하는 겁니다—저수지·댐 안전관리 예방·대비 업무를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범위를 명확히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현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것을 ‘시장·군수·구청장’으로 명확히 하는 겁니다.

아울러 과태료 부과 처분 및 징수 절차 관련 조항을 삭제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으로 일원화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정부에서 제출하고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심의한 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성동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8건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박수철 수석전문위원 검토사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수철 수석전문위원 검토 결과 보고 올리겠습니다.

요약본 4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법률안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2항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 의사일정 제33항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건에 대해서는 체계·자구를 검토한 결과 조문 체계 정비와 경미한 자구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의사일정 27항, 28항, 29항, 30항, 31항 이상 5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체계·자구를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어서 물관리기본법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2쪽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2항 물관리기본법안(대안)의 안 제3조제1호의 ‘물’의 정의와 관련해서는 대안에서 물의 정의를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물의 정의 내용은 물을 인용하고 있는 예컨대 ‘물순환’ 등 다른 정의 규정에 대입시켜 적용할 경우에 법문 표현상 중복과 그로 인한 해석상의 혼란을 야기시킬 우려가 있고 타 입법례를 보더라도 물의 정의에 대한 필요성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보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보아서 삭제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33조제5항은 물분쟁 당사자가 국가물관리위원회 또는 유역물관리위원회의 조정안을 수락하고 기명날인한 조정 조서에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부여하고 있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제정안의 국가물관리위원회 또는 유역물관리위원회가 분쟁 조정만을 위하여 설치된 기관이 아니고 동 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있어서도 다양한 경력과 지식을 가진 분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해 봤을 때 조정 조서의 효력에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부여하게 되면 사실상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제약하는 측면이 있다고 봐서 삭제 의견을 제시하는 등 제정안의 체계와 자구를 정비하였다는 보고를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상 8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권성동** 다음에는 환경부 소관 법률안에 대해서 이문한 전문위원 검토사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문한** 의사일정 제90항이고 요약보고서 5쪽의 내용입니다.

물관리 기술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대안)은 물산업 진흥과 물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연구진흥시설, 실증화시설 등으로 구성된 물산업 실증화시설 및 집적단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물관리 기술의 발전과 물산업의 진흥을 위한 내용으로 용어 정의에 맞추어 법제명을 수정하고 물산업 실태조사의 주체를 환경부장관으로 명확히 규정하며 물산업 실증화시설 및 집적단지의 조성·운영 등 조항의 중복되는 내용을 삭제하고 제정안에서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단체 또는 법인의 임직원에 대한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규정을 마련하는 등 수정이 일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권성동**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국토부차관, 의사일정 제52항 물관리기본법안에 대해서 전문위원이 수정의견을 제시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다 동의하시는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권성동** 좋습니다.

이게 지금 아마 물관리에 관해서 부처 간의 조정을 담고 있는 것 같은데 세 분 중에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합의가 된 건지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그동안은 댐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국토부에서 담당을 하고, 그런데 이번에 국토부에서 담당하던 부분이 지금 환경부로 넘어간 부분이 있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정리가 된 건지 한번 설명해 보세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국토부차관이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환경부와 국토부 사이에 수질·수량으로 이원화되어 있던 그 부분을 일원화시켜서 다 환경부로 일괄 이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원래 당초 정부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런데 국회에서 하천 관리 기능은 존치하는 쪽으로 그렇게 합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천법……

○**위원장 권성동** 하천 관리 기능은 국토부에서 그대로 관리하는 것으로 하고?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예, 그렇습니다. 하천법은 그대로 국토부에서 소관하고 나머지 댐법과 친수구역법, 기타의 기능들은 이번에 환경부로 일괄 이관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권성동** 댐하고 어디하고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댐하고 그다음에 지하수법……

○**위원장 권성동** 댐, 지하수는 수질·수량 모두 환경부에서 관리하고?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성동** 하천은 그대로……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국토부에서.

○**위원장 권성동** 시설은 국토부에서 관리하고 수질은 환경부에서 관리하는 그대로 가고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성동** 알겠습니다.

대체토론하실 위원님들 계신가요?

노회찬 위원님.

○**노회찬 위원** 지금 이게 물관리 일원화 3법이라고 해서 올라왔는데 방금 설명대로 하천법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하천은 국토부가 여전히 관리한다는 것이고 나머지가 환경부로 이렇게 일원화되었다는 점에서 물관리 일원화라는 말 자체가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물관리 이원화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법안을 오늘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통과시키지 말고 소위에 계류시키고 하천법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제가 환경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물산업 진흥법과 관련해 가지고 환경부 입장이 됩니까?

○**환경부장관 김은경** 물산업 촉진법이라고 얘기하는 물관리 기술개발 촉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은 지금 많은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것이 이것이 물 민영화나 이런 것들을 촉진하게 될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를 갖고 계셨습니다. 환노위 심의에서도 그런 의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 법은 수도를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범위 내에 넣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 민영화에 대한 것은 제외가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도 기술이라는 것은 필요하고요. 그것에 대한 지원들은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서 이 법이 통과된다면 물산업을 기술개발에 초점을 맞추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회찬 위원 지금 이 물산업 진흥법은 사실상 2019년도 예산에 대구 물산업클러스터 사업 처리 예산을 배정하기 위한 근거법으로서 이렇게 줄속 추진된 바가 큼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여기에 국비를 넣느냐 마느냐 가지고 굉장히 오랫동안 논란이 있어 왔던 법이고요. 사실은 물 일원화와 물산업 진흥법을 달했다라는 의혹도 지금 계속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역시 법안심사소위에서 더 논의가 돼야 되고 이것이 제정법임에도 불구하고 공청회 한 번 거치지 않고 법사위까지 왔다는 것도 문제가 제기될 수 있고 그리고 환경부는 하천 관리까지 포함해서 물 일원화를 이루어야 되는 게 그간의 입장 아니었습니까?

○환경부장관 김은경 예, 맞습니다. 그러나……

○노회찬 위원 그 입장이 지금도 유지되고 있는 겁니까?

○환경부장관 김은경 그렇지만 국회에서 논의한 것을 저희가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

○노회찬 위원 저는 그런 환경부의 입장까지 감안해서 하천법까지 다 함께 처리해야 물 일원화지 지금 물 일원화 상태를 가지고 일원화를 고착화시키는 법안을 물 일원화라는 이름으로다가 법사위에서 통과되는 데 대해서 반대하는 바입니다.

○환경부장관 김은경 위원님, 한 말씀만 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장 권성동 아니, 발언권 안 드렸는데요.

○환경부장관 김은경 죄송합니다.

○위원장 권성동 노회찬 위원님께서 소위 말하는 물관리 일원화 3법에 대해서 제2소위에 회부해서 심도 있게 논의하자는 그런 의견을 제시하셨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금태섭 위원님.

○금태섭 위원 노회찬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 법이 오랫동안 여야간에 합의가 돼서 지금 법사위로 왔는데 여기서 다시 2소위로 보내게 되면 단순히 체계자구 심사가 문제가 아니라 물관리 정책에 대해서 논의가

전반적으로 다시 법사위에서 이루어지는데 그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환경부장관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방금 말씀하려고 하던 걸 좀 얘기해 주세요.

○환경부장관 김은경 물관리 일원화가 전체 물을 커버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도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이 법의 논의가 이미 1년 정도 걸렸습니다. 그동안에 많은 일들이 지금 펜딩되어 있는 상태고 그래서 일단 이 법이 통과된다면 저희 입장에서는 향후에 하천법까지 가지고 통합할 수 있는 방안들을 고려해서 업무를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태섭 위원 하천법이 올라오면 그건 소관 상임위에서 다시 한번 이것과 체계를 맞춰서 할 수가 있지요?

○환경부장관 김은경 예.

○금태섭 위원 국토부차관님, 어떻습니까? 이걸 반드시 같이 다뤄야 되나요, 아니면 지금 일단 통과를 시키고 나중에 하천법이 오면 이런 것과 다 부처 간에 조정이 가능합니까?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을 드렸습시다마는 저희 국토부 및 정부의 의견은 통합적인 물관리 일원화를 추진하는 것입니다.

다만 지금 국회에서 그런 식으로 합의가 됐기 때문에 그 합의 정신을 존중해서 지금 하천법을 국토부에 존치시킨 것이고 그 부분은 이제 2단계 추진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금태섭 위원 오랜 기간 동안 여야가 합의했는데 법사위에서 잡는 것은 좀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권성동 예, 알겠습니다.

오신환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오신환 위원 이게 지난 5월 18일 날 원내대표간 합의문에 명시가 되어 있는 겁니다. 오랜 기간 동안 원내수석 간의 조정 합의를 도출해 내려고 노력했으나 제가 협상 대상자로서 이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다가 정말 어렵게 합의가 된 거고 그 합의문 서명에 사실 노회찬 대표님 서명이 있습니다. ‘물관리일원화 관련 3법(하천관리법은 국토교통부에 존치)은 28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 이렇게 합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2소위로 가게 되면 그 합의가 깨지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저희

바른미래당 안에서도 이견이 굉장히 많습니다. 처리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위원장 권성동** 알겠습니다. 아마……

○**노회찬 위원** 제가 잠깐 1분만 얘기할게요, 발언권 주십시오.

○**위원장 권성동** 잠깐만요.

○**노회찬 위원** 제가 거명됐으니깐요.

○**위원장 권성동** 제가 대신 말씀드릴게요.

그건 아마 합의문에는 원내대표로서 합의하신 거고 오늘 반대하신 것은 법사위원 개인 자격으로 반대하시는 것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노회찬 위원** 저 30초만 얘기할게요.

○**위원장 권성동** 예, 말씀하십시오.

○**노회찬 위원** 제가 합의한 당사자인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합의가 얼마나 졸속적이었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관리일원화 관련 3법’이라고 했습니다. 일원화가 아니라 이원화를 고착시키면서 일원화라고 표현했고요. 존재하지도 않는 하천관리법 국토부 존치한다고 했습니다. 범명도 제대로 명기하지 못할 정도로 졸속적인 합의였기 때문에 얼마든지 국회가 최종 의결에 이르기 전까지 과정에서 다시 검토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권성동** 알겠습니다, 그만 논쟁하십시오.

이게 여야 원내대표 간의 합의사항이고 또 노회찬 위원님을 제외하고 모든 위원들께서 이 법의 통과를 희망하고 있기 때문에 노회찬 위원님의 의견을 소수의견으로 남기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제28항, 제29항, 제30항, 31항의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제33항, 제52항, 제90항의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 분 나와 계시는데 현안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박지원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고 다음에 김진태 위원님 순으로 하겠습니다.

○**박지원 위원** 환경부장관, 제가 수차 얘기를 물었고요 또 제가 보고도 받았고 담당 국장과도 공적인 장소에서 사적인 얘기로 확인된 사항입니다. 흑산도공항 문제는 아직도 펜딩되고 있습니까?

○**환경부장관 김은경** 심의 중입니다.

○**박지원 위원** 언제까지 심의 중이에요? 문제인 대통령 임기 끝나면 하는 거예요?

○**환경부장관 김은경** 지금 심의 중이어서, 그건 공원위원회에서 일정을 잡아서 심의를 하고요. 지금 현장도 다녀오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지원 위원** 그런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국토교통부차관 잘 아실 거예요. 당시 흑산도공항의 필요성에 대해서 예비타당성조사가 아주 높게 나왔어요. 그런데 울릉도공항도 필요하다, 그런데 거기는 예비타당성조사가 아주 밑으로 나와서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호남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 이례적으로 흑산도와 울릉도공항을 합쳐가지고 예비타당성조사를 해서 그게 패스됐어요. 차관, 그렇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지원 위원** 그렇게 해서 지금 예산이 다 배정되어 있어요. 그리고 울릉도공항은 공사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왜 흑산도는 예비타당성조사도 예산 배정도 됐는데 이제 장관이 부임해서 가지고 환경부에서 제동을 거는 이유를 우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물론 환경보전도 좋지만 사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물론 흑산도는 깨끗한 참 보전하고 싶은 섬이에요. 그렇지만 우리나라 국토의 70%, 80%가 산, 자연보호지역인데 그렇게 환경 파괴가 되는 곳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공항이 건설됨으로써 흑산도가 다시 사랑할 수 있는 요지가 되기 때문에, 물론 환경부장관께서도 의지를 가지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는 관심 가지고 빨리 결정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환경부장관 김은경** 울릉도와 흑산도는 약간 경우가 달라서요, 흑산도는 국립공원이고 울릉도는 국립공원이 아닙니다. 그래서 심의 절차가 약간 더 길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 도시공원위원회에서 처리하는 절차들이 가능한 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챙겨보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박지원 위원 국립공원이 더 중요하지 흑산도 국립공원도 아닌데 거기를 붙들고 있으면 이해가 되겠냐 이거예요..

○환경부장관 김은경 흑산도가 국립공원입니다.

○박지원 위원 울릉도는요?

○환경부장관 김은경 아닙니다.

○박지원 위원 아닙니까?

○환경부장관 김은경 예.

○박지원 위원 빨리 좀 해 주십시오.

○환경부장관 김은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성동 다음 김진태 위원님.

○김진태 위원 김진태 위원입니다.

환경부장관님, 흑산도만 문제가 아니고 설악산도 문제예요. 동서고속철 춘천에서 속초 가는 그것 거기를 환경영향평가 통과 안 시켜 주고 설악산 터널 뚫지 못한다, 돌아가라 그랬지요?

○환경부장관 김은경 심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태 위원 이번에 그걸 다시 반려시켜 가지고, 옆에 국토부 계시는데 안 된다고 그래 가지고 국토부에서 환경영향평가 다시 신청한 적 있잖아요. 국토부차관 맞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예, 환경부와 조금 더 협의를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태 위원 그런데 환경부장관님, 그냥 책상에 앉아 가지고 국립공원은 지나지 말고 빙 돌아가라고 선만 긋는다고 그게 그냥 그렇게 막 되는 게 아니에요. 엄청난 국책사업을 그런 식으로 하면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은 환경부에서 댈 겁니까?

그리고 터널로 뚫는 것은 환경에 문제가 있고 빙 돌아가는 것은 괜찮다? 빙 돌아가면 어디 공중으로 지나가요? 거기 전부 다 갈아엎어야 돼요. 설악산 생태환경은 환경부 직원들보다도 강원도민들이 더 사랑합니다. 짧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어떡할 거예요, 이것?

○환경부장관 김은경 환경부의 일차적 책임은 국립공원을 잘 보전하는 데 있습니다. 사업을 할 때 그것을 고려해서 환경영향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런 점에서 어떤 것들이 국립공원을 가장 잘 지킬 수 있는가를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대안들이 같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태 위원 말씀은 그렇게 하시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 이게 중단 지연되고 있어요. 당장 설계비 예산 힘들게 받아 가지고 설계를 해야 되는데 지금 설계도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얘기하시는 것 보니까 국립공원 지키는 건 좋습니다. 강원도 설악산 다 와 보셨겠지만 거기 국립공원과 국립공원 아닌 곳의 차이가 그렇게 크지도 않아요. 다 정말 아름다운 곳이에요. 그걸 그렇게 너무 탁상행정으로 하면 사업 자체가 진행이 안 됩니다.

보니까 환경부는 우리 정부부처도 아니고 국토부나 다른 부처와 조율도 안 되고 그냥 짤짤 매게 만드는 것 같아요. 거시적인 차원에서 다른 부처와도 잘 조율 협조해 나가기를 당부드립니다.

○환경부장관 김은경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성동 다음에 윤상직 위원님 질의하시고 이용주 위원님 하시기 바랍니다.

○윤상직 위원 짧게 할게요.

환경부장관님, 산업부에서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보급 비율을 20%로 올린대요. 그것 잘 지켜보시라고요. 아마 태양광이나 풍력 중심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금수강산 없어집니다.

그리고 다음에 오실 때 꼭 한 곳에 들렀다가 소감을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영월에 태양광발전소가 있어요. 산허리 40만 평을 깎았습니다. 보시고 과연 이런 정책을 계속해야 되는지, 환경부가 정말 이걸 개입을 해야 되겠다 생각하시면 의지를 가지시고 산업부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3020 분명하게 목소리 내 주십시오. 우리나라 금수강산 그 계획대로 가면 다 엉망 됩니다. 부탁드립니다.

○환경부장관 김은경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권성동 이용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용주 위원 환경부장관님, 라돈 침대 사태 이걸 두고 제2의 가슴기살균제 사태다라고까지 언급하고 있는데요. 환경부가 제대로 일하지 않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환경부장관 김은경 라돈 침대의 관할은 지금 환경부가 아니고 원자력위원회로 되어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러면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이런 부분들은 전혀 환경부에서 관여할 바가

아니라는 말인가요?

○**환경부장관 김은경** 환경부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실내의 공기질 중에서 라돈의 농도가 어떤 정도인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철이나 다중이용시설 이런 곳의 라돈 농도를 측정해서 개선 권고를 하거나 하는 것들은 환경부 책임입니다.

○**이용주 위원** 즉 생활 방사능이라고 해서 실내 라돈지 학교 내, 주택 내의 문제들에 대해서는 환경부가 관리하고 있는 게 맞지요?

○**환경부장관 김은경** 예, 맞습니다.

○**이용주 위원** 이것을 두고 예고된 사태다라는 말이 있어요. 어떤 취지냐면 2007년도에 건강침대 사건이 있었지요? 당시 수백만 원대에 판매된 건강침대에서 기준치를 9% 초과한 방사능이 검출됐던 사건도 있었지요?

○**환경부장관 김은경** 예.

○**이용주 위원** 그런 연유로, 2011년도에 가정용 벽지에서도 방사능이 검출됐던 사건도 있어서 이걸 기화로 해서 2012년도에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이 제정됐지 않습니까?

○**환경부장관 김은경** 예.

○**이용주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소관 부서인 환경부에서 이런 것들, 즉 건강침대에서 문제가 됐기 때문에 당시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침대라든지 생활용품 등에 대한 전수조사라든지 계획이 있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다가 이번에 라돈 침대 사태를 맞은 것 아닙니까?

○**환경부장관 김은경** 제품에 관련한 관할권이 환경부에 있지 않습니다. 지금 방사능으로 인한 문제는 원안위가 감당을 해야 되고요. 제품 부분은 대체로 산업부의 관할입니다.

○**이용주 위원** 결국 원안위나 산업부에서 제대로 대처를 하지 않아서 그런 것이지 관련 법안의 소관 부처인 환경부에서는 전혀 관여하지 않고 있어서 책임이 없다는 그런 취지입니까?

○**환경부장관 김은경**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내 공기질에 대한 것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대진침대가 정부의 조치명령에 따라서 교환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환경부장관 김은경** 예.

○**이용주 위원** 얼마나 영터리로 하고 있느냐 하면 ‘교환받은 매트리스에서조차도 기준치의 10배가 넘는 라돈이 검출되고 있다’ 이런 보도 보셨습니까?

○**환경부장관 김은경** 예, 봤습니다.

○**이용주 위원** 정부가 제대로 일하고 있는 건가요?

○**환경부장관 김은경** 어쨌든 지금 상황으로는 원안위의 책임이어서……

○**이용주 위원** 그것을 바로잡을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까, 현 정부에는?

○**환경부장관 김은경** 지금 국무총리실에서 공동 대응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결국 환경부장관 보기에 정부부처 어디인지는 모르지만 하는 일이 제대로 못 되고 있다고 보시는 거지요, 장관께서도?

○**환경부장관 김은경** 공동으로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성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여상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상규 위원** 환경부장관님께 몇 가지 묻겠습니다.

섬진강 중하류 지역에 한번 가 보셨습니까?

○**환경부장관 김은경** 예.

○**여상규 위원** 모양이 어떻던가요?

○**환경부장관 김은경** 섬진강은 제가 알기로는 가장 수질이 깨끗하게 보전되고 있는 곳……

○**여상규 위원** 깨끗하다고요?

○**환경부장관 김은경** 예.

○**여상규 위원** 가서 제대로 잘 파악하지 않고 피상적으로 알고 계시네요.

섬진강 하면 지리산을 관통해서 흐르기 때문에 당연히 맑아야지요. 섬진강의 대명사가 바로 은빛 모래 백사장입니다. 그게 상징적으로 섬진강 하면 떠오르는 풍경인데 그런 은빛 모래 백사장이 지금 어떻게 변했는지 보셨지요? 가셨다니까 보셨을 것 아니에요. 전부 잡초 더미로 다 바뀌어서…… 왜 그렇게 됐는지 아십니까?

○**환경부장관 김은경** 예.

○**여상규 위원** 물을 중간에 다 빼 갑니다.

호남은 전부 섬진강 물 혜택을 보고 있어요. 그리고 그 섬진강을 이용해서 재첩 농사를 짓고 있는 경남 서부지역 주민들, 지금 생업을 다 포기해야 될 지경입니다. 위에서 물을 다 빼 가니까 바닷물이 종류까지 다 올라와요. 전부 황폐화 됐어요.

환경부장관이시라면 한번 가서 보시고 정확하게 진단을 하셔서 섬진강을 지금 환경부장관님께

서 말씀하신 것처럼 맑은 옛날의 섬진강으로 되돌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장관 김은경** 예, 위원님 지금 저희가 섬진강 하구의 재첩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용역을 통해서 원인을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마련되는 대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상규 위원** 물론 하신다니까 감사하고요.

그런데 그 원인이 뻥합니다. 물이 모자라 그래요, 다 중간에서 빼 가 버리기 때문에. 지금 여수·순천 공단들이라든지 또 광양 제철공장들 이런 데서 공업용수까지 다 빼 가 버립니다. 그리고 광주직할시 일원은 음용수로 전부 섬진강 물을 다 이용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물 부족이니까 물을 어느 정도 하류로 방류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장관 김은경** 예, 검토하겠습니다.

○**여상규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성동** 그러면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정무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박남춘 의원 대표발의)(박남춘·김현권·조승래·김영호·박찬대·김정우·유은혜·전해철·김종훈·최인호·설훈·이재정 의원 발의)

15.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김도읍·이명수·이현승·지상욱·이양수·김태흠·김성원·정태욱·조훈현·윤영석 의원 발의)

16.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정무위원장 제출)

17.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

위원장 제출)

18.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정무위원장 제출)

19.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

20.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정무위원장 제출)

21.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김중로 의원 대표발의)(김중로·박

찬대·김관영·김성수·이동섭·장정숙·정재

호·안규백·이종걸·김동철·장병완 의원 발의)

22.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중로 의원 대표발의)(김중로·박찬대·김관영·김성수·이동섭·장정숙·안규백·이종걸·김동철·장병완 의원 발의)

2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중로 의원 대표발의)(김중로·황주홍·이동섭·박주현·김종회·김광수·손금주·장병완·경대수·김삼화 의원 발의)

24.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김중로 의원 대표발의)(김중로·박찬대·김관영·김성수·이동섭·장정숙·정재호·안규백·이종걸·김동철·장병완 의원 발의)

25.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중로 의원 대표발의)(김중로·박찬대·김관영·김성수·이동섭·장정숙·정재호·안규백·이종걸·김동철·장병완 의원 발의)

26.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정무위원장 제출)

(10시21분)

○**위원장 권성동** 의사일정 제14항 박남춘 의원이 대표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26항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까지 이상 1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 13건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박수철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수철** 수석전문위원 체계·자구 검토 결과를 보고 올리겠습니다.

요약본 2쪽이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거짓 감사보고서 제출 및 공시 행위에 관한 과태료 부과 근거를 신설하고,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신고에 대한 처리 기간을 명시하면서 그 기간 내에 신고 수리 여부 또는 처리 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결격사유자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대표자로 등기되어 있는 때나 결격사유

를 가진 회사의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지위 승계에 대한 신고의 경우에도 간주제로 인하여 이를 수리하게 됨에 따라 일반 국민에게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검토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쪽입니다.

의사일정 16항, 17항, 18항, 19항, 이상 4건의 법률안은 체계·자구를 검토한 결과 조문 체계 정비와 경미한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고, 의사일정 14·15·21·22·23·24·25항 및 26항에 대해서는 체계·자구를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 13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 존함)

○**위원장 권성동** 수고하셨습니다.

대체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으면 제가……

○**김진태 위원** 잠깐……

○**위원장 권성동** 하시겠어요?

○**김진태 위원** 먼저 하세요.

○**위원장 권성동** 우선 의사일정 제20항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해서는 수석전문위원이 문제점을 지적했기 때문에 제2소위에 회부해서 좀 더 심도 있는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공정거래위원장 김상조**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위원장 권성동** 공정거래위원장 말씀하십시오.

○**공정거래위원장 김상조** 지금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하신 것처럼 할부거래법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이의가 제기됐고요, 저희 공정위에서는 그 지적된 부분을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지금 정무위 차원에서 동의가 필요한 상황인데요 제가 오늘 아침에 김용태 위원장님께도 연락을 드렸는데 시간이 부족해서 정무위가 위원장님과 여야 간사위원들 간에 협의를 완료해서 서면 통보하는 데는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정위도 지적하신 사항을 수용하기 때문에 법사위가 소위로 회부하시기보다는 전체회의에 계류해 주시면 다음 번 회의에서 정무위 전체의 수정동의 여부를 회신하는 것으로, 그렇게 처리해 주셨으면……

○**위원장 권성동** 알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법사위 안을 전달했어요, 그쪽에?

○**수석전문위원 박수철** 정무위원회에요?

○**위원장 권성동** 예, 정무위원회에.

○**수석전문위원 박수철** 정무위원회에 전달이 안된 상태입니다. 다만 공정거래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셨듯이 만일에 소위 회부보다는 전체회의의 계류 상태를 원하신다고 한다면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정무위원회의 의견, 입장을 확인하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제가 오전에 드린 바 있습니다.

○**위원장 권성동** 알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0항 법률안은 정무위원회에서도 수정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하니까 전체위에 계류하는 것으로 그렇게 처리하겠습니다.

나머지에 대해서는 없으시지요, 대체토론?

(「예」 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제15항, 제21항, 제22항, 제23항, 제24항, 제25항, 제26항의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제17항, 제18항, 제19항의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항은 전체회의에 계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장과 국가보훈처장 두 분 나와 계시는데 현안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윤상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상직 위원** 공정거래위원장, 지금 외국의 투기 자본, 엘리엇도 마찬가지고, 이게 정말 한국 기업 지배구조의 약점을 파고들면서 아주 협박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실제로는 몇 천억씩 그런 협박을 해서, 블랙메일 해서 돈도 또 벌어가고 있고.

이것 정부 차원에서 뭐 하고 있습니까? 지금 공정거래위원회도 마찬가지고 정부도 마찬가지고 외국 투기 자본하고 합작을 해 가지고 대기업들 아주 그냥 뭐……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공정거래위원장 김상조**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는 저희들도 잘 알고 있고요. 다만……

○**윤상직 위원** 잘 알고 있으면 대처를 하셔야지요. 아니 몇 천억씩 해외 투기 자본이 협박해서 돈을 빼 가고 있고 국부를 빼 가고 있는데 뭐 잘하고 있다는 겁니까? 이 정부 출범한 지 1년 됐잖아요.

답 한번 해 보세요.

○**공정거래위원장 김상조** 정부로서는 우리나라 대기업 집단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서 기본적인 방향을 설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다만 개별 기업의 지배구조 개편과 관련해서는 경영 판단 사항이기 때문에 회사에서 결정을 하되 다만 주주와 시장의 평가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위법행위의 소지에 대해서는 당연히 정부 당국에서 예의주시하고 있고요 또 필요하다면 상법이나 자본시장법 등의 제도 개편, 개선 필요성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상직 위원** 아니, 검토 안 했잖아요. 공정거래위원장이 당연히……

기업의 지배구조에 대해서는 한 말씀 하셨잖아요?

○**공정거래위원장 김상조** 예.

○**윤상직 위원** 그러면 상법을 어떻게 하자, 뭐 그런 것을 정부 차원에서 또 부처 간에도 논의가 돼야 될 것 아닙니까? 가만있어요. 그러면 일 안하고 있다는 거지요. 외국 투기 자본이 막 놀아도 방관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공정거래위원장 김상조** 두 달 전 오늘 이 자리에서와 마찬가지로 위원님께서 경영권 방어 장치에 대한 필요성을 말씀하신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지금 법사위에 제출되어 있는 법무부의 상법 개정안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측면에서 정부……

○**윤상직 위원** 아니, 공정거래위원장, 저하고 지금 상법 논의하자는 겁니까?

○**공정거래위원장 김상조** 아니, 그게 아닙니다.

○**윤상직 위원** 지금 법무부가 낸 상법 개정안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기업 입장에서 옳매는 그런 법입니다. 외국 투기 자본에 대해서 정말 경영권을 보호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경영권을 상실하도록 만드는 그런 법이에요. 집중투표제가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무슨 이야기를 그렇게 하세요?

○**공정거래위원장 김상조** 우리나라에서는 경영권에 대한 공격에 사실상 경험이 굉장히 일천했

습니다. 외환위기 이후에 여러 가지 상황 변화에 따라서 기업들이 적응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또 변화된 자본시장 환경하에서 공격과 방어의 균형된 운동장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지금 법무부에서 법사위에 제출한 상법 개정안 전부가, 즉 일곱 가지 주요 현안 모두가 원안대로 국회에서 논의가 통과될 거라고 저도 생각지는 않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 대안들과 관련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윤상직 위원** 아니, 공정거래위원장, 이게 정부안으로 된 것 아니에요? 그러면 당연히 정부 내에서 부처 간 협의가 있었을 것이고 공정거래위원장이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당연히 정부가 제출하는 상법 개정안에 그게 반영이 되어 있어야지요. 아니, 무슨 이야기 하십니까?

기업의 지배구조, 경영권 이런 부분에서 규제를 강화해야지만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조금 풀어질 것이고, 그렇게 해야지 정부가 생각하는 대기업 괴롭히기가, 투기 자본이 놀도록 하는 데 명석을 깔아 줄 수 있다 그렇게 하시는 것 아니에요?

○**공정거래위원장 김상조** 아니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윤상직 위원** 아니, 그런데 방금 이야기하시는 게 어폐가 있어요.

○**공정거래위원장 김상조** 제 말씀에 어폐가 있었다면 사과 말씀 드리겠는데요. 다만 상법 개정은 저희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사항은 아닌데 법무부가 여러 가지 많은 논의와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것 관련해서 이미 20대 국회 때 제출된 법안이 있고 그와 관련해서 최근에 법무부가 국회에 여러 가지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일곱 가지 사항과 관련해서 선택과 집중의 논의가 필요할 것……

○**윤상직 위원** 아니, 더 이상 논쟁을 하고 싶지는 않은데 공정거래위원장이 적어도…… 지금 우리 상법이라든가 공정거래법을 가지고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외국 투기 자본으로부터 경영권 보호가 안 되겠다 하면 건설적인 의견을 내셔야지요. 이게 정부 내에서 이루어질 일이지 국회에서……

○**위원장 권성동**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거래위원장 김상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은 어느 한 부처의 하나의 법률로 해결될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관련 부처들 사이에서 지금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요, 합리적인 개편안을 마련해서 국회에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준비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권성동** 정갑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갑윤 위원** 위원장님, 법무부가 발의한 집중투표제, 다중대표소송제, 감사위원분리선출제 그것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동의합니까, 이 법안에 대해서?

○**공정거래위원장 김상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하나하나의 어떤 이슈에 대해서는 찬반 의견이 있을 수가 있겠고요. 다만 상법이라고 하는 법률 체계 전체 차원에서 그리고 여러 가지 관련 법률 사이에서의 체계적 합리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그 전부가 원안 그대로 국회를 통과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정갑윤 위원** 이 법안 발의할 때 공정거래위원회는 그냥 뒷집만 지고 있었습니까?

○**공정거래위원장 김상조** 그런 것은 아닙니다. 사실 이게 새로운 법안이 제출된 것은 아니고요 그와 관련해서 정부 부처 내의 협의를 할 때 저희 공정위도 의견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정갑윤 위원** 공정위하고 협의해서 발의한 법안입니까, 이 법안이?

○**공정거래위원장 김상조** 이 법안 자체는 20대 국회 초반부에 이미 제출된 법안이고요, 지금은 법무부를 비롯한 범정부 차원에서 내부 논의를 하고 있고 그와 관련된 어떤 선택과 집중의 필요성을 국회의 여러 관련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고 있는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갑윤 위원** 지금 기업을 경영하시는 분들은 새 정부 들어서 각료들 중에 참여연대 출신들, 시민운동 하던 분들이 어느 날 갑자기 경제정책 분야에 등용됨으로 인해서 시민운동 할 때 그 상태를 그대로 지금 이 정책에 펼치려고 하다 보니까 부작용이 굉장히 많다, 실제 시민운동 할 때 하고 기업 정책을 입안하는 입장하고 서로 괴리감이 생기니까.....

이 정부 들어서 일자리 창출하겠다고, 일자리 만들겠다고 청와대에 현황판까지 붙였는데 일자

리가 늘어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총체적으로 다시 한번 짚어봐야 될 때라고 생각하는데 그중에 공정거래위원장이 있다는 것이지요. 명심하셔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장 김상조**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공직자의 한 사람으로서 시민운동을 할 때의 입장을 그대로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정갑윤 위원** 지금 각종 언론에서, 제가 누구라고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청와대 모 실장의 경우 언론에 연일 보도되는 내용이잖아요, 오늘의 경제 파탄을 몰고 온 장본인이라고.

봤지요?

○**공정거래위원장 김상조** 제가 뭐라고 답변드리기는 좀 곤란한 사항이라고 생각.....

○**정갑윤 위원** 기사 내용을 보셨지 않느냐 말이에요.

지금 현재 이 법안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쪽에서 활동하던 분이 법안 발의를 한 거예요. 그중에 공정거래위원장도,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견이 아마 여기 가미가 됐을 것이라고 보고.

○**공정거래위원장 김상조** 제가 감히 한 말씀만 더 드린다면 지금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서 특히 재계에서 우려하는 사항이 아마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로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상법에 반영해야 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는데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집을 보게 되면 집중투표제 또는 감사위원 분리 선출과 같은 식으로 선택적으로 이미 공약이 변경돼 있습니다. 그것은 현실을 감안해서 우리에게 가장 알맞은 어떤 제도를 선택하는 고민을 하고 있다라는 뜻이 되겠고요. 이 이유에서 정부 내부에서도 그렇고 또 국회와의 협의 과정에서 현실을 반영한 개정안이 마련될 것이라고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정갑윤 위원** 법무부는 그 내용 모르고 이 법안 발의했는가요?

.....
○**위원장 권성동** 자, 그 정도로 하시고요.

하여튼 헤지펀드들이 정말 우리나라 대표 기업의 경영권을 늘 위협하면서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

해서 정부가 고민을 좀 하세요.

○공정거래위원장 김상조 예, 많이……

○위원장 권성동 고민 안 하고 그냥 대기업은 청산 대상이고 공격할 대상이고 이렇게만 인식을 하니 결국은 국부가 자꾸만 해외로 빠져나가는 것 아닙니까, 지금?

○공정거래위원장 김상조 위원장님 두 달 전에도 제가……

○위원장 권성동 좀 들으세요.

○공정거래위원장 김상조 예.

○위원장 권성동 뭐 그렇게 박식하시고 이론에 밝은 것은 하는데 국회에 와서는 국민의 목소리를 의원들이 대신 전달하니가 경청을 좀 하십시오.

○공정거래위원장 김상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성동 본인 주장, 본인 생각을 계속 해서 강조하는 것이 그게 바람직한 태도가 아니에요. 정치의 제1번은 경청입니다, 경청.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공정거래위원장 김상조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성동 그리고 나서 고민을 좀 하시면 되는데 보면 꼭 한마디 하면 한마디도 안 저. 한마디도 안 지고, 위원이 한마디 하면 열 마디씩 하시고 말이에요. 여기가 지금 대학 강의실이 아닙니다. 그리고 위원들이 바보가 아니에요.

전문성에 있어서는 공정거래위원장보다 좀 못 할지는 모르지만 여러 가지 얘기를 듣고 전달하고 싶어서 전달하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자꾸만 반응 보이는 것은 적절치가 않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정거래위원장 김상조 예,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성동 다시, 다른 현안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윤상직 위원 하나만 제가, 10초만……

○이춘석 위원 그만합시다.

○윤상직 위원 아니, 하나만 내가……

○위원장 권성동 나중에 하시지요, 많이 하셨으니까.

○백혜련 위원 그만하시지요.

○위원장 권성동 다음은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오전밖에 없고 또 고유법도 심사

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 현안질의를 적절하게 좀 조절해 주시기 바랍니다.

34.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이찬열·이동섭·정동영·김중로·주호영·김삼화·김경진·김종희·위성곤·강창일·이철희 의원 발의)

35.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조배숙 의원 대표발의)(조배숙·이동섭·신용현·황주홍·이찬열·최도자·김삼화·손금주·김중로·정동영 의원 발의)

36.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성 의원 대표발의)(임종성·강훈식·민홍철·전현희·노웅래·안호영·이찬열·윤후덕·조승래·소병훈 의원 발의)

37.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철호 의원 대표발의)(홍철호·박성중·이종명·윤후덕·유승민·김명연·이명수·윤영일·박완수·조훈현 의원 발의)

38.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박덕흠·김태흠·권석창·홍문표·김규환·김성원·이만희·김승희·윤종필·심재철·김성찬·이은권·이채익·박명재·강석진·정용기·김광림·안호영·이용호 의원 발의)

39.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주광덕 의원 대표발의)(주광덕·김정재·강석진·윤종필·김세연·김성찬·정종섭·추경호·성일중·정성호·윤재욱·권성동·김승희 의원 발의)

40.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주광덕 의원 대표발의)(주광덕·김정재·강석진·윤종필·김세연·김성찬·정종섭·추경호·성일중·윤재욱·권성동 의원 발의)

41.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이헌승·김한표·윤한홍·박완수·김도읍·성일중·강석진·이양수·박덕흠·정종섭·엄용수·이명수·윤영석·박대출 의원 발의)

4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아 의원 대표발의)(김현아·이원욱·박덕흠·김정훈·김관영·정갑윤·문진국·정우택·배덕광·박성중·이현재·이우현·강효상 의원 발의)

- 43.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아 의원 대표발의)(김현아·민병두·박성중·김관영·김무성·이완영·강석호·이원욱·박인숙·문진국 의원 발의)
- 44.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민홍철·김혜영·윤영일·최인호·이찬열·문희상·박경미·안규백·전재수·박재호·서형수·김철민 의원 발의)
- 45. **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황희·어기구·박재호·정재호·오제세·전현희·최인호·홍익표·권칠승·김성수·고용진 의원 발의)
- 46.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주승용·노용래·강창일·장정숙·황주홍·박주선·최도자·이용주·손금주·박선숙·윤영일 의원 발의)
- 47.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 48.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 4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 50.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 51.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 53. **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54.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0시38분)

○**위원장 권성동** 앞서 처리한 의사일정 제52항은 제외하고, 의사일정 제34항 황주홍 의원이 대표발의한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54항 정부가 제출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20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53항, 제54항에 대해서는 정부가 제출한 법안이지만 제안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제안설명 역시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 20건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박수철 수석전문위원 검토사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수철** 체계·자구 검토 결과를

보고 올리겠습니다.

요약본 유인물 5쪽이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7항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2층 버스를 도입한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중교통 운영자에게 소요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기획재정부는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버스운송사업 재정 지원은 보조금 지급이 제외되는 사업으로 정하고 있고 2층 버스는 모두 경유 차량으로서 2층 버스에 대한 재정 지원과 정부의 경유차 감소 정책이 상충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국토교통부는 2층 버스에 대한 국비 지원은 버스 운영 보조가 아닌 시설 보조 명목으로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지 않고 입석에 따른 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층 버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각 상이한 의견이 있으므로 이런 부분을 감안하시면서 아울러서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 범위와 관련된 부분도 고려하실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의사일정 제38항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안은 댐 및 주변 지역의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고 댐 주변 지역의 경제를 진흥시켜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환경부는 다수의 댐은 상수원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는 점과 함께 물관리 일원화를 규정하고 있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에 따라 제정안의 경우도 환경부로 이관될 법률임을 고려하여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그러한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 밖에 제정안의 내용과 관련해서는 댐 친환경 활용 계획 승인이 취소된 경우 댐 친환경 활용 구역을 임의적으로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활용 구역 지정의 전제가 되는 계획 승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해제하도록 의무 규정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는 등의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유인물 8쪽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0항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

를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 지침으로 규정되어 있는 개발 이익의 일부를 사업시행자가 공공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부담하도록 하는 규정을 법률로 상향해서 반영하는 등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시행자가 부담하여야 할 지가 상승 차액의 상한을 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현행 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지가 상승 차액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을 수정의견으로 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42항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운송사업자에게 영상기록장치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교통사고의 조사 등 필요한 경우에만 영상기록을 이용 또는 제공하도록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운송사업자가 영상기록장치를 설치한 경우 승객 등이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안내판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도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제재 규정을 마련하고 있지 않으므로 면허의 취소나 정지 사유로 하거나 혹은 벌칙 규정을 신설하는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44항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주차장 내 자동차가 미끄러질 수 있는 경사진 곳에 주차하는 자동차의 운전자는 고임목 등 안전 조치를 하게 하고 위반 시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018년 9월 28일 시행 예정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에서도 경사진 곳에서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을 위반 시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등에 처하도록 규정하면서 그 적용 대상을 도로 외의 경사진 곳도 포함하고 있어 개정안의 실익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경사진 곳에 주차한 후 안전 조치 위반으로 사상 사고가 발생하면 형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죄가 적용되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데 개정안의 경우 처벌 규정을 신설하면서 그 법정형을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하고 있어 안전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의 입법 취지에 비춰서 그 타당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검토가 또한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47항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안 제23조에서 운임 신고에 대한 수리간주제도를 도입하고 있는데 운임 신고의 내용은 국민 일반에

게 미치는 영향이 크고 행정관청은 이를 사전에 감독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수리간주제도 신설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48항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건설기술자가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받지 않은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안 부칙에서 과태료 적용 유예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데, 그 과태료 적용 유예에 관한 사항은 과태료 도입에 따라 부가되는 사항이므로 입법례를 참고해서 부칙이 아닌 본칙에 특례 규정을 신설하는 방향으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0항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안 제12조의2제5항에서 사업시행자가 민간인과의 공원부지 사용 계약을 통해 도시공원을 설치하여 운영하다가 공원부지 사용 계약이 만료될 때 도시공원 부지에 대한 도시·군 계획 시설의 결정을 해제하여 민간인이 계약 만료 이후 부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시행 절차의 선후관계를 불분명하게 표현하고 있다고 보아서 당초 취지에 부합하도록 본문 표현을 명확히 하면서 간결하게 정비하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의사일정 제51항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공동주택, 판매시설 등의 시설물 또는 그 유지·관리·운영 방법을 주변 교통환경의 변화 등에 따라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사전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고 행정관청이 처리기간인 180일 내에 신고 수리 여부 또는 처리기간 연장 여부를 민원인에게 알리지 않으면 신고 수리를 간주하는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개정안의 신고 내용은 행정기관이 신고 수리 여부를 장기간에 걸쳐 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신고 수리의 효과가 국민 안전 등 공공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서 검토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인물 14쪽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34항, 36항, 39항, 43항, 45항, 53항, 이상 6건의 법률안은 체계·자구를 검토한 결과 조문 체계 정비와 경미한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

고 생각됩니다.

의사일정 제35항, 41항, 46항, 49항, 54항, 이상 5건의 법률안은 체계·자구를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20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권성동 수고하셨습니다.

대체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김진태 위원님.

○김진태 위원 몇 건 되는데요, 먼저 의사일정 제37항이요.

이것은 여기 전문위원 검토보고처럼 이게 버스인데 버스는 다른 법에서 대상에 제외되는 걸로 돼 있는데 국토교통부는 2층 버스는 마치 버스가 아닌 것처럼 본다는 것은 좀 이상하고요 법체계상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소위 회부 의견입니다.

○위원장 권성동 37항 법률안에 대해서 제2소위 회부 의견인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37항 법률안은 제2소위에 회부하도록 가결되었습니다.

○김진태 위원 또 이어서 44항 주차장법인데요, 이것도 전문위원 검토보고처럼 이미 도로교통법에 있고 또 그 형도 제각각이어서 이것도 관련된 법과의 체계를 더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2소위 회부 의견입니다.

○위원장 권성동 의사일정 제44항 주차장법 개정안에 대해서 제2소위 회부 의견인데 이의 있으신가요?

○표창원 위원 이의 있습니다.

최송하지만 이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지난 어린이 사망사고 때문에 제안되고 그리고 심의되고 의결된 법안입니다.

○위원장 권성동 행정안전위원회 법이 아니고 국토위원회 법입니다.

○표창원 위원 예, 국토위원회 법인데 저희가 재난안전특위에서 같이 논의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만큼은 어린이 안전을 보호한다는 대승적인 차원에서 다시 검토를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권성동 그 안전조치를 위해서 법을 개정했던 취지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마는 형벌이라는 것이 서로 규정이 맞아야 되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2소위에 회부해서 균형점을 찾는 다음에 다시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순서일 것 같습니다.

이해를 해 주셨기 때문에 의사일정 제44항 법률안은 제2소위에 회부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말씀하십시오.

○김진태 위원 계속해서 발언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7항 법률안이요, 이것도 2소위 회부 의견입니다.

이게 신고수리제인데 거기에 운임신고 내용도 들어 있어서 운임도 바꿨는데 일정 기간이 지나면 바로 간주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일반에게 미치는 영향이 커서 해도 되는지 2소위에서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권성동 국토부차관님.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예.

○위원장 권성동 이 47항 법률안의 취지가 뭐예요? 국토부도 다 동의하시는 내용입니까? 어떻습니까?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예, 그렇습니다. 이것 자체는 지금 운임신고제도가 그 사안의 중요성에 비추어서 신고수리 간주제를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느냐는 그런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었는데 사실 여객자동차법에서도 지금 동일하게 운임신고 규정에 신고수리 간주제가 도입돼서 운영 중에 있다는 사항을 참작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성동 이미……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그러니까 타 법, 유사 법에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권성동 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박수철 예.

○위원장 권성동 이게 지금 제2소위에 회부해서 검토를 하면 어떤 부분을 검토한다는 거예요? 운임에 대한 수리간주제도 자체를 우리가 없앨 수는 없잖아요, 법사위에서.

○수석전문위원 박수철 지난번에 저희가 간주제를 검토를 하면서 기본적으로 몇 가지 기준을 마련하지 않았습니까, 위원장님? 그 기간이 적정하지 여부 또 예컨대 국민들한테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위에서 심도 있게 검토

를 하고 난 다음에 결론을 내리는 그런 심사 방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의 경우에도 그 심사 범주에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권성동 그러면 47항 법률안과 51항 법률안이 지금까지 수리간주제에 관한 법인데 수리간주제에 관한 기존 법률안 전부를 우리가 2소위에 회부해서 나름의 기준을 갖고 조정·정리를 했거든요. 우리 위원님들 여기에 대해서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47항과 51항 2개의 법률안은 제2소위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있습니까, 김진태 위원님?

○김진태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권성동 백혜련 위원님.

○백혜련 위원 38항 법률안, 환경부에서 지금 반대하고 있다는 전문위원의 의견이 있고요 여러 문제점이 있으니까 2소위 회부 의견……

○위원장 권성동 잘 안 들립니다. 마이크를 좀 대고 말씀하세요.

○백혜련 위원 38항 같은 경우 환경부에서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고요. 전문위원도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기 때문에 2소위 회부 의견이고요. 42항 같은 경우도 벌칙 조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38항, 42항 다 2소위에 회부 의견입니다.

○위원장 권성동 38항 법률안에 대해서 2소위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다른 위원님들 이견 있습니까?

김진태 위원님.

○김진태 위원 이것은 그냥 통과 의견입니다.

지금 환경부에서 반대한다고 해서 바로 꼭 그렇게 할 것은 좀 아닌 것 같고요. 이게 지금 협의를 좀 했는데 바로 아까도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환경부가 이 댐 주변 이런 것이 앞으로 자신들 소관이 되니까 그렇게 되면 다시 한번 체계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겠다 이런 차원인 것 같은데 그것은 우리가 앞으로 있을 사안까지 감안해서 그렇게 할 수는 없다고 보고요. 다만 또 이 법이 어떤 개발에만 중점을 뒀서 환경보전에 우려가 있다고 하면 모르되 벌써 이 법 이름 자체가 친환경 보전·활용 특별법입니다.

그래서 내용을 좀 살펴보니 이미 국토위 논의 과정에서 환경부 의견을 수용한 점도 몇 가지가 있습니다. 협의를 이미 상당히 오랜 기간

해 왔다는 거고요. 이게 어떤 특정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고 여기에 보니까 전국에 댐이 있는 곳, 기초단체에서 다 공통되는 문제입니다. 댐이 있는 걸로 이미 굉장한 희생을 받아 왔기 때문에 언제까지 그렇게 갈 거냐 해서 친환경도 살리되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상생, 양쪽을 다 두루 살피는 것으로 소속 상임위에서 오랜 논의 끝에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좀 감안해서 통과해 주기를 희망합니다.

○위원장 권성동 오랜만에 오셨는데, 이춘석 위원님.

○이춘석 위원 수석전문위원님.

○수석전문위원 박수철 예.

○이춘석 위원 난 다른 건 그렇다 치고 이 안 제4조를 보면 이러한 규정이 있어요. 댐 주변 지역 친환경 활용 사업의 추진을 위해서 다른 법률에 따른 계획에 우선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어요. 그러면 향후에 다른 법률이 제정되거나 할 때 이 계획 자체가 무조건 우선 된다고 하면 지금 법이 정한 일반원칙, 특별법 우선 원칙, 신법 우선 원칙, 여러 가지 원칙들을 다 깨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개별 법률에 이 구체적인 계획을 어떠한 법률보다 이 계획이 우선하도록 규정하는 게 법체계상 맞는 겁니까?

○수석전문위원 박수철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예외적 사유 없이 만일에 그렇게 규정을 한다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제3조를 보시면 ‘다른 법률에 이 규제에 관한 특례보다 완화된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 따른다’라고 해 가지고 약간의 예외적 성격의 규정도 두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춘석 위원 저는 법에 이런 사항을 규정하는 게 일반법 원칙상 맞는지 의문이 들어요.

○수석전문위원 박수철 지금 이러한 유사한 입법례를 가지고 있는 법률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권성동 이용주 위원님.

○이용주 위원 전문위원, 하나만 물어봅시다.

우리 이춘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비슷한 취지인데요. 관련 규정에 보면 댐 친환경 활용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에 특례를 두고 있지 않습니까?

○수석전문위원 박수철 예.

○이용주 위원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을 별다른 조치, 토지 소유주하고의 별다른 협의나 이런 것 없이도 임의로 출입할 수 있는 근거 규정으로 이 조문이 활용될 수가 있는 겁니까?

○수석전문위원 박수철 위원님, 유인물에 보시면 13조가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 주신 조문이 되겠는데요. 그 2항에 보시면 소유자·점유자에 대한 통지와 그다음에 소유자의 동의에 관련된 내용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2항에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러니까 통지으로써 동의에 같음이 된다 이런 취지인가요?

○수석전문위원 박수철 통지도 있고 토지 소유자·점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그러한 내용도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이상입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수철 그런데 그 사안 자체에 대해서는, 출입과 동의받는 부분은 일시 사용 등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권성동 차관님, 이 법 개정 취지하고 내용을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어떻게 됐고, 그다음에 환경부의 동의를 그때 구하지 않고 했나요? 어떻게 된 건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댐법은 박덕흠 의원님 발의로 지금 제정이 추진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 법의 취지를 저희가 살펴보면 첫 번째로 위원님들 다 잘 아시다시피 댐 주변지역은 댐에 의해 가지고 여러 가지 규제를 받고 피해를 많이 입고 있어서 사실 지역 간의 어떤 갈등의 요인이 되기도 하고 지역의 불균형적인 발전에 단초를 제공해 왔습니다.

이 법의 또 하나의 문제점은 그렇다고 해서 댐 주변지역이 완벽하게 관리되고 있느냐면 각 개별법에서 각각의 행위규제들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어떤 경우에는 또 난개발되는 그런 문제점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법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댐 주변지역에 대해서 친환경 활용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그 계획에 의해서 계획적으로 댐 주변이 관리되고 발전할 수 있도록 도모하는 그런 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저희 국토부에서는 그동안 댐 주변지역의 많은 민원에 저희들이 시달리고 있었기 때문에 이 법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는 찬성을 합니다마는 관계 부처 협의 과정에서 여러 부처에서 이의가 제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타 부처와의 이의는 다 해결이 되었고 이제 마지막으로 환경부와의 계속적으로 협의를 해 왔고 어제까지도 그 협의를 했었습니다. 환경부에서 주장한 것은 댐 주변지역의 상수원보호구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이런 부분은 아예 여기에서 빼고 신축도 못 하도록 하라는 그런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 국토위 소위에서 다 반영을 했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남은 게 특별대책구역에 대해서 이것도 또 역시 다 빼야 된다 그렇게 되었는데 국토위 소위에서 그렇게 된다면 이 법에 의해 댐 주변지역이 그렇게 될 수 있는 실효성이 전혀 없다, 그래서 특별대책구역 정도는 환경부장관과의 협의 조건을 붙여서, 그러니까 환경부장관이 협의해 주는 계획에 따른 그런 활용만 가능하도록 하는 것으로 제한적으로 통과시켰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권성동 차관 얘기를 들어 보니까 소위 말해서 환경부가 걱정하는 부분은 어느 정도 다 해소가 된 것 같거든요.

○금대섭 위원 그런데 아직까지 환경부의 반대 의견이 반영이 안 된 상태라고 얘기를 하고요.

○위원장 권성동 아니, 지금 특별대책구역만 환경부장관과 협의를 거쳐서 하게끔 돼 있어서 환경부가 제동을 걸려면 얼마든지 제동을 걸 수 있는 그런 안전장치는 갖췄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나름 댐 주변…… 발전소 주변지역에 있는 주민들도 엄청 피해를 보지만 댐 주변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개발행위 제한 규제로 인해서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환경부도 뚜렷하게 한 게 아니라 소관 부처가 자기들한테 넘어온다는 이유 하나로 이렇게 반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통과시키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오신환 위원님.

○오신환 위원 지금 차관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난 상임위 소위 논의 과정에서 환경부의 의견이 반영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자연보전지역하고 상수원보호구역, 이 두 가지는 제외시켰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예, 그렇습니다.

○오신환 위원 그리고 지금 상대적으로 영향이 적은 특별대책지역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만 된다 이렇게 해서 반영이 된 것이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예, 그렇습니다.

○오신환 위원 그러니까 금태섭 위원님이 문제 제기하신 것은, 환경부의 의견이 소위 과정에서 반영이 됐다고 저는 전해 들었습니다. 그래서 크게 우려하실 부분은 아닌 것 같다.

그리고 앞서 물관리 3법이 통과되면서 이게 환경부로 이관되기 때문에—이미 그 내용이—환경부도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부분들은 많이 해소됐다 이렇게 받아들여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참고해서 크게 문제가 없으면 통과시키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금태섭 위원 그런데 소관 상임위에서도 계속 의견이 오고 해서…… 이것 2소위로 보내면 저희가 맨 처음 올리고 하는 것에 반대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환경부 의견 한 번만 들어서 좀 처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반대를 굉장히 강력하게 하고 있는 법안인데……

○위원장 권성동 그러면 전체회의에 계류했다가 조금 이따가 환경부장관 다시 오면 그때 다시 한번 논의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

그리고 아까 또 몇 항 얘기했지요, 백혜련 위원?

○백혜련 위원 그리고 이게 지금 내용에 보면 전문위원이 그 법안의 문제점에 또 몇 가지를 지적하고 있거든요.

○위원장 권성동 그러니까 그것은 나중에, 조금 이따가 논의하기로 했으니까 그것 말고, 38항 법률안 말고 또 몇 항 아까 문제 제기했어요?

○백혜련 위원 아까 42항입니다.

○위원장 권성동 42항은 2소위로 가는 것으로 했잖아. 안 했나?

○백혜련 위원 아니요, 42항 안 했었습니다.

○위원장 권성동 42항 의결 안 했어요?

○백혜련 위원 예.

○위원장 권성동 42항 법률안에 대해서 제2소위원회 의견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42항 법률안은 제2소위로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혜련 위원 위원장님, 국토부차관한테 질의 또 하나 있는데요.

50항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이 있는데, 차관님, 도시공원 설치·운영이 이렇게 수용이 아니라 사용계약을 통해서 하는 입법례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법률안을 보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거기에 보면 공원 부지 사용계약을 통해서 도시공원을 설치·운영하게 되어 있잖아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예.

○백혜련 위원 그러니까 이런 공원 부지를 수용이 아니라 사용계약을 하고 다시 돌려주는 식의 이런 입법례가 있는냐고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지금 저희들 도시계획시설에서는 처음으로 임대차계약에 의한 도시공원 조성이 도입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백혜련 위원 그러니까 이게 첫 사례예요? 다른 나라라든지 입법례가 있는지 혹시……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일본의 경우에는 이렇게 지금 임차공원, 임차공원이라고 하는데 이런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혜련 위원 일본이오?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예.

○백혜련 위원 그러니까 입법례가 확인된 것은 일본이 유일합니까? 다른……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예, 그렇게……

저희들이 한 번 더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백혜련 위원 그래서 지금 50항 같은 경우도 별로 흔치 않은 경우여서 저는 2소위에서 다시 한번 입법례라든지 살펴보고 형평성이나 그런 것에 반하지 않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참고로 하나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공원 같은 이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자동실효를 바로 앞두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공원 조성을 보다 촉진하기 위한 그런 여러 가지 제도개선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지금 민간소유자와, 이것 수용 자체가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어떤 합의에 의한 임대차계약으로 공원 조성하는 것이 좋은 제도적인 해결책 중의 하나가 될 수 있다고 보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찬성을 했습니다.

○위원장 권성동 이것은 좀 급한 법 같은데, 그렇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성동 이게 왜냐하면 공원 계획은, 민간 소유의 토지에 대해서 공원 계획 안에 들어가 있는데……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예, 그렇지요.
 ○위원장 권성동 이게 일정한 시간까지 안 하면 전부 해제하게 되어 있지않아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성동 그러면 난개발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예, 그렇게 되면 개발을 막을 수단이 없습니다.
 ○위원장 권성동 개발을 막을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 전에 이것을 해서 좀 더……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이렇게 임차계약이라도 해서 공원 조성을 촉진시켜 보자는 그런……
 ○위원장 권성동 백혜련 위원님, 이것은 정책 결정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통과를 시켜 주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50항은?
 ○백혜련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성동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5항, 제41항, 제46항, 제49항, 제54항의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4항, 제36항, 제39항, 제40항, 제43항, 제45항, 제48항, 제50항, 제53항의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8항 법률안은 나중에 환노위 법할 때 다시 환경부의 의견을 듣고 위원님들로부터 결론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병석 국토부 1차관 나와 계시는데 현안질는 없을 것으로 하고……

윤상직 위원님.

○윤상직 위원 지금 차관 말이지요, 장관이 청약조정대상지역, 우리 기장군뿐 아니라 지금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해제를 검토하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함흥차사에요. 언제 하실 겁니까?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저희들이 지금 부

동산 시장에 대한 관점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정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이 확실한 안정 기조에 접어들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도……

○윤상직 위원 아니, 제 이야기는 지금 수도권 또는 서울 또 강남 이런 지역하고 지방하고를 잘 구분을 해서 부동산 경기를 보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 기장만 하더라도 아파트 가격이 2000만 원 내지 3000만 원 떨어졌어요. 이게 문제가 아니고, 거래가 절벽이 되다 보니까 지금 소위 말해서 집이 들고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완전히 꽂꽂 묶여 있어요. 잘못하면 이게 부동산 경기 안정화를 넘어서 전반적인 경기침체까지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좀 핀셋 정책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잘 보셔야 됩니다.

지금 이 이야기는 우리 지역의 이야기만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 전체 경제 운영이라는 측면에서 이게 정도가 지나치면 경기침체로 빠지게 되고, 안 그래도 지금 소득양극화 현상이 벌어지고 있지않아요. 아주 10년 이래 가장 크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보셔야 되는데……

우선 부동산 거래가 침체된 지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해제하시는 게 좋겠다. 수도권 이야기 안 합니다. 특히 비수도권, 지방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 주시는 것이 서민경제도 살리고 경기침체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말로만 자꾸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하지 마세요.

○위원장 권성동 손 차관께서는 대기하셨다가 환노위 법안 심사할 때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성동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55.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 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

56. 국가표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57.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58.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동 의원 대표발의)(김선동·경대수·강석진·심재철·윤종필·김규환·정우택·박명재·신보

라·민정욱·함진규 의원 발의)

59.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홍의락 의원 대표발의)(홍의락·김관영·손혜원·윤호중·신창현·진선미·김정우·조정식·박정·정성호 의원 발의)

60.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박정·이훈·권철승·어기구·김병욱·신경민·윤후덕·윤관석·김정우·신창현·송옥주·민홍철 의원 발의)

61.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박정·권철승·유동수·이채익·김경수·윤한홍·김종훈·홍의락·김기선·김수민·신경민·홍의표 의원 발의)

62.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수 의원 대표발의)(김경수·신창현·김병관·이원욱·서형수·정성호·안규백·윤관석·전재수·오제세·김민기·황희·박정·심기준 의원 발의)

63.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장병완 의원 대표발의)(장병완·김철민·최도자·박정·김성수·이동섭·곽대훈·김중로·김삼화·최명길·황주홍·오세정·김성식·조배숙 의원 발의)

64.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

65.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

66.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

(11시09분)

○**위원장 권성동** 의사일정 제55항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66항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안까지 이상 1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 12건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정연호 전문위원 검토사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연호**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7항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전기자동차 충전사업 및 소규모전력중개사업을

전기신사업으로 신설하여 전기신사업은 허가제가 아닌 등록제로 하고, 관련 등록절차, 결격사유, 약관신고 및 업무위탁 등에 관하여 규정하는 내용으로 ‘약관을 준수한다’는 문언은 약관의 법적 성질 및 유사 입법례를 감안하여 ‘약관을 사용한다’고 수정할 필요가 있고, 업무위탁 근거 규정을 추가함에 따라 관련 조항인 공무원의제조항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61항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에 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사실조사, 시정권고, 공표 등의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피해 구제의 실효성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의 신고자인 중소기업 등의 범위가 불명확하므로 개정 취지에 따라 중소기업 및 중소기업자를 포함하도록 명확히 수정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5항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중소기업 관련 주요 정책 및 계획 등을 심의·조정하기 위한 중소기업정책심의회의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수립·시행된 중소기업종합계획 등은 신설되는 심의회의 심의·조정을 거친 것으로 보도록 경과조치를 신설하고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대한 심의회의 조정 권한을 명확히 하는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5항, 제56항, 제64항, 제66항 등 4건의 법률안은 경미한 체계 및 자구 수정을 하였습니다.

나머지 안건은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12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권성동** 수고하셨습니다.

대체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윤상직 위원님.

○**윤상직 위원** 우선 제61항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지금 중기부장관이 조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지요. 그다음에 피해가 발생하거나 방치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이런 것은 판단의 문제거든요. 그런데 행정기관에서 이렇게 행정절차로만 해서 되겠어요? 저는 이런 것은 준사법적인 절차를 거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의견 주십시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 현재 다른 법에서 준사법적인 그런 절차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는 다른 법에서 아직 다루지 못하고 있는 그 부분만 저희가……

○**윤상직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는 행위 자체가, 중소기업부장관의 행위 자체가 준사법적인 판단을 하는 그런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61항은 제2소위로 넘겨 가지고 구체적으로 준사법적인 절차가 진행될 수 있는 그런 절차 규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일방적으로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에 대해서 있다 없다가 중기부장관이 판단하게 되어 있고 또 피해가 있다 없다가 중기부장관이 판단하게 되어 있고, 이것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그래서 시정명령이나 미이행 시의 형벌 조항은 전부 삭제가 되어 있고요.

○**윤상직 위원**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제2소위에 넘겨 가지고 좀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 저희는 단순하게 신속하고 획기적인 보호를 위해서 시정권고를 하는 행정적 권고사항만 지금 포함되어 있습니다.

○**윤상직 위원** 왜냐 그러면 기술침해행위라는 것이 상당히 전문적인 영역이거든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 예, 맞습니다.

○**윤상직 위원** 그런데 이것을 행정기관에 일방적으로 맡겨놓는다는 것은…… 만약 기술침해행위를 했다고 그런 의심을 받는 기업 또 그렇게 신고된 기업 입장에서는 기술을 절취한 기업이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서 논란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가지고 신중한 또 준사법적인 절차가 마련돼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2소위로 좀 넘겼으면 합니다.

○**위원장 권성동** 금태섭 위원님.

○**금태섭 위원** 행정부에서 결정을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든지 하면 여기에 대해서는 이의제기 절차가 있는 것이지요, 장관님?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 예, 그렇습니다.

○**금태섭 위원** 그러니까 결정 과정 자체에 준사법적인 절차를 마련하도록 한다는 것은 사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법체계상 거의 어려울 것 같고요. 일단 행정부에서 결정해서 이의제기 절차가

마련되어 있으면 그 부분을 문제 삼기는 좀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저도 개인적으로 아는 기업인들 얘기를 들어 보면 이런 절차들이 없으면 바로 사법 절차로 가면 지금 수사를 하든지 하면, 기술침해 관련은 대전지검에서 많이 하고 하는데, 왔다 갔다 하느라고 진짜 이삼 년은 쉽게 지나갑니다.

그래서 가급적 빠르게 행정부에서 조치를 하고, 만약에 부당하거나 잘못되게 결정을 했을 경우에는 이의 절차를 통해서 구제할 수 있는 절차를 두면 되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통과시키는 것이 어떤가 하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그냥, 중소기업부장관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침해심사위원회에서 이것을 심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작용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적을 것이라고 저희는 지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 드리는 것은 지금 기술침해 문제가 우리나라의 기술개발에 상당한 저해요건으로 작동하고 있고요. 중소기업들이 이런 많은 문제들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정부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해 달라는 요청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신속하게 행정 절차를 하는 조항이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백혜련 위원** 저도 한마디……

○**위원장 권성동** 백혜련 위원님.

○**백혜련 위원** 이 중소기업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자체가 나온 의미 자체가 그동안에 형사 사법체계, 그리고 사법체계로는 중소기업들의 기술이 보호가 되지 않는다는 점에 기반해서 소관 상임위와 이런 데서 논의되고 이 법안이 나온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법사위에서 또다시 만약 논의를 한다고 한다면 오히려 이 법의 근본 취지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것과 어떻게 보면 다름없을 수도 있다는 부분이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소관 상임위의 의견을 존중해서 통과시키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윤상직 위원** 제가……

○**위원장 권성동** 제가 조금 중재를 할게요. 제가 좀 의견을 얘기하겠습니다, 윤상직 위원님이나 금태섭·백혜련 위원님도 의견을 다 들었으니까.

장관님, 중소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을 대

기업이 탈취하거나 침해 행위를 철저히 근절하고 또 그러한 행위에 대해서 엄벌에 처해야 된다 하는 점에 대해서는 저를 비롯한 모든 국민들이 동의하는 사안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건 다 마찬가지로인데, 그렇지만 그 당위성과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를 누가 판정을 하고 이것을 시정하느냐 하는 문제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런데 중소기업부에서 이 문제를 다룰 때 과연 첫 번째, 공정성과 객관성이 담보되느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그 탈취한 측에서는 아마 공정하지 못하다고 느낄 거예요. 왜? 우선 중소기업부는 중소기업을 보호·육성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부처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소기업부에서 이것을 담당하는 것이 과연 옳은가 하는 문제고.

그다음에 이 시정권고를 위원회를 통해서 하게 했는데 과연 중소기업부에서 그만큼 전문성을 갖고 있느냐 하는 문제도 또 발생할 수도 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정권고밖에 없어요, 권한이. 그렇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성동** 시정권고밖에 없는데, 최소한 시정권고를 하려면 공정거래위원회처럼 독립되어 있는 기관에서 해야 된단 말입니다, 이것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 예.

○위원장 **권성동** 독립돼 있는, 전문성을 가진 독립된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야 그 결정에 대한 승복률이 높은 거예요, 공정거래위원회나 노동위원회처럼. 그런데 이건 지금 중소기업부에서 하기 때문에 과연 그만큼의 승복을 하겠느냐 하는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시정권고를 미이행했을 때 과태료 규정이 있는가요, 없는가요? 없지요?

뒤에 누가 있어요, 배석자?

있어요, 없어요?

○중소벤처기업부기술인재정책관 **조주현** 없습니다.

○위원장 **권성동** 없지요?

○중소벤처기업부기술인재정책관 **조주현** 예.

○위원장 **권성동** 아까 금태섭 위원께서 하실 때 마치 장관께서는 과태료 규정이 있는 것처럼 답변을 하셨는데 과태료 규정이 없단 말이에요. 이게 실효성이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다른 방법으로, 다른 방법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다는…… 공정성과 객관성과 중립성이 담보되는 위원회에서 시정권고뿐만 아니라 시정명령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그런 제도 구상이 필요하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장관님, 어떻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동의를 하고요. 그래서 지금 공정위가 할 수 있는, 하도급법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여기서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공정위가 하고요 거기에서 빠져 있는 것을 저희가 하는데 저희는 조정·중재를 우선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선 피해신고가 오면 조정·중재를 해서 당사자 간의 합의를 최대한 유도하고 그것이 안 됐을 경우에 저희가 조사를 해서 기술침해심사위원회를 열게 됩니다.

○위원장 **권성동** 그것은 알겠는데……

그래서 이렇게 중소기업부에서 이걸 담당하는 것보다 중소기업부로부터 독립된 위원회라든가 기관에서 이 문제를 처리하는 것이 실효성 측면에서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의견이 갈리지만 일단 좀 더 심사를 한번 해 보는 것은 좋을 것 같습니다.

○이춘석 위원 제가 하나 물어봅시다.

○위원장 **권성동** 이춘석 위원님.

○이춘석 위원 장관님, 이게 주로 중소기업과 대기업 사이에 문제가 되는 거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 예, 그렇습니다.

○이춘석 위원 분쟁이 이루어지면 원칙적으로는 중소기업 기술분쟁조정위원회라든가 중재위원회 조정 절차를 하는 게 원칙인 거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 예, 그렇습니다.

○이춘석 위원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경우에 불가피하게 중기부가 나서서 그것도 강제로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권고를 하는 거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 그렇습니다.

○이춘석 위원 그래서 이게 계속해서 언론에서도 보도하다시피 대기업이 훨씬 더 우월적 지위를 가지고 있고 중소기업은 열악한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형사사건의 경우에도 사실은 검사가 기소권을 가지지만 피고인이나 피해자가 열악한 지위에 있

기 때문에 국선번호인도 선임해 주고 이런 절차적 보장을 하는데 항상 대등한 지위에 있는 것처럼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기관을 통해서 해라’, 그런 것이 바람직하지만 그렇게 못 하는 현실이 있는데, 그렇게 하는 게 사실은 원칙인 거지요.

그렇지 못하는 경우에 불가피하게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중기부가 그것도 강행도 아니고 과태료 규정도 없고 강제성도 없는 권고조처도 하지 말라고 하면 정부는 그냥 대기업 힘센 놈, 대기업이 다 가져가는 것 그냥 방관하라, 그러면 정부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마치 대등한 당사자 지위에 있는 사람끼리의 분쟁과 이런 게 생겼을 때의 그 원칙을 가지고 그러면서 훨씬 더 열악한 지위에 있는 중소기업을 보호하겠다는 그 입법 취지를 저는 보호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중소기업부에서 하고자 하는 최소한의 절차이기 때문에 저는 적어도 이 정도의 권한과…… 그것은 해 보고, 만일 해서 문제가 된다고 하면 다르게 이것은 시정하는 조치나 개정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것은……

여러 중소기업 분들 만나면 기술탈취 부분에 대해서 심각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입법적으로 해결을 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 위원장님,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지금 현재도 산업기술 유출 방지법이나 부정경쟁방지법, 발명진흥법 그리고 이번에 하도급법까지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그런 법들을 먼저 적용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단지 현재 저희 중소기업들이 그런 법에 의존을 할 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실효성이 없다, 그래서 법에서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이미 중소기업은 다 무너진 이후다,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신속하게 조정 권고하는 조항이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업체의 요구를 반영한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법적 문제하고의 중복성은 이번 개정사항에서 많이 빠져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권성동** 그러면 이것은 의견이 갈리니까 전체회의에 계류해 놓고 처리하고 나중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상직 위원 제가 잠깐만 한 말씀만 드리겠습

니다.

○위원장 **권성동** 예.

○윤상직 위원 장관께서 전체적으로 제 말씀을 완전하게 이해를 못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제 이야기는 중재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건 하면 됩니다, 그건 사적관계에 있어서 할 수 있는 거니까.

문제는 기술침해행위에 대한 판단, 그다음에 피해가 발생했다는 판단 이런 부분은 매우 전문적입니다. 제가 무역위원회 상임위원도 해 봤기 때문에, 실제로 분쟁이 일어나면 우리나라 특허의 50% 정도는 특허 원천무효가 되어 버립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부분에서, 절차에서 나름대로 전문성과 객관성을 담보하지 않으면 정부 자체가 소위 말해 논란의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행위 자체가.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저희가 그렇기 때문에 중소기업에게 기술 자체를 요구하는 것을 지금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이 동의하지 않는 상황에서 기술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비밀협약서를 작성해서 그 기술을 다른 데다 사용하지 않겠다고 하는 계약서에 의해서 기술을 거래하는 것을 저희가 기본적으로 깔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탈취를 방지하는 전체 정책 중에 이 법안이 일부라고 하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상직 위원 장관 말이지요 공부 좀 더 하세요. 기술탈취하고 기술침해하고는 용어 개념이 다릅니다. 침해라는 말이 얼마나, 영어로 인프린지먼트(infringement)입니다. 그것은 굉장히 폭이 넓은 이야기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공부하시고 이 조문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답변도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권성동** 그러면 61항 법률안에 대해서는 전체회의에 계류해서 조금 더 논의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법안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춘석 위원 산자위에서 만든 건데 왜 장관한테 뭐라고 그래? 산자위원들한테 공부하라고 해야지.

○윤상직 위원 장관이 답변을 그렇게 하니까……

○위원장 **권성동** 이춘석 위원님, 하실 말씀 있으면 허가를 받아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춘석 위원** 다음부터는 허가받고 하겠습니까.

○**위원장 권성동** 의사일정 제58항, 제59항, 제60항, 제62항, 제63항의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상직 위원** 제가……

○**위원장 권성동** 또 있어요, 문제?

○**윤상직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요 제가 대체 토론입니다.

○**위원장 권성동** 몇 항에 대해서?

○**윤상직 위원** 65항 중소기업기본법……

중기부가 중소기업 정책의 컨트롤타워가 되는 것은 저는 반대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지금 너무 과욕을 부리는 것 같아요. 중앙정부뿐 아니라 지방정부까지 중소기업 정책에 대해서는 다 평가를 하고 또 중복 여부를 체크하겠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 저희 생각에는 저희 중소기업 지원 정책의 많은 부분을 지방자치단체에 넘기고 있습니다.

○**윤상직 위원** 예, 그래서 지방분권을 이야기하시면서 또 장관께서는 지방자치단체에 넘긴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것은 점점 계속적으로 총괄·조정 권한을 갖다가 중기부장관이 가지시겠다는 건데 이것은 좀 말하고 행동이 다른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제는 중소기업 정책 또 소상공인 정책은 지자체장이 훨씬 더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맡겨두시지 총괄·조정하시겠다 해 가지고 하시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지 않나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이 법에 대해서 반대는 않겠습니다마는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총괄·조정한다고 펜대 굴려봐야 별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융통성 있게 잘 권한을 행사하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 위원님 말씀에 감사드리고요, 위원님 취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 중소기업부는 많은 정책을 지방자치단체로 넘기는 것을 실질적으로 하고 있고요, 이번 법에서도 위원님 취지는 저희가 이해를 합니다마는 저희 입장에서는 오히려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하는 방법으로 이 법을 사용하는 그런 취지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성동** 알겠습니다.

○**윤상직 위원** 그다음에 산업부장관 말이지요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이게 WTO 규범에 위배 안 됩니까? 통상 파트에서 어떤 의견이 나왔었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위원님 지적하시는 것을 저희들이 이 법안을 만들 때 통상규범 측면에서 고려사항을 기 반영하였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 부분을 저희들이 충분히 고려해서 이 법안을 운영할 때 통상마찰 가능성을 최소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상직 위원** 통상마찰의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거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저희들이 반영을 했기 때문에……

○**윤상직 위원** 아니, 반영했으면 통상마찰 안 일어납니까? 규범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저는 이 법에 대해서 반대할 생각은 없습니다. 왜냐? 각 당 원내대표들끼리 합의를 했기 때문에. 그러나 이 법이 상당히 통상마찰 면이 있고 우리가 잘못하면 굵어 부스럼 만드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통상을 담당하고 있는 산업부장관은 책임지고 앞으로 이 제도의 운영과정에 있어서 통상규범에 위배되지 않도록 또는 통상마찰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서 의견을 주시라고요. 그리고 만약에 그런 문제가 생기면 산업부장관이 책임져야 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성동**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5항, 제56항, 57항, 64항, 65항, 66항의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현안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겠지만 시간이 많지 않아서……

○**윤상직 위원** 간단하게 한 1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권성동** 윤상직 위원님.

○**윤상직 위원** 우선 지금 한전이 2분기 연속 자자가 발생했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예, 그렇습니다.

○**윤상직 위원** 그다음에 LNG 가격 유가하고 연동돼 있지요? 지금 70달러 넘었지 않습니까?

앞으로 한전이 영업적자에서 벗어날 수 있겠어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저희들이 유가를 예측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윤상직 위원** 답변만, 내가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것 앞으로 원전 가동률이 좀 높아진다 하더라도 적자 벗어나기 힘들 겁니다. 그렇게 되면 산업용 전기 안 그래도 지금 올린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더해 더 올릴 수도 있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산업용 전기 올리는 것 정말 유의하십시오. 지금 산업용 전기까지 막 올라가면 이제 우리 기업들 여기 못 있습니다.

두 번째, 신고리 5·6호기 있지 않습니까? 공사 중단 관련해서 한수원 손실이 1200억 났었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예.

○**윤상직 위원** 그런데 산업부에서 공문 보냈는데 가능성이 없다고 그래서 정부에 대해서 손해 배상청구를 안 하겠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 한수원 사장 배임죄에 걸릴 수 있습니다. 왜? 손실이 발생했는데 한수원 사장이 자기 자의에 의한 손해가 아니잖아요. 손실이 아니잖아요. 이것을 갖다가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는다면 또 손실보상을 청구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배임죄다, 앞으로도 계속 쟁기겠다…… 장관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고발도 당해 있으니까 명확하게 입장을 정해서 가지고 다음에 한번 기회 있으면 답변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권성동** 오신환 위원님.

○**오신환 위원** 지금 한수원이 원전 가동률 저하로 인해서 지난 해 대비 98.5%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요, 순이익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한수원……

○**오신환 위원** 한전이 한수원 지분의 100%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예, 그렇습니다.

○**오신환 위원** 그러면 전기료 상승 요인은 분명히 있겠네요? 지금 1228억인데 이 부분도 결과적으로는 한전이 떠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네요, 그렇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그런데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원전 가동 중지는 원자력안전법에 따라서 국민의 안전을 위한 조치였기 때문에……

○**오신환 위원** 아니, 그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에요. 어쨌든 현실이, 현상이 1228억에 대한 부분들 포함해서 원전 가동률이 저하됨으로 인해서 지금 어쨌든 그 리스크를 안고 있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들도 준비 중에 있나요, 산업부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신환 위원** 그래서 국민들한테 전기료 상승 요인으로 인해서 큰 부담이 없도록 하자는 게 제 취지예요. 준비해 주시고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님, 며칠 전에 면세점 제도 개혁 TF에서 면세점 사업권 기간 다시 10년으로 늘리는 권고안 확정된 것 알고 계십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 예, 알고 있습니다.

○**오신환 위원** 소관은 아니지만.

과거 기재위에 있을 때 그 부분에 대한 법안을 사실 장관께서 제출해서 강력하게 요구해서 5년으로 줄인 거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 예, 그렇습니다.

○**오신환 위원** 그것 10년으로 이 정부 들어서 다시 원점으로 돌렸는데 그 부분에 대한 개인적 소신이나 의견 있어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 면세점 문제는 꼭 허가 연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정책들이 함께 어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하나만 가지고 얘기하기는 적절치 않아요.

○**오신환 위원** 그 당시에 장관께서, 속기록을 보시면 연한에 대한 주장들이 다 나와 있어요. 물론 그 연한 하나만 보고 하는 것은 아니지요, 법 자체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연한을 그렇게 한다고 했을 때 그다음처럼 저렇게 많이 면세점을 허가한 것과는 전혀 별개입니다. 그러니까 연한을 그렇게 5년으로 한다고……

○**오신환 위원** 저랑 논쟁을 하자는 건데……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 아닙니다.

○**오신환 위원** 2013년도 1월 1일자로 이 법이 통과됐지요, 5년 법안이? 그렇지요? 그때 당시 홍종학 의원님 속기록을 보면 ‘보세관매장 특허 기간 5년 이것 받아주고, 지금 일본도 6년이라는 것 아닙니까?’ 이런 발언을 하면서 기재부장관이

기존에 하고 있는 것은 7년으로 유지되고 있다라고 하니깐 결과적으로 기존에 하는 것은 유지가 되고 만기가 되면 그다음부터 5년으로 하자 이 얘기를 강력하게 주장하셨어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 예, 맞습니다.

○오신환 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인 법안에 대한 내용들을 다 담고 있지는 않지만 어쨌든 기간에 대한 것들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강력하게 요청을 하셨고 요구가 받아들여진 겁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 예, 맞습니다.

○오신환 위원 그런데 그것을 다시 정부가 TF 팀에서 10년으로 권고안을 냈단 말이에요. 기간이 어쨌든 5년에서 10년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냐고요. 동의안 해요, 동의해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 그러니까 다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다른 여러 가지 감독 장치들이 있는데 제가 그때 야당 의원으로서 그 장치들을 건드릴 수 없기 때문에 일단 5년 동안 하고 나서 그 업체가 법에 맞게 제대로 관리하고 있느냐, 사업하고 있느냐 그러면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고 제가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런데……

○오신환 위원 그래서 10년으로 돌아가는 게 타당하다, 지금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 그것은 제가 거론할 저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언급할, 그것은 전체적으로 다른 정책과 함께 판단하는 것이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아마 그런 방식으로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오신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성동** 산업부장관님, 지금 태양광을 몇 %까지 확산시킬 생각이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저희들이 2030년도에 재생에너지가 20%인데 그중에서 태양광이 한 55% 정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성동** 너무 과도하게 목표를 잡은 것 아니에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지금 아주 이쪽에

서 사업자들의 사업 참여 의사도 굉장히 많고요, 특히 한 예로서 새만금 같은 경우에는 염해 피해를 받는 그런 농지에서 진짜……

○위원장 **권성동** 그것은 좋은데 고속도로 변에 막 절개를 하고 있어요, 산들을. 그리고 아주 곳곳에 태양광 설치한다고 산을 절개해서 보기도 흉측할 뿐만 아니라 나중에 폭우가 쏟아진다는가 아니면 또 폭설이 내려서 얼었다가 녹을 때 붕괴될 위험도 있고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사업과 관련해서 대기업 참여는 다 막고 무슨 협동조합 해서, 민주당 지지자들이 운영하는 협동조합 배불린다는 그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것 알고 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전해는 듣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성동** 그러니까 결국은…… 심지어 시중에는 이 사업이 임종석 비서실장 사업이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만큼 나중에 정치적으로 굉장히 민감한 문제가 발생할 소지도 있고 또 특정 정당과 이 정부에 우호적인 세력들에게 새로운 사업을, 먹거리를 제공하는 사업이라는 비난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요 그 사업의 적정성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윤상직 위원님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너무 신·재생에너지라든가 친환경적으로만 몰두가 돼 있는 것 같아요, 발전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래 가지고 전기요금 올라가서 산업용 전기 올라가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수출로 먹고 사는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산업용 전기가 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경쟁력이 생긴 겁니다.

그런데 이 산업용 전기 인상시키고…… 가정용 전기요금 인상시키기 쉽지 않아요, 국민들 반발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산업용 전기 인상시켰을 때 과연 대한민국 미래가 어떻게 갈 것이냐, 경제가 어떻게 갈 것이냐 그것 산업부장관이 먼저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가 걱정할 게 아니라. 그렇지 않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예, 위원장님, 제가 답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권성동** 간단하게 해 보세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위원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전체적인 난개발을 통한 태양광 쪽이 아무래도 임야 쪽에서 없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인지하고 지목 변경에 대한 것들을 제한함으로써 이런 문제를 최소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태양광, 신·재생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어떠한 사업자들도 이 신·재생 사업자 등록을 해서 사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 집단이 이 사업을 다 공유한다 이런 데는 제가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세 번째는 저희들이 에너지 전체적인 믹스 차원에서 원자력이라든지 재생에너지 그다음에 수력도 그렇고 화력도 그렇고 그다음에 가스터빈발전 모든 것들을 에너지 전체 믹스 차원에서 저희들이 접근을 하고 있고, 다만 재생에너지만을 제한해서 저희들이 에너지정책을 펴나가는 점은 아니다라는 점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걱정하시는 것들을 저희들이 다 반영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가야 되는 에너지 전환정책을 저희들이 확실하게 수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성동 그러니까 그런 부작용이나 문제점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지금 지역에 내려가 보면 너도나도 태양광사업 하겠다 그래요, 너도나도. 돈이 된다고 보는 거예요. 임야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전부 태양광사업 하겠다고 지금 얘기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로 인한 부작용이 어떻게 전개되리라는 것은 정말로 규제를 제대로 안 하면, 설계를 꼼꼼하게 제대로 안 하면 큰 문제가 발생하리라는 것을 명심해 주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성동 더 얘기하고 싶지만 시간이 없어 가지고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67.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박홍근·전현희·고용진·박광운·정재호·정인화·서형수·송기현·홍익표·김상희 의원 발의)

(11시42분)

○위원장 권성동 의사일정 제67항 박홍근 의원

이 대표발의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강병훈 전문위원 검토사항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병훈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7항 법률안은 기초과학연구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설기관을 둘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하는 내용으로 체계·자구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권성동 대체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으시지요?

○김진태 위원 지금 과방위……

○위원장 권성동 김진태 위원님.

○김진태 위원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이것이 신중검토 의견입니다. 여기 ‘부설기관을 둘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전문위원 어디 있나요?

○전문위원 강병훈 예.

○김진태 위원 이게 법에 이런 식으로 기관을 하나 두려고 할 때 법에 명칭을 특정시키는 경우가 타 법에는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검토해 봤습니까?

○전문위원 강병훈 예,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태 위원 일부가 아니라 그게 원칙이지요. 기관 하나 만드는 게 얼마나 힘든 겁니까? 예산, 인력 해 가지고 그것 가지고 수도 없이 논의를 하는데 여기 지금 이런 식으로 개방적으로 해 놓으면, 글썽 이게 명확성의 원칙이나 앞으로의 예산 부담이나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이게 물론 소관 상임위 참 어렵게 통과돼서 여기까지 왔겠지만 이것은 우리 법사위 전체회의에 계류해서 좀 더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금태섭 위원 전체회의 계류해서 언제 통과시켜요?

○김진태 위원 이따가 계류 중인 것들하고 같이 한번 해 보지요.

○위원장 권성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67항 법률안에 대해서는 전체회의에 계류해서 회의 막바지에 간사 간의 조정을 거쳐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수 제2차관 나와 있는데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보건복지위 소관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68.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정춘숙·김성수·송옥주·신경민·강훈식·김병욱·표창원·신창현·김정우·권미혁·정성호·유은혜·이철희·양승조·홍의락·소병훈·추미애·박주민 의원 발의)

69.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기동민·김민기·김영호·김정우·신창현·이재정·박정·노웅래·김철민·오제세·추미애·인재근 의원 발의)

70.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71.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72.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73.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인재근·소병훈·김영호·전혜숙·정춘숙·박정·김상희·김영진·유은혜·기동민·설훈·이인영·양승조 의원 발의)

74.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75.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11시44분)

○**위원장 권성동** 의사일정 제68항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75항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이상 8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 8건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강병훈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사항 보고해 주

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병훈**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0항 법률안은 의료 해외진출 신고를 받은 경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통지하도록 하고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입니다.

행정기관이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한 후 연장된 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신고수리 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도 이러한 규정이 적용되는지가 불분명하므로 장기간 불안정한 지위에 놓이는 것을 방지하려는 제도개선의 취지를 고려하여 이러한 경우에도 간주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68항, 69항, 71항~74항, 6건의 법률안에 대하여는 일부 경미한 자구 수정을 하였고, 의사일정 제75항 법률안은 체계 및 자구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 8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권성동**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보고서에 의하면 법안의 내용이 잘 정비된 것으로 보입니다.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김진태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권성동** 김진태 위원님.

○**김진태 위원**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의하면 의사일정 70항 법률안은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돼 있는데요. 이것도 지금 신고간주제 중에서도 의료업무에 관한 것이어서, 생명·신체에 관한 거라서 이것은 소위에서 좀 더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권성동** 의사일정 70항 소위 회부 의견,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70항 법률안은 제2소위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5항의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8항, 제69항, 제71항, 제72항, 제73항, 제74항의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과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나와 계시는데 현안질의하실 위원님?

김진태 위원님,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태 위원 복지부장관님.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예.

○김진태 위원 제가 뽑기를 기대했는데요, 많이 기다렸는데요. 이 경고그림 말입니다. 경고그림이 지금 새로운 시안을 해서 실무자 선에서 하려고 하는데 자세한 내용은 모르시지요, 장관님이?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비교적 알고 있습니다.

○김진태 위원 그게요 그냥 행정에서 해 가지고 막 이렇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법에 제한이 있어요. 두 가지 제한이 있는데 여기서 지금 논란을 할, 토론을 할 여건은 아니고 두 가지 제한, 사실적 근거가 있어야 되고 지나치게 혐오감을 줘서는 안 된다 이 두 가지가 있는데 특히 전자담배에는 그 두 가지를 다 벗어나는 시안이 준비되고 있어서 심각한 우려를 표합니다. 그 점을 잘 한번 다시 검토를 하셔서요 재검토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예, 아마 쉼련형 전자담배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오늘 오후에 식약처에서 전자담배의 유해성에 대한 검토의견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검토도 받고.

또 현재 지금 시안에 대해서 의견수렴 기간입니다, 6월 4일까지가. 일반인들의 의견도 수렴을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 참조해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성동 별도로 결과가 나오면 김진태 위원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성동 하시겠습니까?

정갑윤 위원님.

○정갑윤 위원 복지부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상급병원 지정 문제가 지금 아직도 원점에서 맴돌고 있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아니, 이미 발표가 돼 있습니다. 상급종합병원 말씀이시지요?

○정갑윤 위원 예.

행정구역을 보건복지부 편의로 묶어서 이렇게 하니깐 피해를 보는 지역들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3년에 한 번씩 상급종합병원에 대해 지정을 하는데 작년엔 이미 발표가 되어서 지난주의 것은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3년 뒤에 할 때는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지적해주신 대로 지역적인 편차도 고려를 해서 상급종합병원을 지정하는 요건 중의 하나로 지역 안배도 넣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3년에 한 번씩 하기 때문에 올해와 내년에는 시행을 하지 않고 2021년에 다시 상급종합병원을 선정하게 되겠습니다.

○정갑윤 위원 근거규정은 뭐지요? 근거규정이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그 근거규정은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정갑윤 위원 보건복지부가 임의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그건 아닙니다.

의료법이라고 지금 실무자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정갑윤 위원 의료법?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예.

○정갑윤 위원 정부가 전국을 17개 시도로 나눠놓은 것은 정말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나눠놓은 거거든요. 보건복지부는 의료법이라는 법에 보건복지부 편이에 의해서 특정 지역을 묶어 가지고…… 어찌보면 그건 상위법에 위반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부산·울산·경남을 한데 묶어 놓으면 자연적으로 울산의 경우는 피해 볼 것이고 호남의 경우에 또 마찬가지로 일 것이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정말 피해보는 지역에 대한 구제책도 함께 검토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예, 저도 위원님 생각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그래서 다음, 차기……

○정갑윤 위원 차기까지 갈 필요가 뭐 있어요, 지금 국민들이 난리인데.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예, 알겠습니다.

○정갑윤 위원 그다음에 외국인 3개월만 체류하

면 건강보험 혜택을 주게 돼 있지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예, 지역가입자가 되
게 돼 있습니다.

○정갑윤 위원 그런데 우리 장관께서 말씀하신
것 보면 ‘인류애’나 ‘정’ 이런 표현은 장관으로서
적절치 못한 표현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
국민들이 건강보험료 인상 때문에 난리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어떤 봉사단체나 적
십자나 그런 쪽을 통해서 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
만 정부 정책을 장관께서 이런 봉사활동 하는
것…… 우리 세금을, 국민들의 정말 금쪽같은 돈,
금싸라기 같은 돈을 가지고 장관이 이렇게 마치
봉사활동 하는 그러한 표현을 쓴다는 것은 적절
치 못하다고 생각하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떻습니
까?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제가 건강보험의 특히
의료치료에 대해서 ‘인류애’라고 발언을 했던 것
은 예컨대 유럽의 대부분 국가들 중에서는 일반
여행자들도 여행 중에 질병이 발생을 하거나 상
해를 당하면 긴급의료치료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국내에 3개월 이상 거주하면서 3
개월 이상 건강보험료를 납부한 외국인에 대해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의료치료를 해 주지 않는다는
것은 그것은 좀 행정적으로나 또는 인류애 관점
에서 부적절하다는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그러나
국민들이 건강보험료가 외국인들 치료를 위해서
낭비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지적한 것은 저도
타당한 지적이라고 받아들여서 적극적인 개선책
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정갑윤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성동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체육관광
부 소관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

7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조승래·김민기·김
정우·박경미·설훈·송기현·안민석·유동
수·윤관석·전재수·추미애 의원 발의)

77.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유은혜 의원

대표발의)(유은혜·정성호·박정·김민기·
백혜련·노웅래·홍의락·김성수·인재근·민

홍철·김철민·신창현 의원 발의)

78.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노웅래·
이개호·박홍근·윤후덕·조배숙·박광온·장
병완·장정숙·주승용·이찬열 의원 발의)

79.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주광덕

의원 대표발의)(주광덕·강석진·나경원·윤상
직·황영철·박덕흠·이학재·이진복·정중
섭·김정재 의원 발의)

80.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문

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

81.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제출)

82.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

(11시53분)

○위원장 권성동 의사일정 제76항 게임산업진흥
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82
항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7건을 일괄
하여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 7건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이문한 전문위원 검토사항 보고해 주시기 바랍
니다.

○전문위원 이문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6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
부개정법률안은 게임물의 정의에 게임물의 성격
이 혼재되어 있는 유기사설 또는 유기기구를 포
함하는 등의 내용으로, 유기사설 또는 유기기구
는 한글 표기만으로는 그 뜻을 이해하기 어려우
므로 한자를 함께 쓰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았습
니다.

의사일정 제78항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안은 국가기관 등이 정부광
고를 하는 경우 이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 의뢰
하도록 하는 현행 국무총리훈령인 정부광고 시행
에 관한 규정을 법률로 전환하는 것으로, 현행법
체계에 배치되는 조항 간의 순서를 재배열하는
등 일부 자구 수정 외에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
으로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80항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은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
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
확하게 규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신고수리 간주
일자를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등의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82항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국가지정문화재의 현상변경 행위 허가의 처리기간 경과 시 허가의 연장을 통제하지 아니한 경우 국가지정문화재의 현상변경 행위를 허가한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으로, 연장을 통제한 경우 연장된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날에 허가를 한 것으로 보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이를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고 허가 간주제에 관한 적용례를 신설하는 등 일부 경미한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77항, 79항, 81항은 각각 체계·자구상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7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권성동 수고하셨습니다.

대체토론 하겠습니까.

대체토론 하실 위원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7항, 79항, 81항의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6항, 78항, 80항, 82항의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장관님, 김종진 문화재청장님, 두 분 나와 계신데 현안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장관님, 동계올림픽 시설 사후 활용방안 이제 결정됐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아직 확정은 안됐고요 전체적으로는 기재부에서 긍정적인 답변을 얻어내고 있고요.

○위원장 권성동 아직도 기재부 설득이 안 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아니요, 용역을 통해서 기준과 원칙을 정하는 과정에 들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권성동 알겠습니다. 조속하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예.

○위원장 권성동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90항은 앞에서 처리를 했습니다.

83.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한정애·김영진·강병원·신창현·송옥주·이학영·윤관석·민홍철·이찬열·윤호중 의원 발의)

84.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득 의원 대표발의)(이용득·김종훈·서형수·윤관석·이정미·박홍근·손혜원·신창현·소병훈·홍의락·심기준·박광온·강훈식·김한정·김병기·유동수·김철민·권미혁·송옥주·문희상·표창원·김상희·노웅래·이수혁·한정애·박주민 의원 발의)

85.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강병원·송옥주·신창현·김영호·윤관석·추미애·정성호·이용득·정춘숙·김정우·문진국·박재호 의원 발의)

86.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신창현 의원 대표발의)(신창현·이용득·문희상·송옥주·서형수·김영호·김한정·이원욱·한정애·강병원·홍영표 의원 발의)

87.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홍영표 의원 대표발의)(홍영표·이상돈·이석현·문진국·장석춘·신동근·신창현·강병원·이용득·송옥주·김삼화·서형수·한정애·박남춘·유동수·박찬대·홍일표·안상수·송영길·윤관석·정유섭·임이자 의원 발의)

88.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강병원·송옥주·신창현·하태경·김영호·윤관석·추미애·박찬대·이용득·정춘숙·김병욱·김정우·박정·박재호 의원 발의)

89.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서형수 의원 대표발의)(서형수·박재호·신창현·강병원·한정애·김혜영·이정미·이용득·신용현·전재수·박홍근·최인호·송옥주·박정·민홍철·권미혁 의원 발의)

91.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

92. **환경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

93.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

94.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95.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20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임이자·홍문중·윤종필·장석춘·문진국·함진규·원유철·한정애·안상수·송희경 의원 발의)

204.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

(11시56분)

○**위원장 권성동** 의사일정 제83항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95항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까지 그리고 의사일정 제203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과 204항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이상 1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14건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이문한 전문위원, 검토사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문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3항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립생태원에 멸종위기종복원센터를 설치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일부 경미한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84항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환경부와 해양수산부가 동물원 및 수족관 동물복지종합계획을 마련하고 이를 위한 동물원 및 수족관 동물관리위원회를 신설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환경부와 해양수산부가 위원회를 공동으로 설치·운영함을 명확히 하기 위한 수정이 일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86항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환경부장관이 잔류성유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위반한 시설을 대상으로 사용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경미한 체

계와 자구 수정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87항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잔류성오염물질이 검출된 오염토양의 정화기준 및 정화방법을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으로 개정안의 토지오염정화자는 정화책임자인 국가의 해당 사무를 집행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89항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 또는 사업을 수립·시행할 때 시행하는 환경영향평가 등에 있어 주민의견 수립 범위를 확장하는 등의 내용으로 신설되는 조문에 따라 과태료 규정도 정비하는 등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91항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면서 그 범위를 조정하는 내용으로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상여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임금’의 객관적 판단기준을 법령상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92항 환경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환경교육프로그램인증심사위원회를 폐지하고 환경교육진흥위원회 내에 환경교육프로그램의 인증을 위한 분과위원회를 설치하는 등의 내용으로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환경교육진흥위원회의 심의로 의제하는 등 일부 자구 수정 이외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93항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환경정의와 기후변화를 기본이념 등의 규정에 명시하고 국가환경종합계획 등 환경정책 수립 시 기후변화에 관한 사항 등을 고려하는 등의 내용으로 다른 법률과의 관계규정 내용을 구체화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94항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둘 이상의 악취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악취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지역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악취관리지역의 지정요건을 좀 더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95항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지구 온난화를 예방하기 위하여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에 대하여 폐자동차에 남아 있는 기후·생태계 변화

유발물질을 회수하여 폐가스류처리업자에게 인계할 의무를 부담하는 등의 내용으로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 용어를 대기환경보전법에서 규정하는 용어와 같도록 통일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85항과 제88항은 각각 체계·자구상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203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근로시간의 단축 등으로 근로자의 임금이 감소하여 퇴직급여 수령액이 감소될 수 있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협의하여 퇴직급여 감소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체계와 자구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204항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은 좋은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사회적 대화기구를 새롭게 개편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명칭 변경, 경제·사회주체 참여 확대, 의제별·업종별 현안 특별위원회 구성 등 노사정이 합의한 내용을 법률에 반영하는 등의 내용으로 위원회에 두는 운영위원회의 임기, 회의 등 준용규정의 내용을 구체화하는 등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14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권성동** 먼저 환경부 소관 법안에 대해서 대체토론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부 소관 법안에 대해서 대체토론 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진태 위원** 93항 법률안입니다. 지금 여기 검토보고서에 아주 간단하게 나와 있기는 합니다. ‘다른 법률과의 관계규정 내용을 구체화하는 것이 적절하다’ 이게 그런 뜻입니다. ‘앞으로 환경정책에 관한 다른 법령 제정·개정할 때는 이 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법으로써 이것 월권의 성격이 있어서 더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권성동** 제93항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해서 제2소위 회부 의견인데 다른 위원님들 이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93항 법률안은 제2소위원회로 회부합니다.

환경부 법안에 대해서 또 있습니까?

○**오신환 위원** 질문할 게 있습니다.

○**위원장 권성동** 말씀하십시오.

○**오신환 위원** 환경부장관님, 84항의 경우 그 법 취지가 동물관리위원회를 환경부와 해양수산부가 공동으로 설치하는 거지요?

○**환경부장관 김은경** 예, 그렇습니다.

○**오신환 위원** 그러면 각각 별도로 운영하는 것을 각 부처에서 주장하는 것은 아니고, 공동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해양수산부도 동의를 했나요?

○**환경부장관 김은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신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성동** 반대하는 건 아니지요?

○**오신환 위원** 예.

○**위원장 권성동**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부 소관 법률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노동부 관련 법률안에 대해서 대체토론 하실 위원님들이 계실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의사일정 제85항, 제88항의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3항, 84항, 86항, 87항, 89항, 92항, 94항, 95항의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부장관 좀 앉아 계시고요.

그다음에 노동부 소관 법령, 소위 말해서 최저임금 3법에 대해서 대체토론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체토론 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노회찬 위원님 대체토론 하시기 바랍니다.

○**노회찬 위원** 지금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대해서 대단히 심각한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2소위로 넘겨서 계류시켜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일단 이 법이 최저임금법의 목적과 취지에 위배되고 있다, 실질적으로 최저임금 인하를 만들어 내는 법입니다.

지금 정부 예산으로 월급을 주고 있는 학교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급식원·조리원 같은 경우에 급식비 매월 13만 원, 교통비 매월 6만 원 받고 있습니다. 학교에 복리후생비로 19만 원이 지급되는데 이 법이 통과될 경우에는 이 19만 원 중에서 11만 원을 초과하는 8만 원이 깎여 버릴

니다. 도대체 정부가 어떤 사정이 있기에 최저임금을 근근이 받고 있는 급식·조리원 이 사람들 월급을 깎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노동부는 연 소득 2500만 원 미만의 노동자들에게는 불이익이 없을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 매월 기본급이 157만 원, 상여금 50만 원, 복리후생비 20만 원 받는 연 소득이 2124만 원 정도 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연 108만 원이 깎여 버립니다.

대체 왜 월급을 깎게 되었는가? 지금 정부는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 원을 달성하겠다고 합니다. 그 경우에 매년 15.2% 정도를 최저임금 인상을 해야 되는데 이 법에 따라서 최저임금 깎이는 게 12.7%입니다. 결국에 인상되는 최저임금의 80%는 월급을 받는 노동자들 주머니 속에서 나오는 거고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은 18%밖에 되지 않습니다. 소고기를 값싸게 공급하겠다고 공약을 해 놓고 결국에는 소에다 물을 먹여 가지고 중량을 대폭 늘린 다음에 그 물 먹인 소고기를 공급하는 것하고 뭐가 다르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 근로기준법에는 취업규칙 등을 불이익하게 변경할 경우에는 근로조건을 저하시키면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노동조합과의 합의에 따라서 그리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법에서는 불이익 변경을 강제하도록, 일방적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불이익 변경을 하도록 개정안에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 자체가 근로기준법 제94조에 위반되는 내용입니다.

이런 여러 점을 감안할 때 근로조건에 관한 중대한 변경 관련되어서는 노·사·공익 위원회 3분의 1씩 참여하고 있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충분히 숙의하고 합의를 도출해낸 다음에 법 개정으로 처리해도 늦지 않을 것을, 최저임금위에서 노사 합의로 할 수 있는 논의할 수 있는 기회 자체를 건너뛰어 채 봉쇄한 채 국회에서 다수의 힘으로 이걸 밀어붙이는 것은 큰 재앙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

복지정책과 관련해서는 금과옥조처럼 여기는 전 세계적인 공통적인 원칙이 있습니다. 준 것을 다시 빼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차라리 더디게 인상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미 준 것을 이런 법 개정을 통해서 다시 빼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법안은 법안2소위로 넘겨서 충분히 검토하고 특히 노사 간에 합의를 이룰 수

있는 여러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개정안의 산업 범위와 관련해 가지고 사업장의 매출액이라거나 노동자들의 연간 소득액을 기초로 해서 차등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아무 준비 없이 획일적인 방안으로 적용하는 문제라거나, 결과적으로 중·하위 계층 노동자들의 적용이 배제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지 못함으로써 근로자 계층 내에서의 소득 격차를 더 확대할 것이다. 이 법이 통과되더라도 편의점 점주는 이 법 통과로 인해서 아무런 혜택을 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노동조합이 있는 대기업 사업장에서는 이 법이 통과되더라도 아무 적용도 받지 않게 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중·하위 노동자들만 애꿎게 피해를 보는 이 법안을 법안소위로 넘겨서 심도 있게 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성동 이용주 위원님.

○이용주 위원 존경하는 노회찬 위원님께서 적절히 지적했다고 봅니다. 저도 이 법 제정 그리고 환노위의 심의 과정에 큰 문제점이 있다라고 봅니다.

이 법안을 두고 여야 간에 상당 기간 다툼이 있었는데요 사정을 들어 보니 심의를 마치고 온 이 조문들은 30분 만에 급조해서 중재안이라 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타 상임위에서 만든 안에 대해서 폄하하는 것은 아니나 너무 시한을 정해 놓고 꼭 안을 만들겠다는 것 때문에 충분한 준비가 없었다고 봅니다.

이 법안에서 언급하고 있는 상여금 25% 초과 기준 그리고 복리후생비의 7% 초과기준에 무엇을 근거로 25% 초과분으로 하는 것인지, 7%로 하는 것인지 기준점 자체가 불분명합니다. 뿐만 아니라 기업마다 수당 체계, 임금 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이런 기준을 정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데이터라든지 개별적 임금의 효과 분석을 한 이후에 일응의 기준을 마련해야 되는데 환노위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심사자료를 준비하지 않은 채 막연하게 심리를 하지 않았느냐라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2500만 원 이하 최저임금 노동자는 수혜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고 노동부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으나 이후 검토 결과 제외 대상이 발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어떠한 것이

그 대상자인지조차 파악하지 못한 채 결정이 되었다고 보입니다. 특히 2500만 원 이하 노동자 중에서 식비·숙박비·교통비를 현금으로 지급받고 있는 경우에는 최저임금의 인상에 관계없이 임금 인상은 최소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6조의2로서, 현재 노동부의 행정 해석으로서 총액을 유지하고 상여금을 매월 지급하기로 지급 방식을 변경하는 것은 현재까지로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된다고 해서 해당 노동자나 노동조합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고 해석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절차를 사실상 무력화하는, 의견청취만으로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의 중대한 근간을 무너뜨리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그러한 필요가 있는 것인지, 정말로 의견청취만으로서 소정의 근로자들을 보호하는 효과가 충분한지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만약 이런 법이 통과된다고 한다면 어떠한 사업장도 임금의 총액을 변동시킴이 없이 지급 기준의 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취업규칙을 변경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신설 조항이 있다고 한다면 근로기준법에도 불구하고 단순한 의견청취만으로 가능하게 되는 그러한 불합리함이 있게 됩니다.

또한 이 문제로 인해서 양대 노총이 새로 출발한 노사정위에 참여하기 어렵다는 그런 입장도 발표하고 있고 최저임금위원회도 노동자 위원의 전원 사퇴 가능성이 촉발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법사위에서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충분한 논의, 검토가 있는 후에 이 법의 통과 여부를 결정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2소위에 회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성동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제가 좀…… 장관님.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 예.

○위원장 권성동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보면 ‘상여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임금’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우리 전문위원이 객관적 판단 기준을 법령에 명확히 할 것을 지적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갖고 있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 그 부분에 대해서, 조문에 대해서는 저희가 법사위 전문위원 의견안을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성동 이렇게 노동부하고 전문위원간에 합의를 봤다고 그러는데, ‘상여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 이렇게 합의를 봤는데 동의하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성동 전문위원, 이 정도면 되겠어요?

○전문위원 이문한 예.

○위원장 권성동 그러면 우선 두 분 위원께서 최저임금법 의결을, 통과를 지금 반대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고용노동부장관의 입장이 뭔지 먼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 먼저 뒤에 얘기해 주신, 이용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를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이 법안이 올라왔는데 30분 만에 졸속적으로 처리를 해서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가 국회에서 3월 16일 날 최저임금법 개정안의 개괄적 논의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4월 11일 날 제도개선 의견을 청취를 했고 4월 13일 날 노사 의견 수렴을 해서 5월 21일, 5월 24일, 5월 25일 법안소위가 열려서 충분한 논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최저임금위에서 논의하자고, 양대 노총하고 사용자단체에서 하자고 했는데 이 부분은 노회찬 위원님도 같이 말씀을 하셔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최저임금위원회가 작년 9월부터 금년 3월까지 7개월 동안 제도개선을 논의하고 전문가 그룹이 다 논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합의를 도출하는데 약간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회로 넘겨서 세 가지 안으로 저희한테 넘어왔습니다. 하나는 현행을 유지하는 것, 하나는 상여금을 100% 다 포함시키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상여금을 포함한 후생복지비용을 포함하는 것 이렇게 논의가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여야 법안소위 위원님들이 충분히 논의를 해 주셨는데요.

그래서 양대 노총하고 경총에서 이것을 최저임금위원회에 다시 보내 달라고 요구했는데 내막을 보면 경영자 단체에서는 산입 범위가 너무 적다, 그러니까 더 확대해야 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셨고 또 양대 노총에서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다시 논의를 할 테니까 보내 달라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최저임금위원회가 6월 말 전에 법적으로 2019년도 최저임금위원이 확정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 9월부터 금년 3월까지 7개월 동안 논의하지 않은 것을 최저임금위에 올렸을 때…… 이 최저임금 산입 범위 때문에 2019년도 최저임금을 논의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진행된 국회 의견 진술에서도 산입 범위에 대해서 노사가 굉장히 현격한 입장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최저임금위원회로 다시 넘겨도 이게 합의되지 않는다는 판단에 환경노동위원회 여야 법안소위 위원님들께서 심의를 하셨다고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노회찬 위원님께서 아까 취업규칙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취업규칙 불이익 예외조항으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구조 개편이 가능한 것, 포함한 것을 말씀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노동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르면 이 부분이 총액임금은 유지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상여금 등의 지급 주기를 변경한 사유가 있습니다. 지금 일반 기업에서 3개월에 한 번씩 상여금을 주면 연봉이 4000만 원 이상 되는 사람도 상여금을 받을 때는 최저임금이 넘어가나 상여금을 안 받을 때는 최저임금 미만이 되기 때문에 연봉 4000만 원 이상자도 최저임금법에 위반되는, 사업주가 이런 불합리한 게 있기 때문에 연간 12개월로 나뉘었을 때는 상여금이 줄어들지 않으나 이것을 월별로 나눠서 최저임금법에 위반되지 않는, 그런 불합리한 제도를 개편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최저임금 제도개선 TF 전문가들도 이 부분이 불이익 변경이 아니라는 전제하에 명문화할 필요가 있고 최저임금 산입 범위를 반드시 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용자가 개정법에 따라 취업규칙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노동자 과반의 의견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노동조합이 없는 데는 직장협의회라든가 노동조합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취업규칙 변경에 대해서는 그렇게 의견을 드리고요.

앞서 급여가 줄어들었다 하는데 연간 줄어드는 않습니다, 저희가 보면. 아까 학교 비정규직 말씀하셨습니다. 최저임금 이 부분은 급여는 최저임금에 맞춰 놓고 교통비가 13만 원씩, 급식비

이래서 매월 21만 원인데 이 중에 11만 원만 산입을 하면 연간 120만 원이 기존으로 줄어드는 것 아닌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전체 임금노동자를 100으로 봤을 때 90%의 노동자들은 전혀 여기에 대한 불이익을 받지 않는데 아까 지적해 주신 학교 비정규직 노조에 대한 부분은 정부가 대안을 만들도록 하고요.

지금 문제는 예를 들면 레지던트 같은 연간 4000만 원의 급여를 받는 그런 부류가 최저임금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급여는 높으나 최저임금법에 위반되는 여러 가지 부분이 있어서 기대치가 줄어드는 이런 부분은 있는데 전체 90%의 임금노동자는 전혀 변함이 없고 나머지 그 부분에 대해서 기대치, 내년도에 최저임금이 오를 때 복리후생비가 들어가지 않으면 최저임금이 높아지는데……

저희가 지금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서 30명 미만의 사업주한테는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해 줘서 거기에는 경영이나 채용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런데 30인 이상 100인 미만의 사업주들께서는 올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고 신규 채용을 하지 않는, 시장에 어려움을 많이 호소해서 여야 위원들이 이렇게 합의를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권성동 예, 알겠습니다.

두 분 위원께서 제2소위에 회부해서 이 법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자는 의견을 제시해 주셨는데 위원님들, 다 동의하십니까?

(「아니요」 하는 위원 있음)

금태섭 위원님, 먼저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금태섭 위원 존경하는 노회찬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잘 들었습니다. 또 이용주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도 잘 들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논란이 많은 내용이고 또 제 주변에서도 산입 범위 관련해서 이번 개정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판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서는 환노위에서 소관 상임위에 계신 위원님들이 충분히 논의를 해서 이미 여야 간에 합의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최저임금법이 5월 임시회에서 처리가 되어야만 또 개정법의 개정된 산입 범위를 토대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법정시한인 6월 28일 내에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논의해서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만약에 이것이 통과가 안 된다면 이 이

수가 대단히 이해 대립이 첨예한 것임을 고려할 때 향후 산입 범위 조정에 관한 논의 자체가 이루어질지 대단히 의문입니다. 저희가 만약에 이것을 2소위로 보내 가지고 정말 제대로 된 산입 범위의 결론을 내릴 수 있으면 다행이겠지만 환노위에서 낸 결론보다 법사위 2소위에서 더 적절한 결론을 낼 수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을 저도 충분히 존중하지만 이 부분이야말로 정말 체계·자구와는 별관계가 없는 정책에 관한 부분이고 여야가 어려운 논의 끝에 합의를 한 만큼 존경하는 두 분의 의견은 소수의견으로 남기고 전체회의에서 통과시켜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권성동 김진태 위원님.

○김진태 위원 존경하는 금태섭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한 2년을 우리가 하다 보니까 이제야 서로 의견이 일치되는 것 같습니다.

최저임금을 정말 제대로 주기 위해서 이런 고육책이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어렵게 타결이 되었는데요. 우리 법사위에서 그동안 여러 가지…… 당장 오늘 올라온 법안들도 제가 다 흔쾌하게 생각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최대한 그런 것들을 존중해서 이렇게 해 왔는데 이제 거의 마지막에 이 법안만 잡는다는 것은 너무나 앞으로 혼란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법사위에서 이제 정말 대미를 장식하는 마당에 통과시키기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위원장 권성동 오신환 위원님.

발언 안 하신 위원님 먼저 하시고……

○오신환 위원 본 위원도 지금 금태섭 위원님이 제안하신 내용에 동의하고요.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대한 논란은 굉장히 다양하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각 정당의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다를 수 있는데 어렵게 합의해서 올라온 부분들 또 우리 법사위가 체계·자구 부분이 아닌 입법 정책적인 부분들을, 상임위에서 밤을 새워 가면서 논의한 부분들을 2소위로 회부하면 결국에는 언제 그것을 논의해서 통과시킬 수가 있을까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통과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이렇게 의견을 드립니다.

○위원장 권성동 아까 한 번씩 다 발언하셨는데……

○노회찬 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성동 1분씩만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노회찬 위원님 끝나면 이용주 위원님 이어서 하시기 바랍니다.

1분 시간 주세요.

○노회찬 위원 우리가 최저임금을 그냥 국회에서 법으로 매년 인상액을 정하지 않고 최저임금 위원회를 뒤서 노·사·공익위원들이 치열하게 논의해서 합의에 이르도록 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헌법정신이기 때문입니다. 노동삼권이 무엇입니까?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입니다. 이런 중대한 근로조건의 변경에 관련된 문제야말로 교섭을 통해서 합의에 이르도록 하는 것이 또 그것을 보장해 주는 것이 헌법정신인 것입니다.

지금 최저임금위원회에서 합의가 잘 안 됐다고 해서 국회에 와서 이것을 결정하도록 하는 것 자체는, 그런 식으로 하면 그러면 대기업에서 임금 인상의 합의가 잘 안 되면 국회에 와서 결정할 겁니까? 저는 이것은 당사자들에게, 특히나 한국 노총·민주노총, 양대 노총이 다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합의에 이르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것을 국회에서 수로 밀어붙일 문제가 아니다라고 생각하고요.

환경노동위원회에서도 여야 합의가 된 것 아닙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일부 정당들의 합의만 된 것이고 평화당과 정의당은 지금 공식적으로, 당론으로 이것을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제2소위에서 다룰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위원장 권성동 이용주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용주 위원 존경하는 김진태 그리고 금태섭 위원님 오랜만에 같은 의견을 내셨는데요, 문제는 이겁니다. 마치 이 법이 오늘 통과되지 않으면 6월 30일 날 최저임금이 정해지지 않을 것처럼 하는데 이건 전혀 사실과 다른 겁니다. 6월 30일 날 정해지는 것은 최저임금을 얼마로 하는지 액수를 정하는 것이고 오늘 논하는 법은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범위를 정하는 것입니다. 최저임금의 산입범위는 6월 30일 날 최저임금이 정해

진 이후에 논의되어도 가능한 상태인 것이 법적으로 분명합니다.

법사위에서 체계·자구 심사뿐만 아니라 비례성의 원칙에 어긋나는지의 여부를 저희들이 법사위의 논의에 포함시키기로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상여금을 25% 초과하는 것이 정당한 것인지 7% 초과분 산입이 정당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명백히 법사위의 심사 범위 내에 들어간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법사위에서 2소위 회부 여부에 대해서 어떤 위원이라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는 소위에 회부해 왔던 것이 저희 법사위의 오래된 관례였습니다. 그 관례를 지금 와서 깬다는 게 어떤 의미인 것인지, 정말로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짝짜미를 통해서 통과시켰다는 것인지, 법사위원장의 현명한 선택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위원장 권성동 잘 들었습니다.

대체토론은 이 정도로 종결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제가 확인할 텐데요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이 최저임금법과 관련해서 만장일치 통과입니까, 반대가 있었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 제가 볼 때는 그 자리에서는 정의당의 이정미……

○위원장 권성동 의원이 반대했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 예. 그래서 그 회의록에 만장일치는 아니고 일부 소수의견에 반대가 있었으나 전체 의견으로는 통과하는 걸로 이렇게 됐습니다.

○위원장 권성동 소수의견으로 남기고 통과를 시켰다?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 예.

○이용주 위원 민주당 의원 중에도 반대가 있었지요?

○노회찬 위원 민주당 이용득 의원도 반대했잖아요.

○이용주 위원 민주당 의원 중에 반대가 있었지 않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 아니, 그 내용은 당에

서의…… 예, 소위에서만 그리고 전체회의 때는 퇴장을 하셔서 안 계셨습니다.

○위원장 권성동 그리고 이 최저임금법 통과에 대해서 4당 원내대표 간에 합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자리에 참석한 오신환 바른미래당 수석부대표님, 어떻게 된 겁니까?

○오신환 위원 그 최저임금에 대한 부분들은 합의한 바가 없습니다.

○위원장 권성동 그건 합의가 안 됐어요?

○오신환 위원 예.

○위원장 권성동 물관리일원화법만 합의가 된 겁니까?

○오신환 위원 예.

○위원장 권성동 어쨌든 최저임금 인상 문제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할 사안이지만 최저임금에 무엇을 넣고 뺄 것인가의 그런 제도 문제는 국회가 결정할 사항입니다.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소수의견이 있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의결해서 통과가 되어 왔고, 지금 4당 중에 3당이 찬성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2년 동안 법사위원회를 운영해 오면서 가급적이면 만장일치로 법안 의결을 해 왔습니다마는 간혹 한두 분이 반대하실 경우에 소수의견으로 남기고 이걸 통과해 왔다는 점도 아울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일단 1당, 2당, 3당 세 개의 교섭단체가 찬성하고 있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하시는 분은 소수의견으로 남기고……

○노회찬 위원 표결해 주십시오.

○위원장 권성동 표결하시겠습니까?

○노회찬 위원 예, 표결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성동 그러면 간사들 표결……

○박지원 위원 법사위에 지금까지 표결 없었어요.

○위원장 권성동 그러면 소수의견으로 남기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회찬 위원 표결해 주세요.

○위원장 권성동 우선 의사일정 제203항의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노회찬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권성동 203항은 다른 법률안입니다. 이 법이 아닙니다.

법안명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3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원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4항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1항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노회찬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권성동 노회찬 위원님의 반대의견은 속기록에, 회의록에 기재하도록 하고.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노동부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성동 간사님들 어떻게 되셨나요, 여야 1당·2당 간사님들? 38항 법률안하고 61항 법률안 어떻게 하시기로 했나요?

○윤상직 위원 그것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권성동 예, 윤상직 위원님.

○윤상직 위원 지금 용어를 손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침해라는 것은 재산권이나 재산권에 상당하는 권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침해는 행정기관이 침해했다고 이렇게 조사 하나 해서 판단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그것은 최소한 준수법적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실무자들한테 ‘침해’라는 용어 대신에 다른 용어를 쓸 수 없는지…… 예를 들자면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행위인가?

○위원장 권성동 침해?

○윤상직 위원 침해.

행위 자체가 보면 설계도면을 줬는데 설계도면을 빼돌렸다는가 또는 입찰할 때 입찰계약서에 관련된 아이디어를 넣었을 때 그것이 다른 데로 빼돌려졌다는가 또 그걸 썼다는가 하는 부분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실관계로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일종의 탈취에 가깝습니다.

○위원장 권성동 그것 용어 변경이 가능한지는……

○금태섭 위원 용어를 어떻게 변경할 거예요?

○윤상직 위원 용어 이야기는 지금 실무자들한테 체크했는데, 제가 ‘침해’라는 말은 재산권이라든가 재산권과 동등한 그런 권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까지 만약에 행정기관이 조사해서 판단한다 그러면 이것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금태섭 위원 아니, 그러면 합의가 안 되는 거지요.

○백혜련 위원 그래서 ‘침해’ 말고 다른 용어 사용할 수도 있어요?

○위원장 권성동 자, 그러면……

○윤상직 위원 아니, 다른 용어를……

○위원장 권성동 잠깐만, 잠깐……

○김진태 위원 가능하겠는지 한 번 더……

○위원장 권성동 조금 더 검토하고 나중에, 마지막에 결정하겠습니다.

○윤상직 위원 예.

제가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권성동 예, 알겠습니다. 대체할 수 있는 용어 가능한지……

그러면 환경부장관님하고 국토부차관은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나중에 정리해서 의결할 테니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김진태 위원 잠깐만요, 38항 이런 것 하려면 환경부장관은 있는 게 나올 것 같은데요.

○위원장 권성동 아니, 됐어요. 이게 아까 이미 토론 다 했으니까 우리가 결정하면 되는 겁니다.

돌아가세요, 환경부장관하고. 그것도 나중에 우리가 다 정리할 테니까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원 심사기간 연장요구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96. 청원 심사기간 연장요구의 건

(12시32분)

○위원장 권성동 의사일정 제96항 청원 심사기간 연장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징벌적 배상에 관한 법률 제정에 관한 청원 등 12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좀 더 논의가 필요하여 국회법 제125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심사기간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연장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고유법을 상정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12시 반입니다. 늦어도 1시 반에는 법사위 회의를 종료하고 30분간 식사하고 2시에 본회의에 참여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현안질의를 가급적이면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유법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97.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소병훈·신창현·전해철·김영호·안규백·박정·윤소하·천정배·표창원·정성호·윤관석·박경미·유승희 의원 발의)

98.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박정·인재근·전해철·기동민·원혜영·신창현·이찬열·김해영·김종민·신경민·김철민·소병훈 의원 발의)

99.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태규 의원 대표발의)(이태규·김중로·조배숙·윤관석·황주홍·송옥주·김삼화·신용현·장정숙·이용호·송기석 의원 발의)

100.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정춘숙·인재근·김현권·표창원·신창현·송옥주·윤소하·정성호·강병원·박남춘·양승조 의원 발의)(의안번호 10629)

101.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정춘숙·김현권·인재근·박남춘·윤관석·김종훈·김상희·유은혜·최인호·신용현 의원 발의)(의안번호 10978)

102.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백혜련·김현권·김민기·정동영·김정우·김상희·신창현·전재수·윤관석·정성호·박광은·최인호 의원 발의)

103. 공중이용시설 등의 안전관리위반범죄 처벌

특별법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박주민·김철민·윤관석·김정우·천정배·이용득·신창현·김경진·유승희·김중희·정동영 의원 발의)

104. 교정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05. 국가정보원 및 검찰 특수활동비 부정 유

용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

명 등에 관한 법률안(최교일 의원 대표발의)(최교일·강길부·강석진·강석호·강효상·경대수·곽대훈·곽상도·권석창·권성동·김광림·김규환·김기선·김도읍·김명연·김무성·김상훈·김석기·김선동·김성원·김성찬·김성태·金成泰·김순례·김승희·김영우·김용태·김재경·김재원·김정재·김정훈·김종석·김진태·김태흠·김학용·김한표·나경원·문진국·민경욱·박대출·박덕흠·박맹우·박명재·박성중·박순자·박완수·박찬우·백승주·서청원·성일종·송석준·송희경·신보라·신상진·심재철·안상수·엄용수·여상규·염동열·원유철·유기준·유민봉·유재중·윤상직·윤상현·윤영석·윤재욱·윤종필·윤한홍·이군현·이만희·이명수·이양수·이완영·이우현·이은권·이은재·이장우·이종구·이종명·이종배·이주영·이진복·이채익·이철규·이철우·이현승·임이자·장석춘·장제원·전희경·정갑윤·정양석·정용기·정우택·정유섭·정종섭·정진석·정태욱·조경태·조훈현·주광덕·주호영·최경환(한)·최연혜·추경호·한선교·함진규·홍문중·홍문표·홍일표·홍철호·황영철 의원 발의)

106. 국회 특수활동비 부정 유용 의혹 진상규

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하태경 의원 대표발의)(하태경·김세연·김수민·박인숙·오세정·오신환·유익동·이학재·이혜훈·정운천 의원 발의)

107. 대한민국재향교정동우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제출)

108. 데이트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

(신보라 의원 대표발의)(신보라·박인숙·이양수·송희경·장석춘·하태경·김수민·김승희·박덕흠·김석기·김선동 의원 발의)

109. 데이트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

법안(박남춘 의원 대표발의)(박남춘·김현권·조승래·김영호·김정우·유은혜·전해철·김종훈·표창원·최인호·설훈·이재정 의원 발의)

110. 데이트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

(함진규 의원 대표발의)(함진규·박완수·박

맹우·김승희·정유섭·곽대훈·최연혜·이장우·박순자·이명수 의원 발의)

- 111.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백혜련·김성수·박정·원혜영·남인순·조정식·윤관석·신창현·정성호·박찬대 의원 발의)
- 112.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은재 의원 대표발의)(이은재·김성태·이종배·이진복·이현재·백승주·김선동·정유섭·김종석·곽대훈 의원 발의)
- 113.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일표 의원 대표발의)(홍일표·이학재·백승주·박찬우·나경원·박명재·안상수·김선동·김동철·홍문표 의원 발의)
- 114.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곽상도 의원 대표발의)(곽상도·곽대훈·나경원·유민봉·김석기·박맹우·박덕흠·정태욱·이현승·김재원 의원 발의)
- 115.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 의원 대표발의)(정갑윤·이채익·김진태·김정재·윤한홍·이철규·김석기·박대출·김순례·문진국·홍일표 의원 발의)
- 11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남인순·신창현·김상희·정성호·윤관석·한정애·소병훈·인재근·서영교·이학영 의원 발의)
- 11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표창원 의원 대표발의)(표창원·이개호·신창현·김현권·노웅래·윤소하·소병훈·김민기·윤관석·박정·김상희·김영호 의원 발의)
- 11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순자 의원 대표발의)(박순자·조경태·이명수·박성중·이종배·강석진·金成泰·최도자·함진규·홍문중·유재중 의원 발의)
- 11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이찬열·김종희·송옥주·윤영일·김중로·김철민·오세정·유성엽·박주현·

김수민 의원 발의)(의안번호 11052)

- 120.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이만희·김상훈·백승주·윤영석·임이자·민경욱·김정재·김성원·이양수·권석창 의원 발의)
- 12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백혜련·유동수·김현권·김민기·정동영·김상희·신창현·전재수·윤관석·박광운·최인호 의원 발의)
- 12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오신환 의원 대표발의)(오신환·김동철·권은희·김관영·김삼화·김성식·김수민·김중로·박선숙·박주선·신용현·오세정·유승민·유의동·이동섭·이언주·이찬열·이태규·이학재·이혜훈·정병국·정운천·주승용·지상욱·채이배·최도자·하태경 의원 발의)
- 12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정동영·장정숙·김종희·최경환(평)·김경진·박지원·조배숙·박주현·김광수·이용주·천정배·윤영일·정인화·이상돈·유성엽·장병완 의원 발의)(의안번호 12252)
- 12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손금주 의원 대표발의)(손금주·김수민·정동영·채이배·이찬열·원혜영·주승용·최경환(평)·김중훈·최도자·신용현 의원 발의)
- 12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이언주·이동섭·최도자·하태경·이찬열·유승민·김중로·최운열·유의동·신용현 의원 발의)
- 12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유승희·문희상·진선미·김철민·신창현·이용득·최운열·오영훈·이개호·표창원·전해철·송옥주·남인순·서영교·소병훈·한정애·김상희·유은혜·이수혁·박영선·백혜련·강창일·위성곤 의원 발의)
- 12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권철승 의원 대표발의)(권철승·

신경민·박정·위성곤·신창현·김해영·황
주홍·김경협·박홍근·설훈 의원 발의)

**12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법률안**(신상진 의원 대표발의)(신상진·
함진규·김승희·이종명·김재경·민경욱·
윤종필·이채익·주호영·성일중 의원 발의)

**129.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박정·
인재근·기동민·원혜영·신창현·이찬열·김해
영·김종민·신경민·김철민·소병훈 의원 발의)

**130.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 의원 대표발의)(노
회찬·추혜선·심상정·윤소하·김종대·
이정미·신경민·김수민·정동영·박범
계·원혜영·유동수·김영호·박경미·최
도자·소병훈·김성수 의원 발의)

131.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우 의
원 대표발의)(박찬우·이우현·박덕흠·정용
기·김선동·이군현·정태욱·김정재·윤상
현·엄용수·이만희·원유철 의원 발의)

132.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
원 대표발의)(김성원·김한표·박덕흠·金成
泰·박인숙·이양수·성일중·정유섭·김순
례·김명연 의원 발의)

133. 특별감찰관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
원 대표발의)(주호영·이종구·박명재·하
태경·김용태·이용호·박인숙·정양석·
정우택·김동철·황영철 의원 발의)

**134.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법률안**(홍철호 의원 대표발의)(홍철호·
권석창·박덕흠·박완수·정병국·박성
중·유의동·김성원·윤영일·유민봉 의원
발의)

**135.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김병기 의원 대표발의)(김병기·
권미혁·홍익표·박영선·위성곤·박정·안
민석·신창현·김현권·노웅래·이개호·송
옥주·이석현·김종민·남인순·김영진·박
재호·원혜영·심기준·전현희·김태년·이
철희·김상희·김성수·기동민·금태섭·제
윤경·강훈식·어기구·정춘숙·전해철·김
영호·김경협·박범계·윤호중·유동수·표
창원·양승조·김철민·유승희·이수혁·서
영교·백혜련·신경민·김경수·박찬대·김
병욱·박광온·이용득·홍영표·설훈·심재

권·김병관·김두관·김한정·정재호·조승
래·소병훈·전재수·김해영·최운열·박병
석·황희·김정우·전혜숙·이재정·이원
욱·송기현·한정애·이인영·문희상·윤후
덕·고용진·윤관석·민병두·추미애·최인
호·강병원·권칠승·신동근·서형수·민홍
철 의원 발의)

136.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신창현 의원 대표발
의)(신창현·박찬대·유승희·이훈·변재
일·강병원·권미혁·박경미·윤관석·이
수혁·김두관·문희상·심재권 의원 발의)

137.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
발의)(전재수·김해영·최인호·정재호·
노웅래·조승래·김상희·유은혜·손혜
원·심재권 의원 발의)

138.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
발의)(기동민·인재근·김민기·정성호·
윤관석·김해영·박정·김정우·추미애·
이철희·이재정 의원 발의)

139.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
발의)(김민기·신창현·윤관석·노웅래·
전재수·강훈식·오영훈·김영진·정성
호·김현권·김병욱 의원 발의)

140.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오신환 의원 대표발
의)(오신환·김동철·권은희·김관영·김삼
화·김성식·김수민·김중로·박선숙·박
주선·신용현·오세정·유승민·유의동·
이동섭·이언주·이찬열·이태규·이학
재·이혜훈·정병국·정운천·주승용·지
상욱·채이배·최도자·하태경 의원 발의)

141. 형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
의)(황주홍·정동영·장정숙·최경환(평)·
김중희·김경진·박지원·조배숙·김광
수·이용주·박주현·천정배·윤영일·정
인화·이상돈·장병완·유성엽 의원 발의)

142.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
의)(이언주·이동섭·최도자·하태경·이
찬열·유승민·김중로·최운열·유의동·
신용현 의원 발의)

143.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
의)(진선미·남인순·유승희·한정애·서
영교·박경미·김상희·유은혜·원혜영·
제윤경·이학영·김현권·강병원·송기
현·민병두·송옥주·윤관석·김해영·김
영호 의원 발의)

- 144.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권칠승 · 신경민 · 박정 · 위성곤 · 신창현 · 김해영 · 황주홍 · 김경협 · 박홍근 · 설훈 의원 발의)
- 145.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 · 홍문표 · 강석진 · 정태욱 · 홍철호 · 김성찬 · 유민봉 · 권석창 · 김재원 · 박인숙 의원 발의)
- 146. **형법 일부개정법률안**(표창원 의원 대표발의)(표창원 · 김성수 · 진선미 · 안규백 · 김종대 · 김중로 · 김병기 · 소병훈 · 박범계 · 신창현 의원 발의)
- 147.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혜훈 의원 대표발의)(이혜훈 · 정운천 · 최도자 · 유동수 · 하태경 · 이찬열 · 김수민 · 박성중 · 이완영 · 강길부 의원 발의)
- 148.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신상진 의원 대표발의)(신상진 · 함진규 · 김승희 · 이종명 · 김재경 · 민경욱 · 윤종필 · 이채익 · 주호영 · 성일종 의원 발의)
- 149.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대표발의)(함진규 · 박덕흠 · 김재원 · 박맹우 · 최연혜 · 곽대훈 · 조훈현 · 이종배 · 염동열 · 이은재 의원 발의)
- 150.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금태섭 의원 대표발의)(금태섭 · 최인호 · 이원욱 · 윤호중 · 이춘석 · 이학영 · 정성호 · 윤관석 · 홍영표 · 유승희 · 박광온 의원 발의)
- 151.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우 의원 대표발의)(박찬우 · 이우현 · 박덕흠 · 정용기 · 김선동 · 이근현 · 정태욱 · 김정재 · 윤상현 · 엄용수 · 이만희 · 원유철 의원 발의)
- 152.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전재수 · 김해영 · 최인호 · 정재호 · 노웅래 · 조승래 · 김상희 · 유은혜 · 손혜원 · 심재권 의원 발의)
- 153.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유기준 의원 대표발의)(유기준 · 조경태 · 정유섭 · 이명수 · 이은권 · 이현승 · 이진복 · 金成泰 · 윤상현 · 윤상직 · 권석창 의원 발의)
- 154.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태규 의원 대표발의)(이태규 · 김현아 · 김경진 · 신용현 · 김삼화 · 장정숙 · 이용호 · 송기석 · 김성식 · 권은희 의원 발의)
- 155.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경진 의원 대표발의)(김경진 · 심기준 · 황주홍 · 정동영 · 최도자 · 이동섭 · 송옥주 · 박주민 · 노웅래 · 김광수 · 김해영 · 김중로 의원 발의)
- 156.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연주 의원 대표발의)(이연주 · 송기석 · 이동섭 · 최도자 · 정인화 · 윤영일 · 김수민 · 신용현 · 김중로 · 박준영 · 김종희 의원 발의)
- 157.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석현 의원 대표발의)(이석현 · 김정우 · 이춘석 · 오영훈 · 신창현 · 이종걸 · 이학영 · 안호영 · 심재철 · 심재권 의원 발의)
- 158.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오신환 의원 대표발의)(오신환 · 강길부 · 지상욱 · 이용주 · 김현아 · 하태경 · 김영우 · 김무성 · 주호영 · 정양석 · 유의동 · 김경진 의원 발의)
- 159.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주광덕 의원 대표발의)(주광덕 · 장제원 · 강효상 · 김성원 · 박대출 · 성일종 · 신상진 · 안상수 · 문진국 · 유민봉 · 박성중 · 이은권 · 염동열 의원 발의)
- 160.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조정식 · 박정 · 신창현 · 정동영 · 윤관석 · 김철민 · 민홍철 · 송옥주 · 이석현 · 이찬열 의원 발의)
- 16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박병석 의원 대표발의)(박병석 · 이수혁 · 김부겸 · 변재일 · 박정 · 김병기 · 김태년 · 이찬열 · 조승래 · 김현권 · 박재호 · 민병두 · 김종민 · 심재권 의원 발의)
- 162. **법관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곽상도 의원 대표발의)(곽상도 · 조훈현 · 김성원 · 백승주 · 유민봉 · 임이자 · 이찬열 · 추경호 · 이은재 · 이종배 · 이종명 의원 발의)
- 163. **법률구조법 일부개정법률안**(금태섭 의원 대표발의)(금태섭 · 최인호 · 이원욱 · 윤호중 · 이춘석 · 이학영 · 정성호 · 윤관석 · 홍영표 · 유승희 · 박광온 의원 발의)
- 164.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주광덕 의원 대표발의)(주광덕 · 김정재 · 박성중 · 김진태 · 성일종 · 홍문종 · 권성동 · 원유철 · 김성원 · 강석진 의원 발의)

165.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곽상도 의원 대표발의)(곽상도·조훈현·김성원·백승주·유민봉·임이자·이찬열·추경호·이은재·이종배·이종명 의원 발의)
166.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금태섭 의원 대표발의)(금태섭·최인호·이원욱·윤호중·이춘석·이학영·윤관석·홍영표·유승희·박광온 의원 발의)
167.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권성동·주광덕·조훈현·윤상직·박덕흠·김선동·문진국·이종명·정우택·정갑윤 의원 발의)
168.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오신환 의원 대표발의)(오신환·하태경·유의동·박인숙·이학재·정운천·정병국·김세연·이혜훈·김현아 의원 발의)
169.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곽상도 의원 대표발의)(곽상도·조훈현·김성원·백승주·유민봉·임이자·이찬열·추경호·이은재·이종배·이종명 의원 발의)
170.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오신환 의원 대표발의)(오신환·하태경·유의동·박인숙·이학재·정운천·정병국·김세연·이혜훈·김현아 의원 발의)
171.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대표발의)(이재정·민홍철·진선미·김상희·김현권·윤관석·이학영·김병기·기동민·윤호중·표창원·정재호·홍익표 의원 발의)
172.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준영 의원 대표발의)(박준영·천정배·김동철·심재권·황주홍·이용주·송기석·이언주·윤영일·주승용·정인화·추경호·송석준·박지원·김관영·신용현·유성엽·김종희·이동섭·민홍철·김경협·조배숙 의원 발의)
173.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오신환 의원 대표발의)(오신환·하태경·유의동·박인숙·이학재·정운천·정병국·김세연·이혜훈·김현아 의원 발의)
174.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전재수·김해영·최인호·정재호·노웅래·조승래·김상희·유은혜·손혜원·심재권 의원 발의)
175.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박범계 의원 대 표발의)(박범계·표창원·이수혁·서영교·김성수·백혜련·박재호·김영호·신창현·이철희·박찬대·위성곤·정성호·심기준 의원 발의)
176.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 표발의)(정춘숙·권미혁·기동민·김병욱·표창원·송옥주·윤소하·오제세·인재근·양승조·강훈식·김정우 의원 발의)
177.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석 의원 대 표발의)(송기석·이언주·이동섭·장정숙·신용현·김삼화·황주홍·박선숙·박주선·박지원·최경환(국)·김세연 의원 발의)(의안 번호 10827)
178.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석 의원 대 표발의)(송기석·이언주·장병완·이동섭·장정숙·신용현·김삼화·황주홍·박주현·박선숙·박주선·박지원·최경환(국)·김세연 의원 발의)(의안번호 10942)
179.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 표발의)(백혜련·강병원·김현권·박광온·위성곤·이원욱·이재정·이학영·정성호·최인호 의원 발의)
180.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석현 의원 대표발 의)(이석현·신창현·김민기·김해영·안규백·신경민·김병기·어기구·안호영·서영교·금태섭·조정식 의원 발의)
181. **재정민주화를 위한 국민소송법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박주민·박정·이철희·문희상·유동수·김경수·유승희·김철민·노웅래·신창현·김상희·소병훈·원혜영 의원 발의)
182.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주광덕 의원 대표발의)(주광덕·장제원·강효상·김성원·박대출·성일종·신상진·안상수·유민봉·박성중·이은권·염동열 의원 발의)
183.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경진 의원 대표발의)(김경진·송희경·주승용·김수민·이동섭·유동수·김광수·김삼화·오세정·최도자 의원 발의)
184.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 표발의)(백혜련·이철희·김정우·윤관석·민홍철·박정·유동수·전해철·신창현·한정애·정성호·추미애·박찬대 의원 발의)

- 185.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전재수·김해영·최인호·정재호·노웅래·조승래·김상희·유은혜·손혜원·심재권 의원 발의)
- 186.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희 의원 대표발의)(이철희·김경수·김민기·김성수·김영호·김정우·노웅래·신창현·윤관석·정동영·채이배·천정배·최도자 의원 발의)
- 187.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김관영·박선숙·정동영·주승용·민병두·박주현·김현아·오세정·박용진·김경진·천정배·김종희 의원 발의)
- 188.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철 의원 대표발의)(심재철·주광덕·김승희·김순례·송희경·추경호·송석준·이만희·곽상도·강석진·조훈현·문진국 의원 발의)
- 189.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 의원 대표발의)(전혜숙·양승조·김영호·최도자·표창원·김상희·신창현·인재근·기동민·장정숙·정춘숙 의원 발의)
- 190.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두 의원 대표발의)(민병두·신창현·고용진·김영호·김경협·이원욱·원혜영·정성호·윤호중·송옥주·박찬대·박정 의원 발의)
- 191.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곽상도 의원 대표발의)(곽상도·유기준·나경원·송기현·김재원·심기준·손금주·홍일표·이동섭·정갑윤·박덕흠·김경진 의원 발의)
- 192.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김영진·김정우·서영교·설훈·이원욱·이종걸·인재근·전혜숙·홍익표·황희 의원 발의)
- 193.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서청원 의원 대표발의)(서청원·김성원·김순례·김태흠·민경욱·박덕흠·윤상현·윤영석·이만희·이우현·이종명·임이자 의원 발의)
- 194.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동 의원 대표발의)(김선동·김규환·박명재·원유철·정갑윤·나경원·강석진·경대수·신보라·정운천·이철규 의원 발의)
- 195. **민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

발의)(김영진·전혜숙·김영호·김민기·이원욱·인재근·김정우·서영교·한정애·황희 의원 발의)

- 196.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철 의원 대표발의)(심재철·주광덕·송희경·추경호·이만희·송석준·곽상도·강석진·조훈현·문진국 의원 발의)
- 197. **민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두 의원 대표발의)(민병두·정재호·이찬열·문희상·고용진·강병원·이종걸·신창현·박정·정성호·노웅래·원혜영·민홍철 의원 발의)
- 198. **민법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대표발의)(김삼화·황주홍·김광수·김관영·최도자·이찬열·김중로·김종희·주승용·이태규 의원 발의)
- 199.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전재수·김해영·최인호·정재호·노웅래·조승래·김상희·유은혜·손혜원·심재권 의원 발의)
- 200.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금태섭 의원 대표발의)(금태섭·이춘석·윤호중·전혜숙·고용진·윤관석·정춘숙·김정우·남인순·권미혁 의원 발의)
- 201.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박주민·추미애·오제세·노회찬·조배숙·정성호·윤관석·민홍철·박범계·김민기·신창현·손혜원·유동수·박정·송옥주·표창원·김종대·금태섭·김영호·김정우·강훈식 의원 발의)
- 202.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제윤경 의원 대표발의)(제윤경·윤소하·유승희·윤관석·김정우·송옥주·심기준·이훈·신창현·추미애·원혜영·김영진·박주민·노웅래 의원 발의)

○위원장 권성동 의사일정 제97항 소병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202항 제윤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까지 106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구체적인 안건명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대체하고 회의록에 게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106건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금태섭 위원님, 제안설명 안 하셔도 되지요?

○**금태섭 위원** 예.

○**위원장 권성동** 박상기 법무부장관님, 의사일정 104항 및 107항의 법률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할 순서인데 이것도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부장관 박상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성동** 다음은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 순서입니다마는 검토보고도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상 106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그러면 법안에 대한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대체토론이 없으므로 대체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97항부터 제202항까지 법률안은 일괄해서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로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 **현안질의**

(12시35분)

○**위원장 권성동** 그러면 현안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춘석 위원** 방망이 치고 해야지요.

○**위원장 권성동** 예?

○**이춘석 위원** 방망이 치고……

○**위원장 권성동** 아니, 제1소위원회는 방망이 안 칩니다.

박지원 위원님 현안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원 위원** 법원행정처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저는 어제 기사를 보고 대한민국 사법부가 이렇게 썩었는가 하고 잠을 못 잤습니다. 존경하는 법사위원들께 죄송한 얘기지만 저는 18대·19대·20대 국회에서 법사위를 아무도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도 명색이 여러 일을 하다가 국회에 들어온 사람이 나라도 법사위 지켜야겠다 해서 3대째 제가 하고 있습니다.

법무부장관 여기 계시지만 저는 검찰에 대해서는 혹독한 비판을 했지만 그래도 우리나라 국민들이 가장 신뢰하고 존경받는 곳이 사법부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양승태 대법원장 사법부에서 박근혜 맞춤형 재판을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법사위원인 저를…… 저는 대법원의 상고 법원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어디 가서든지 찬성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상고법원 통과를 위해서 억울하게 이명박 정권에 의해서 조작돼 가지고 기소된, 그래서 1심에서 무죄된 사건을 그러한 재판을 할 수 있었는가, 저는 개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다른 곳이 썩더라도 사법부가 건재해야 됩니다. 저는 오늘의 영국이 왜 그렇게 영국인가? 제가 누차 얘기했습니다. 기독교가, 언론이, 사법부가 약자 편에 서서 정의로운 결정을 해 줬기 때문에 영국이 됐다.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과거의 사법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말씀 한번 해 보세요.

○**법원행정처장 안철상** 위원님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들께 송구한 마음 금할 수 없습니다. 저희 특별조사단은 한 점의 의혹도 없이 사법행정권 남용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하고 그것을 국민들께 보고를 했습니다.

○**박지원 위원** 자체조사를 할 게 아니라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해서 검찰로부터 수사 받을 용의 있습니까?

○**법원행정처장 안철상** 예, 그것도 제외하지 않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박지원 위원** 정확하게 얘기를 하세요. 공부 잘하는 사람들 말이지요 아리송한 얘기하지 말란 말이에요.

지금까지 이런 사법부를 믿고 제가 어떻게 얘기할 수 있어요? 검찰에 고발해서 수사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법원행정처장 안철상** 저희들은 그것도 심도 있게 검토를 했습니다. 즉 성향·동향을 파악하거나 기타 여러 가지 문건에서 나타난 것의 실행이 이루어졌는지 그것을 판단한 후에 실행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 두 가지에 대해서는……

○**박지원 위원** 그건 똑같은 거예요. 나중에 재판부 판단한 것은 그 재판장의 법과 양심에 따라서 재판했다 이렇게 말할 것 아니에요?

○**법원행정처장 안철상** 그런……

○**박지원 위원** 어떻게 그런 소리를 할 수 있어요? 모든 국민이 앞으로 재판을 받으면서 그러한

의심을 지워버릴 수 없지 않습니까? 왜 검찰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 왔고…… 사법부가 그런 일을 해서 되겠습니까? 대법원장께서 이걸 대국민 사과를 공식적으로 해야 되고.

이번 문제에 대해서는 자체조사를 아무도 못 믿습니다. 검찰에 수사 의뢰해서 수사 받겠습니까?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법원행정처장 안철상** 이것은 수사 사항이 된다면 충분히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지원 위원** 사항이 되는 것 아니에요?

○**위원장 권성동** 이제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원 위원** 대법원장 대국민 사과하십니까?

○**법원행정처장 안철상** 예, 그것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지원 위원** 제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기관이 하더라도, 국민적 신뢰가 가장 높은, 가장 청렴한, 존경받는 사법부가 이러한 일을 한 것에 대해서는 제 개인이 당해서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반드시 대법원장께서 대국민 사과하시고 검찰에 수사 의뢰해서 철저한 수사를 받아야 되고 자체조사로 봉합하지 마시라 이걸 말씀드립니다.

○**법원행정처장 안철상** 예,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

38.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박덕흠·김태홍·권석창·홍문표·김규환·김성원·이만희·김승희·윤종필·심재철·김성찬·이은권·이채익·박명재·강석진·정용기·김광립·안호영·이용호 의원 발의)(계속)

61.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박정·권칠승·유동수·이채익·김경수·윤한홍·김종훈·홍의락·김기선·김수민·신경민·홍익표 의원 발의)(계속)

67.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박홍근·전현희·고용진·박광운·정재호·정인화·서형수·송기현·홍익표·김상희 의원 발의)(계속)

(12시41분)

○**위원장 권성동** 현안질의를 잠시 중단하고요, 아까 처리하지 못한 법안에 대해서 합의가 됐기 때문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상직 위원** 잠깐만, 이것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제8조의3에 기술침해행위로 하는 것은 좋습니다, 행위 자체가 그런 판단의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침해인데, 제8조의3에 보면 ‘기술침해에 관한 권고 및 공표’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침해행위라는 말을 넣으면 좋겠는데요.

○**위원장 권성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상직 위원** 이것은 수정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권성동** 예, 그렇게 하십시오.

○**전문위원 정연호** 그렇게 다 수정해 냈기 때문에……

○**위원장 권성동** 다 수정해 냈습니다.

○**윤상직 위원** 오케이.

○**위원장 권성동** 그러면 과학비즈니스법도 통과 시킵니다.

○**김진태 위원** 그것하고……

○**금태섭 위원** 댐법.

○**위원장 권성동** 아니, 세 개예요, 세 개.

의사일정 제67항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8항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안과 의사일정 제61항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건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현안질의(계속)

(12시44분)

○**위원장 권성동** 아까 박주민 위원이 먼저 현안질의 신청하셨지요?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박주민 위원** 서울 은평갑 국회의원 박주민입니다.

법원행정처장님, 저도 법원 블랙리스트 관련돼

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 조사 결과를 보고 굉장히 놀랐는데요, 내용을 조금 살펴보고 질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우선 재판 결과를 가지고 정부, 그리고 청와대와 거래했었다라는 의혹들이 이번 조사 결과에서도 나왔지요?

○**법원행정처장 안철상** 예.

○**박주민 위원** 보시면 아시는 것처럼 독립적이고 독자적인 사법권 행사 의지를 표명하는 것 자체가 압박 카드가 된다고 분석한 글입니다. 이 건 그동안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재량범위 내에서 최대한 협조를 해 왔기 때문인 것이지요.

저 보고서 문건 보신 적 있지요?

○**법원행정처장 안철상** 예, 그렇습니다.

○**박주민 위원** 그리고 또 법원행정처나 법원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서 보면 물밑에서 예측불허의 돌출 판결이 선고되지 않도록 조율하는 역할을 수행해 왔다라고 자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재판 결과를 가지고 거래했다는 의혹을 보여 주는 문건들이 또 있는데 아래쪽에 보시면 사법부가 이니셔티브를 쥐고 있는 사안들에 대해서 사건 처리 방향과 시기를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면서 국정원장 사건들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저런 문건들을 보면 재판 결과를 가지고 정부와 청와대와 거래를 하고 있었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특정 법관 등의 탄압 의혹에 대해서도 여러 문건들이 나왔는데요. 특히 인사모—국제인권법연구회 산하의 소모임이지요—이 소모임을 해산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들을 강구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중에 중복가입된 부분을 해소시키면 자연스럽게 성원의 숫자가 줄어들 것이다라는 문건이 나왔고 실제로 얼마나 성원이 줄어들었는지에 대해서도 분석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판사판야단법석’이라고 하는 법관들의 인터넷 카페도 어떻게 없애 버릴 수 있을까를 체계적으로 궁리했었다라는 것을 보여 주는 문건들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진짜 문제 삼고 싶은 것은 이런 조사 과정이 상당히 부실했다는 겁니다. 뭐라고 돼 있냐? 임종현 기조실장이 뭐라고 얘기했나면

자기는 우병우 민정수석의 카운터파트너가 아니다, 카운터파트너는 법원행정처장이다, 즉 박병대 행정처장이라고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사를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박병대 전 처장에 대해서는 그냥 서신으로만 조사를 했어요. 저게 철저한 조사입니까?

○**법원행정처장 안철상** 조사를 그 연락드렸지만……

○**박주민 위원** 양승태 대법원장 아예 조사 거부해서 조사 이루어지지도 않았습니까. 저게 철저한 조사입니까?

○**법원행정처장 안철상** 조사를 못 한 것은 맞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박주민 위원** 그리고 파일 자체에서도 아예 행정처의 조사단이 복구하지 못해서 들여다보지 못한 파일도 존재한다라고 조사보고서에 나옵니다.

이처럼 꼭 조사해야 될 사람인데 조사 못 한 경우도 많고요, 파일도 복구하지 못해서 못 본 파일들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행정처장님께서 철저히 조사했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수긍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실제 조사 결과에 대해서도 보면 재판을 협상의 도구로 활용하려 한 점이 인정되고 법관의 학술활동 등에 대해서 부당하게 개입·관여한 것이 기본권을 침해할 만한 행위를 한 점을 확인한 바 있다고 하셔 놓고도 여기에 대해서는 사법적인 처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후속조치를 하지 않으셨어요.

아까 박지원 위원님의 질문에 고발 등을 고려하고 있다, 검토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사 과정이 워낙 부실하고 그리고 후속조치에 대해서 명확하게 입장을 밝히고 계시지 않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사안은 당연히 검찰에 고발해서 수사와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되고 처벌도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원행정처장 안철상** 청와대와 교류를 했다는 부분은 실제로 재판을 그렇게 했다는 것이 아니라 결론이 청와대의 구미에 맞는다는 그런 취지라고 이렇게 보입니다. 그것은 청와대와 조율 과정에서 아마 그런 의견을 가졌던 걸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박주민 위원 처장님, 지금 분명히 임종현 실장이 우병우 수석의 카운터파트너는 박병대 처장이었다라고 진술했고, 그런데 박병대 처장에 대해서는 제대로 조사가 안 이루어졌는데 그 상황에서 실제로 청와대와 교감이 안 이루어졌다고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법원행정처장 안철상 원래 우리의 조사 대상은 처음에는 기초실에 판사의 뒷조사를 한 파일이 있다, 그것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파일을 조사하다 보니까 암호가 걸린 파일이 있어서 조사 못 했다 그래서 특별조사단은 암호가 걸린 파일을 조사해 보자 해서 나선 것입니다. 그래서 암호화된 파일을 다 조사했고 그리고 그와 관련되는 인적조사도 마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 조사 취지에 맞게 해야 되고 또 우리는 그것 강제로 조사할 그런 권한이 없기 때문에 못 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주민 위원 강제로 조사할 권한 없으시니까 검찰에 고발해서 제대로 된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해 주세요. 아까 적극적으로 검토하신다고 했으니까 정말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원행정처장 안철상 사법부에서는 재판을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고발을 하는 것은 또 신중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권성동 자, 박주민 위원님……

○박주민 위원 그러면 아까 적극적으로 검토하신다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십니까?

○법원행정처장 안철상 그것은 뚜렷하게 범죄 혐의가 드러난 사안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고발 또는 수사 의뢰 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권성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진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태 위원 국방부장관, 며칠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두 번째 만났을 때 그때 우리 군에 전군 경계령 내렸습니까?

○국방부장관 송영무 내렸습니다.

○김진태 위원 내렸어요?

○국방부장관 송영무 예.

○김진태 위원 그러면 군사분계선 넘어갔을 때 우리 군은 전부 다 비상근무를 하고 있었던 겁니까?

○국방부장관 송영무 지휘한 작전지역과 합참과 국방부는 전부 다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김진태 위원 전군 경계령.

○국방부장관 송영무 전군 경계령은 안 내렸습니다.

○김진태 위원 전군을 물어봤잖아요. 아니, 합참에서 비상근무하는 거야 그것은 당연한 거고 전군 경계령은 안 내렸어요?

○국방부장관 송영무 4·27 정상회담 때하고 똑같은 형태로……

○김진태 위원 그래서 4·27 때도 안 내렸어요?

○국방부장관 송영무 그때는 1군단 지역의 경호 계획과 경비계획을 다 수립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김진태 위원 자, 다시 물겠습니다.

4·27 때 전군 경계령 내렸습니까, 안 내렸습니까?

○국방부장관 송영무 전군 경계령은 안 내렸습니다.

○김진태 위원 그러면 당연히 5·26 때도 안 내렸고, 5월 26일?

○국방부장관 송영무 예.

○김진태 위원 안 내렸고?

○국방부장관 송영무 예.

○김진태 위원 대통령이, 우리 국군 최고통수권자가 군사분계선을 넘어서 북측으로 막 가는데 경계령을 안 내리고 있어도 되겠습니까?

○국방부장관 송영무 그것은 전군 경계령보다는 해당 지역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경계하는 것이 더 맞습니다.

○김진태 위원 아니에요. 우리 다 군대 갔다 와 봤지만 국방부장관도 비무장지대에 들어가면 이것 아주 위태로운 상황이에요. 그럴 때도 전군 경계령 내려야 할 것 같은데……

대통령이 어디 알리지도 않고 이북을 갔다 온 거예요, 이번에는 군사분계선을 넘어서. 그런데도 경계태세를 안 취하고 그냥 이려고 있었던 말이에요? 별일 없겠지, 요새 사이좋으니까 별일이야 있겠느냐 이려고.

통일각에 근무하는 우리 국군들한테는, 군사분계선에 근무하는 사람들의 총알 이런 것 다 뺐 것 아니에요? 공이, 노리쇠 이런 것 다 뺐지요?

○국방부장관 송영무 거기는 경호요원들이 들어가서 경호를 하고 있었습니다.

○김진태 위원 지금 답변을 분명히 안 하는데 우리 대통령이 가면 경호 목적 때문에 우리 군의 공이쇠 이것을 다 뺐단 말이에요, 경호 때문에.

○**국방부장관 송영무** 거기에는 4·27 때와 같이 양측의 경호병력이 들어가서 경호를 했습니다.

○**김진태 위원** 그러면 이제 우리 대한민국 군인은 못 믿고 북한군은 믿을 수 있다는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이것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해야 돼요. 그냥 막 왔다 갔다 하니까 뭐 별일 없겠지 이래 가지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에요.

○**국방부장관 송영무** 모든 행사 계획과 경호 계획은 상호주의 원칙에 따랐습니다.

○**김진태 위원** 경호 차원이 아니고 정말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그런 차원에서 전군에 경계태세를 확립해야 된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다음에는 다시 좀 제대로 검토하기 바라요.

○**위원장 권성동** 노회찬 위원님이 먼저 신청하셨기 때문에 노회찬 위원님 하시고 이용주 위원님 하시기 바랍니다.

○**노회찬 위원** 법원행정처장께 묻겠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이번에 특별조사단에서 조사를 했습니까?

○**법원행정처장 안철상** 조사를 못 했습니다.

○**노회찬 위원** 안 했습니까, 못 했습니까?

○**법원행정처장 안철상** 조사 연락을 취했지만 국외에 체류 중이라라는 등의 이유로 조사를 못 했습니다.

○**노회찬 위원** 조사를 거부한 거지요?

○**법원행정처장 안철상**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노회찬 위원** 그러면 앞으로 조사할 계획은 없습니까?

○**법원행정처장 안철상** 새로 또 추가 조사한다는 것은 아직 계획하지 않고 있습니다.

○**노회찬 위원** 양승태 전 대법원장, 검찰에 수사 의뢰할 계획은 있습니까?

○**법원행정처장 안철상** 수사 의뢰라는 것을 사법부에서 할 때는 뚜렷한 범죄 혐의가 인정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노회찬 위원** 아까 검찰에 고발 등을 검토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씀하셨지요?

○**법원행정처장 안철상** 예.

○**노회찬 위원** 그때 그러면 피고발자가 누구입니까?

○**법원행정처장 안철상** 법원도 물론 할 수 있겠지만 뚜렷한 것이 확인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노회찬 위원** 지금 사법부에서 검찰에다 고발

같은 것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또 검찰에 대한 고발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법원행정처장 안철상** 그것은 지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심도 있게 다시 한번 검토를 한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노회찬 위원** 아까 법원의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을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예단 아닙니까?

○**법원행정처장 안철상** 그렇지 않습니다.

○**노회찬 위원** 그것 조사해 봤습니까?

○**법원행정처장 안철상** 예, 여러 가지, 담당 주심대법관을 통해서도 의사를 연락받았고 또……

○**노회찬 위원** 그러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조사에 응하지도 않았고 박병대 전 대법관은 서신으로 답변했는데 그 이외의 전 대법관 내지 현 대법관 중에 조사받은 사람 있습니까? 없지요?

○**법원행정처장 안철상** 행정처장과 주심대법관에 대해서는 방문해서 의사를 진술받았습니다.

○**노회찬 위원** 어떤, 뭘 조사하셨습니다?

○**법원행정처장 안철상** 이른바 원세훈 사건에 대한……

○**노회찬 위원** 지금 우리가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 간혹 편향적이라거나 제대로 수사하지 않을 때 특검하자는 얘기가 나오고 그래서 공수처 설치까지도 논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법원이 이런 식으로 이번 사건을 통해서 드러난 것과 같은 태도를 취한다면 현재의 사법부로서 재판해서는 안 된다, 그 재판 못 받겠다, 특별법원 설치하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대단히 심각한 상황이에요.

지금 거론되고 있는 여러 재판들, 성과라고 이렇게, 뭔가 코드가 맞아서 이런 결론이 나왔다는 식으로 휘둘러대고 다른 것을 따내려고 했던 통상임금 판결, 전교조 범외노조 통고처분에 대한 판결, 그다음에 긴급조치 사건 판결, KTX 승무원 판결 이 재판 결과에 대해서 이미 대법원 판결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조사 결과 때문에 이것은 재심해 달라는 요청이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어떻게 보십니까?

○**법원행정처장 안철상** 그것은 이미 판결이 난 사안에 대해서 청와대에서 좋아할 것 같은 것을 골라내서 그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노회찬 위원 그것은 행정처장님의 해석인 것이고 실제로 사실관계가 어떤지는 조사해 봐야 하는 것 아니에요?

○법원행정처장 안철상 그런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노회찬 위원 그러니까 그것 자체도 하나의 예단이라는 거지요. 그러면 검찰에 대한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임종현 차장 하나만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겁니까?

○법원행정처장 안철상 그런 게 아니고 범리구성을 새로 하는 부분이 있든지 또 새로운 추가 사실이 밝혀지든지 기타 사정이 달라질 때는 그렇다는 뜻입니다.

○위원장 권성동 자,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회찬 위원 특별조사단의 조사 결과에 대해서도 놀랍지만 제대로 조사했는가에 대한 문제 제기가 심각하다는 것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원행정처장 안철상 저희들은 조사를 할 때 절대 한 점도 숨기거나 또는 왜곡하거나 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을 철칙으로 삼고 조사를 했습니다. 국민께는 뼈아픈 마음을 가지게 되지만 있는 것을 그대로 드러내고 잘못을 고치기 위해서 최대한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위원장 권성동 다음 이용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용주 위원 처장님, 이번 논란 과정에서 많은 국민들이 우려하는 것은 그것 같아요. 정말로 대한민국에 삼권분립이 있느냐, 삼권분립의 대표적 지표인 사법부가 독립해서 기능하고 있었느냐 여기에 대한 행정처장의 답변은 뭐니까?

○법원행정처장 안철상 그게 청와대의 위상과 우리 사법부의 위상을 말해 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본적인 큰 원인 중의 하나는 위상의 차이 그것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 문건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사법부가 VIP(박근혜 대통령)과 BH(청와대)의 원활한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권한과 재량 범위 내에서 최대한 협조해 온 사례를 상세히 설명해야 된다’, 대법원이 청와대에 설명하는 관계입니까?

○법원행정처장 안철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청와대도……

○이용주 위원 그런 관계라고 한다면 삼권분립, 독립이 되어 있는 겁니까?

○법원행정처장 안철상 법안을 통과시킨다든지 예산을 확보한다든지 하는 점에서 하나의 약자적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용주 위원 방금 말씀하셨어요. ‘사법부가 청와대에 대해서 약자적 지위에 있다’라고 행정처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약자적 지위에 있다는 것이 어떻게 사법부가 독립이 되고 삼권분립이 되겠습니까? 국민들이, 일반적인 사람들이 삼권분립으로 생각한다는 것은 각각 동등한 위치에서 동등한 권한을 갖고 한다는 것 아닙니까? ‘약자적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행정처장님이 그런 생각을 한다면 앞으로도 똑같은 거예요.

○법원행정처장 안철상 당연히 그래서는 안 되고, 과거에는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절대로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취지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런데 심하게 말하면 그것입니다. ‘재판을 거래로, 재판을 미끼로 청와대와 거래했다’ 이게 노골적인 표현인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법원행정처장 안철상 예,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저희가.

○이용주 위원 이 내용 중에 국가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의하지는 않겠지만 다 논란이 있는 판결들이었어요. 통합진보당의 내란음모 사건이라든지 철도노조 파업 사건이라든지 통상임금 판결 사건이라든지 그리고 박지원 의원의 유죄 판결 사건이라든지 원세훈 국정원장 파기환송 판결이라든지 많은 논란들이 있어 왔던 사건들에 대해서 사법부가 협조했다, 협력했다, 사법부가 써 놓은 문건들이 나온 겁니다.

특히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는 아까 본인도 말씀하셨지만 대체적으로 사법부에 굉장히 우호적인 발언들, 우호적인 의정활동을 많이 해 오셨어요. 그런 의원에게조차도 그 재판을 미끼로 해서 청와대와 거래를 하려고 했다면 다른 의원들, 여러 많은 의원들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여야를 가리지 않고 수사받고 재판받았던 전력들이 있지 않습니까? 본인들의 재판에 있어서 이런 거래가 없었을까라고 의심하지 않겠습니까? 그리

고 많은 국민들이, 많은 노동자들이, 많은 기업들이 본인 관련된 사건들에 대해서 그러한 영향이 작용하지 않았을까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까지는 그렇다 하더라도 앞으로 그러지 않겠다는 사법부의 자세를 보이기 위해서는 이 사건에 단호하게 대처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미 양승태 대법원장 등……

○**위원장 권성동** 자,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주 위원** 처장에 대해서도 고발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시민단체에서? 그렇다고 한다면 사법부에서 고발 못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법원행정처장 안철상** 그러한 의미에서 모든 잘못을 우리가 다 털어내고 모든 것을 다 포함시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일을 사법부 스스로도 하지 말아야 되겠지만 다른 관련 기관에서도 그것을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권성동**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주 위원** 한 말씀만 더 하겠습니다.

행정처장님, 자꾸 이상한 말씀 하시는데요. 마치 그 말씀이 다른 행정부처들, 다른 기관들이 사법부에 그렇게 요청했기 때문에 거기에 응했다 이런 말입니까, 지금? 그래서 앞으로 잘할 테니 다른 부처들은 사법부 건드리지 마라 이런 취지입니까?

○**법원행정처장 안철상** 그런 취지라기보다……

○**이용주 위원** 사법부가 잘못된 거예요. 다른 부처, 행정부·청와대의 요구에 의해서 했다 하더라도 요구하지 않으면 안 했을 것이다 그런 말입니까, 지금?

○**법원행정처장 안철상** 아니, 요구했기 때문에 재판에 어떤 결론을 미쳤다 그렇게는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위원장 권성동** 자, 알겠습니다.

○**법원행정처장 안철상** 그렇지만 그런 여러 가지, 사법행정권의 남용 의혹 또 국민들한테 불신을 줄 수 있는 그런 행위는 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용주 위원** 알겠습니다. 수사 의뢰나 고발 충분히 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성동** 금태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금태섭 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짧게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일로 분명해진 것이 앞으로 법원 내

부의 문제 또 법원이 지금까지 잘못된 일에 대해서 자체적인 조사로는 절대 부족하다 그 생각을 했습니다.

처장님께서도 들으셨을 텐데 제가 그동안 법원의 고위직들을 만나거나 찾아오셨을 때 거의 항상 늘상 하던 말이 저는 우리 법원에 대해서 무한한 존경심을 가지고 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말씀을 수사적이지만 드린 것은 그만큼 또 그렇게 절차를 지키고 사법부를 존중한다는 뜻을 말씀드린 건데요.

이번 조사 내용을 보면 법원은 내부적으로도 그런 존경심을 안 갖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직 행정처 차장을 하신 분의 조사 내용을 보면 2015년에 차 모 판사가 언론사 기고를 한 것을 가지고 문제를 삼다가 결국 그 해당 판사의 재산관계 조사를 했습니다. 맞습니까?

○**법원행정처장 안철상** 예, 그렇습니다.

○**금태섭 위원** 거기에 대해서 이번에 조사단에서 ‘왜 그 판사의 재산관계를 조사를 했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그 판사가 경제적으로 어려워 판사를 오래 하지 못할 것 같다는 얘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재산관계를 검토해 보라고 지시했습니다’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법원행정처장 안철상** 그것은 저희들도 신빙하지 않았습니다.

○**금태섭 위원** 그렇지요? 법원 내부적으로도 법원 내부에서 행하는 조사에 대해서 아무런 존중을 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얘기를 듣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이 발언을 하신 분도 잘 알고 있는데 적어도 법원의 독립성을 존중받기 위해서는 내부적으로 조사가 진행될 때 그 구성원이거나 혹은 구성원이었던 분들이 적어도 정직하게 얘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판사가?

○**법원행정처장 안철상** 예, 맞습니다.

○**금태섭 위원** 자기가 무슨 이유로 그 재산관계…… 그 문제가 된 차 판사 말고는 한 명도 재산관계를 조사한 적이 없었는데 이 판사에 대해서만 재산관계를 조사했으면 왜 그랬는지 말을 해야지 거기다 대고 ‘경제적으로 어려워 판사를 그만둘지 몰라서 조사를 했습니다’…… 저는 이런 조사는 이제 법원 내부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다 덧붙여서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에 법원에서 판결문 공개와 관련해서 설

문조사를 했지요?

○**법원행정처장 안철상** 예, 그렇습니다.

○**금태섭 위원** 판사님들의 대다수가 판결문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는 결과를 행정처에서 내놨습니다. 저는 왜 이런 설문조사를 했는지도 의문이고 또 그 이유도 없이 단지 다수가 공개하지 않겠다는 얘기를 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그 설문조사를 보면서 일반 국민 또 변호사, 법학교수 등 사회 각계에 한번 물어볼 생각입니다. 판결문도 공개하지 않고, 이렇게 법원 내부 사정을 공개하지 않고 내부적으로만 처리하려고 하는 것이 법원에 근본적으로 자꾸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성동** 오신환 위원님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오신환 위원** 법무부장관님, 검사의 최종 징계 결정은 누가 합니까? 장관이 합니까?

○**법무부장관 박상기** 예.

○**오신환 위원** 지금 안미현 검사 또 양부남 지검장 징계에 관련해서 언론에서 거론되고 있는데 그 부분 내용 알고 계신가요?

○**법무부장관 박상기** 그런 일부의 주장이 있을 뿐이지……

○**오신환 위원** 징계 절차는 지금 밝고 있나요?

○**법무부장관 박상기** 그렇지 않습니다.

○**오신환 위원** 전혀 안 밝고 있어요?

○**법무부장관 박상기** 예.

○**오신환 위원** 그러면 징계할 의사가 없나요?

○**법무부장관 박상기** 그것은 지금……

○**오신환 위원** 누가 결정합니까? 어쨌든 장관이 징계의 최종 결정권자인데 징계 대상인지의 여부에 대해서 아무것도 관심이 없어요?

○**법무부장관 박상기** 관심이 없다기보다도 징계 사유가 되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일단은 확인을 해 봐야 되는데 강원랜드 사건이 지금 수사가 완전히 종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후에……

○**오신환 위원** 그러면 종결이 되면 그때 검토할 겁니까?

○**법무부장관 박상기** 그 후에, 징계 사유가 되는지는 그때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신환 위원** 전문 자문단의 결론, 일곱 분 전원이 그런 결론을 내렸다고 지금 언론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 전문 자문단의 결론 과정들에 대해서 보고받으셨나요?

○**법무부장관 박상기** 전혀 보고받지 않았습니 다.

○**오신환 위원** 그러면 장관은 거기에 대해서 전혀 무관심합니까, 아니면 알 필요가 없다고 생각 합니까?

○**법무부장관 박상기** 무관심하다기보다도 전문 자문단은 자문위원으로 선정된 그분들 스스로가 본인들에 대한 인적사항이 공개되는 것을 원치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저도 지금 일곱 분이 누구 인지를 모르고 있고요.

○**오신환 위원** 안미현 검사의 언론을 통한 기자회견 방식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법무부장관 박상기** 그런 개인적인 주장이나 의견이 언론을 통해서 그렇게 표출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신환 위원** 그러면 지금 검찰청법 그리고 내부 규정에 어긋난다고 보십니까?

○**법무부장관 박상기** 검사윤리강령에 그런 부분을 금지하는 부분이 있기는 있지만 앞으로 검찰 내에서 상급자·하급자 간의 의사소통의 문제도 좀 더 원활히 될 수 있는 방법도……

○**오신환 위원** 그 시스템을 다시 들여다보고 개선하려는 것은 제가 이해는 되는데 현재 아까 말씀에 검사윤리강령이나 검찰청법에서 검사장의 지휘체계 안에서…… 의정부지검장의 허락 없이, 더군다나 그것을 내용을 보강해서 하라는 지시를 무시하고 거의 항명 수준의 그리고 과거에 이례적으로 있지 않은 기자회견을 벌였다는 말이지요. 그리고 어쨌든 그것에 대한 검토 내용을 전문 자문단이 판결을 했잖아요, 내용을. 그러면 그것 당연히 징계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그냥 넘어가면 향후에 모든 검사들이 본인이 수사 외압 의혹이라고 주장 하면서 언론에다 대고 기자회견을 하면 그것을 다 받아 줄 거예요?

○**법무부장관 박상기** 다시 말씀드리지만 개인적인 주장이나 의견이 언론을 통해서 먼저 표출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신환 위원** 언론을 통해서도 나온 얘기지만 지금 부처 평가에 있어서 법무부, 국방부…… 지금 우리 법사위 소관의 2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부처가 모두가 다 하위 평가를 받고 있다, 이렇게 언론에 나와 있는데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법무부장관 박상기** 어느 한 언론사에서 그런 평가가 있다는 얘기를 나중에 들었습니다마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그렇게 나왔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알고는 있습니다.

○**오신환 위원** 언론을 통해서 본 것 말고 직접적으로…… 그러면 그런 평가가 있었어요?

○**법무부장관 박상기** 모르겠습니다.

○**오신환 위원** 평가를 했는지도 몰라요?

○**법무부장관 박상기** 그건 나중에 결과가 보도 돼서 알게 되었습니다.

○**오신환 위원** 국무총리실에서 그냥 평가만 한 겁니까?

○**법무부장관 박상기** 국무총리실 평가인지는 모르겠고요. 지금 말씀하신 게 어떤 언론사에서 나온 평가를 말씀하시는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오신환 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성동** 표창원 위원님.

모처럼 법사위에 오셨는데……

○**표창원 위원**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법원행정처장님, 아마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도 법원의 과거 아픈 문제에 대한 진상을 드러내고자 하는 노력에 대해서는 분명히 충분히 인정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많은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과연 있는 그대로의 진상을 다 드러내 보이고 계신가, 법원의 위상과 과거 판례에 대한 의문의 여지를 없애기 위해서 지나치게 법원 측에 유리한 해석만 하고 계신 것은 아닌가. 두 번째로는 드러난 진상의 일각에 대해서 현재 과연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고 계신가, 이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 계속 지적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법원행정처장 안철상** 예, 그렇습니다.

○**표창원 위원** 그 부분은 일단 말씀으로 두고요.

제 질문은 정원섭이라는 이름을 혹시 아십니까?

○**법원행정처장 안철상** 저는 처음 듣는 이름입니다.

○**표창원 위원** 처음 들으십니까?

○**법원행정처장 안철상** 예.

○**표창원 위원** 1972년 강원도 춘천 역전 파출소장 딸의 강간치사 사건의 범인으로 누명을 쓰고 경찰·검찰의 고문과 증거조작, 허위진술 유도 등으로 인해서 법정에서 줄곧 본인이 억울함을 소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법원은 그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15년형을 복역 받고 나와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재심을 청구했고 재심 끝에 무죄 판결을 받게 됩니다. 이게 ‘7번방의 선물’이라는 영화로도 공개가 됐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분이 국가배상청구소송을 하는 와중에 1심에서 26억 원 배상 판결을 받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 박근혜 정권 법무부가 항소를 하게 되고요. 항소심이 열리는 중간에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국가배상 판결에서도 소멸시효를 적용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로 인해서 이 항소심 자체가 무산되어 버리고 패소하게 되는데요. 이분이 지금 뇌출혈로 쓰러져서 요양병원에 계십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정원섭이라는 일반 국민, 아무런 죄 없는 분을 대한민국 법원은 두 번 죽이고 계신 거예요. 이번에 발표된 2013년 전원합의체 판결이 박근혜 정권과의 거래 중에 하나로 들어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원행정처장 안철상** 그 사안은 들어보면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표창원 위원** 안타까운 일을 넘어서 한 국민을 국민들이 신뢰하시는 법원에서 두 번 죽이고 계신 거예요. 지금 현재 혹시라도 더 늦기 전에 행정처장님 혹은 대법원장님 혹은 누구 책임 있는 분이 개인적으로 마지막 이 부분이 법적으로 정리되고 소멸되기 전에 찾아가서 사과하실 그런 의향이 있으십니까?

○**법원행정처장 안철상** 그것은 사법부로서 할 일인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표창원 위원** 그분은 절실히 사과를 원하고 계십니다. 자신을 고문한 경찰관, 자신을 허위 기소한 검사, 아울러 자신에게 두 번 아픈 결과를 내린 법원의 진정한 사과를 원하고 계십니다. 사과하실 용의 있으십니까?

○**법원행정처장 안철상** 그것은 재판작용으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재판작용은 재판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표창원 위원** 국민이 바라는 법원의 답은 아닌 것 같습니다. 법에도 눈물이 있고 법에도 마음이

있고 법에도 양심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법에 기술만 있고 지식만 있습니까?

○**법원행정처장 안철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표창원 위원** 재고를 촉구드립니다.

○**위원장 권성동** 표창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태 위원,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태 위원** 법무부장관님, 강원랜드 사건 수사단하고 안미현 검사 이것 좀 너무 심한 것 아닙니까? 안미현 검사는 춘천에 있다가 의정부로 간 게 권성동 의원이 압력을 가해서 그렇게 했다고 주장하는 모양인데 그렇게 된 것 맞습니까? 인사를 하셨잖아요?

○**법무부장관 박상기** 안미현 검사 인사와 관련해서는 그런 외부 인사의 개입은 없었습니다.

○**김진태 위원** 그러면 적어도 그건 아니라는 얘기네요.

○**법무부장관 박상기** 예, 그 부분은 아닙니다.

○**김진태 위원** 그런데 본인은 그렇게 믿고 계속해서 독을 품고 저러고 있는 것 아니에요?

○**법무부장관 박상기** 글썄, 그것 때문에 그런지는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김진태 위원** 여러 번 얘기했어요. 그때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건 아니다 이거지요?

○**법무부장관 박상기** 인사와 관련해서는 그건 아닙니다.

○**김진태 위원** 그러면 장관님이 그 인사 한 겁니까?

○**법무부장관 박상기** 맞습니다.

○**김진태 위원** 춘천에 있는 사람을 왜 의정부로 보냈어요?

○**법무부장관 박상기** 제가 개별 검사들 하나하나 챙겨서 인사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어떤 인사 기준 그다음에 여러 가지 검토사항을 토대로 해서 인사를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진태 위원** 그러면 그렇게 했으면 안미현 검사보고 너무 그러지 말라고 그러세요. 갈 만해서 간 것 아니에요, 지금 장관이 인사를 해 가지고.

그다음에 그 수사단 말입니다. 고발장을 대필을 해요? 그런 것 들어본 적도 없는데요. 바쁜 검사들이 어디 당사자가 얘기하다가 추가로 고발해야 되겠다 하니까 ‘우리가 다 써 줄게’…… 사담하고 고발 사실까지 특정해서. 이거 이래도 되겠습니까? 이 사람들 징계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법무부장관 박상기** 그 부분에 대해서 고발인이 추가 고발을 하겠다고 해서 검찰 담당 검사로부터는 하여튼 편의 제공 차원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고발장을 작성해 줬다, 그런데 그에 대한 고발장이 또 접수되어 있기 때문에……

○**김진태 위원** 정말 이렇게 관심이 집중된 이런 사건에 대해서 편의 제공 차원에서 한다? 그러면 수사단이라는 사람은 중립을 지키지 않고 어떻게든 그냥 걸어 가지고 잡아넣으려고만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게!

○**법무부장관 박상기**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김진태 위원** 시간이 없어서 그 정도 답변하시고요.

○**법무부장관 박상기** 고발장 때문에 수사 범위가 정해진 건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김진태 위원** 그건 당연한 말씀이고요.

대법원 행정처장님, 지금 블랙리스트 이것 자꾸 얘기하는데 조사해 보니까 블랙리스트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법원행정처장 안철상** 블랙리스트의 정의를 어떻게 내려야 될지 모르지만……

○**김진태 위원** 그것 다 아는 거고요. 블랙리스트 인사에 불이익을 주는 게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법원행정처장 안철상** 판사의 성향이나 동향, 재산관계를 파악한 문서는 발견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로 인해서 개인에게 손해를 입게 했거나 불이익을 줬다는 것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김진태 위원** 그래서 블랙리스트는 없다는 것으로 결론이 나온 것 아닙니까, 그런 의미의 블랙리스트는?

○**법원행정처장 안철상** 예, 그렇습니다.

○**김진태 위원** 그런데 지금 세 번 조사하고도 그렇게 됐는데 네 번 하고 맨날 조사만 하라고 그러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러면 전·현직 대법원장 다 조사하세요. 지금 현직 대법원장도 고발돼 있어요.

○**법원행정처장 안철상** 저희 수사단은 설령 사법부의 신뢰 훼손을 각오하고서라도 이것만큼은 낱낱이 조사해서 의혹을 없애겠다는 마음으로 보고서에 담았습니다. 모든 사실을 다 담았습니다.

○**김진태 위원** 이제 더 이상…… 세 번이나 했

는데 더 갈등을 조장하고 분열을 조장하고 이러지 말고 이제 좀 화합하고 재판 열심히 하는 데로 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법원행정처장 안철상**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진태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성동**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현안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20대 국회 전반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 마지막 날입니다. 그동안 우리 존경하고 능력 있고 또 패기에 찬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년 동안 법사위에서 함께 활동할 수 있어서 아주 무척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법사위 운영을 위해서 진력했습니다마는 여러모로 부족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재형 감사원장님, 박상기 법무부장관님, 안철상 법원행정처장님, 송영무 국방부장관님을 비롯한 관계부처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법사위의 질적 제고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

후반기 때 다시 볼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항상 지금까지 그래 왔던 것처럼 위원님들께서 지역구 활동도 열심히 하시고 또 국회에서 의정활동도 제대로 하셔서 국민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는 그런 위원이 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칩니다.

20대 국회 전반기 동안 고생하신 위원님들 또 우리 국회 직원 여러분들 또 언론인 여러분들 또 보좌진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16분 산회)

○**출석 위원(16인)**

권성동	금태섭	김진태	노회찬
박주민	박지원	백혜련	여상규
오신환	윤상직	이용주	이춘석
정갑윤	정성호	조웅천	표창원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박수철
전문위원	정연호
전문위원	강병훈
전문위원	이문한

○**국회측 참석자**

국회사무총장	김성곤
--------	-----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	김용수
법무부장관	박상기
국방부장관	송영무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환경부장관	김은경
고용노동부장관	김영보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홍준학
기술인재정책관	조주현
국가보훈처장	피우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류영진
경찰청차장	민갑룡
문화재청장	김종진
공정거래위원장	김상조
방송통신위원장	이효성
감사원장	최재형

○**법원측 참석자**

법원행정처장	안철상
--------	-----